

연구보고 2009-05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문희

안재진

최혜선

소마 나오꼬

안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안재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최혜선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소마 나오꼬 국립요코하마대학교 교수

안진 육아정책개발센터 인턴연구원

머리말

오늘날 각국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과 출산기피 현상 속에서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는 국가적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자녀양육부담이 줄었다고 느끼는 부모의 수도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수준은 오르지 않고 여성의 취업도 크게 증가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부모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거론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를 증대시키고자 2009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바우처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변경하였다. 전자바우처제도는 아직 제도 정착기 단계에 있고, 이러한 자녀 양육비용 관련 정책의 효과는 장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과를 측정하기에 시기적으로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비용지원 확대가 육아지원기관 이용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군·구 단위와 개인 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부모 및 시설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바우처 방식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가 부모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부족하나마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자녀양육비용 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부모님들과 보육시설 시설장님들, 조사원분들, 그리고 보고서를 읽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검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보육, 유아교육을 포함한 자녀 양육비용의 지원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양육부담 완화, 여성의 취업, 출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재정 전달방식이 정책에 대한 부모 체감도나 육아지원기관과 부모의 관계 등에 미치는 성과를 파악하여, 효율적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보육비, 유아교육비, 양육수당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내용 및 전달방식 현황을 파악함.
 - 둘째, 외국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및 지원방식 관련 사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중앙·지방정부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이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정책에 대한 인식, 여성의 사회활동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분석은 국가, 시·군·구 및 개인 단위의 세 가지 차원으로 실시함.
 - 넷째, 보육비용 지원 전달방식의 변화가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이나 보육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다섯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함.

2. 연구방법

- 문헌 수집·검토, 국내외 통계자료 수집·분석, 부모 및 보육시설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추진되었음.
 - 관련 법, 제도 및 현황, 외국제도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음.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통계와 정책자료를 수집하여 파일을 구축·분석하였음.
 - 양육비용 지원에 관한 부모조사와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보육시설 및 부모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현장 관계자, 공무원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실제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음.
- 중요 용어로, '양육비용' 지원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실시되는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양육수당, 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함.

3.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

- 본 분석은 국가, 시·군·구 및 개인의 세 가지 분석 단위를 적용하였음.
- 첫째, 국가 단위에서는 국가의 육아지원 예산 확대가 보육서비스 이용률, 여성취업률, 출산수준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분석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로 보건복지가족부와 통계청에서 수집하였음.
 - 둘째, 지역단위 분석은 중앙정부 정책 이외의 각 시·군·구가 별도로 추진하는 육아지원과 육아서비스 공급 확충 등을 투입변수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여성취업률과 출산수준을 효과로 설정하였음. 정책 이외의 지역특성 변수가 포함되었음.
 - 셋째, 개인단위 분석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수혜가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통하여 어머니의 취업이나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음.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설문조사 자료임.
- 국가, 지역 및 개인 단위로 구분하여 양육비 지원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최근 14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정부의 보육예산 확대는 보육·유아 교육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며, 이는 다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출산수준은 계속 낮아졌음은 주지의 사실임.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확대만으로 출산 수준을 올리는 어려움을 시사함.
 - 둘째, 지방정부의 정책인 출생순위별 현금지원이나 보육료 추가지원정책은 결과의 일관성은 취약하였으나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음.
 - 셋째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추가지원이 둘째이상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고,
 - 둘째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원은 시·군·구 출산 수준 및 출생아 중 둘째이상 아동의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셋째, 개인 차원에서 보면 소득수준 및 아동 출생순위별 양육비용 지원 정책은 보육시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넷째, 양육비용 지원정책 중에서 교육비·보육료 차등 지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과 수당 지원이 출산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교육비·보육료 차등 지원은 직접적 작용 이외에도 자녀양육부담 완화라는 매개요인을 통하여 출산 의사에 작용함.
 - 한 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보육료·유아교육비 차등지원이 둘째 자녀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줌.
 - 두 자녀 가정에서 비용지원변수는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보육시설 이용이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다섯째, 보육시설 이용이나 비용지원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은 여성 취업과 유관함.
- 분석결과를 볼 때, 자녀양육지원은 추가출산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다만, 정책변수가 포함되어도 전체적 설명력은 크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겠음.
- 이는 추가출산 의사가 출산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함. 아울러 양육비용 지원 등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시계열자료의 수집이 필요함.

4.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방식 변화의 효과

- 아이사랑 카드의 제도적 정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음.
 - 전자카드 도입 후 보육료 전자카드 결제 제도에 대한 시설장의 태도 변화는 49.1%가 긍정적으로 변화, 17.4%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한 비율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보다 높았음.
 - 제도 변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바람직하다는 응답 41.9%,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16.7%로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다수임.
 - 응답 부모의 60.6%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부모에 미치는 효과로는 지원금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 제고가 3.5점으로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의 변화 3.1점, 소비자 권리 의식의 변화 3.0점에 비하여 높음.
- 전자카드 도입이 부모와 보육시설간의 의사소통 기회 확대 기능을 함.
 - 부모와 어린이집과의 관계 변화에 대하여 전체 29.9%가 보육시설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보육시설장은 부모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상담시간 증가에 대해 전체 5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보육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보육시설의 행정업무 간소화나 행정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수립 효과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
 -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 부담 감소에 대하여 30.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47.6%는 별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며, 5점 척도로는 2.6점임.
 - 보육료 지원금 신청·승인 과정이 없어져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전체의 28.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아니라는 응답은 33.1%로, 5점 척도로는 2.8점임.
 - 예외급여 인정 등 절차상 행정기관이 여전히 결정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전자카드제도가 도입되면서 정해진 보육료를 모두 받게 됨.
 - 보육료와 관련하여 부모의 13.7%가 보육료 할인 혜택이 없어졌다고 응답함.

- 보육시설의 53.2%가 정해진 보육료를 모두 받게 되었다고 응답함.
- 전자카드제도가 부모들의 선택권 강화를 통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보육시설 간 경쟁 심화 9.3%,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동 증가 13.5%, 신규 영유아 증가에 4.1%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경쟁의 결과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영향은 그렇다는 응답이 24.0%로 그렇다는 응답이 다소 높음.
 - 아이사랑 전자카드가 통합전자시스템에 무게를 두는 제도로 일반 바우처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일부 시설은 보육전자카드 결제를 위한 부모 방문으로 아동보육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의 불시 방문과 상담으로 인한 보육에의 영향에 대해 응답 시설장의 39.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5. 정책제언

- 부모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이 효과성 높은 정책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정책은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조정하고 민5세아 무상 보육·교육은 소득제한을 철폐하여 모든 아동에게 적용함.
 - 지방정부의 현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하여 수당 등 현금 지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 실현, 출산력 제고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외의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한 자녀 가정에서 정책 수혜가 추가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출생 순위별 차등지원 정책은 둘째 자녀부터 실시하여야 함.
 - 비용지원정책은 직접보다는 자녀양육부담 완화라는 매개요인을 통하여 더 긍정적으로 작동하므로 취업모, 저소득층 등 정책 대상을 목표로 하여 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취업과 출산의 윈윈(win-win)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 보육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제도의 수용성이나 인식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 보육전자카드가 부모에 미치는 효과로는 지원금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대만큼은 아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냄.
- 전자카드 도입에 따라 부모와 어린이집과의 의사소통 기회가 확대된 바, 이러한 변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며, 특히 상담시간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더욱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으로 아이사랑카드를 평가인증 등 서비스의 질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부모 방문시에 아동보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침 지시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범주 등	8
II.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제도 및 현황	10
1. 우리나라 양육비용 지원 제도	10
2. 외국의 양육비용 지원 제도	35
III.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및 시사점	74
1.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74
2. 양육비용 지원방식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85
3. 시사점	91
IV.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	93
1. 분석의 개요	93
2. 국가단위 통계 분석	95
3. 지방정부 자녀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101
4. 정부 자녀양육비용 지원정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114
5. 요약 및 시사점	136
V.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방식 변화의 효과: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를 중심으로 ..	139
1. 보육전자카드 제도의 현황	140
2. 보육전자카드에 대한 수용성	155
3. 보육전자카드 제도의 부모와 시설에 대한 효과	159
4. 시사점	174

VI. 정책제언 및 맺는 말	177
1. 정책제언	177
2. 맺는 말	183
참고문헌	184
부 록	193
1. 양육비용 이용에 관한 부모 조사 설문지	
2.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부모 조사 설문지	
3.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시설장 조사 설문지	

표 차례

〈표 I-3-1〉	양육비용 지원 관련 설문조사 내용	5
〈표 I-3-2〉	전국 16개 시·도별 만 5세 이하 표본	6
〈표 I-3-3〉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설문조사 내용	7
〈표 I-3-4〉	보육 서비스 이용권 시범지역 조사 결과	8
〈표 II-1-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12
〈표 II-1-2〉	영아 보육비용 구성	13
〈표 II-1-3〉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14
〈표 II-1-4〉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 2006~2008	15
〈표 II-1-5〉	보육료 지원 아동수: 2006~2008	16
〈표 II-1-6〉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지원내용	20
〈표 II-1-7〉	부산시 어린이집 공인시설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외시설	21
〈표 II-1-8〉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0~2006	22
〈표 II-1-9〉	보육 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예산 지원 현황(2009)	23
〈표 II-1-10〉	시·도별 지방정부 특수사업예산 원아 1인당 지원액(2009)	24
〈표 II-1-11〉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1~2009	25
〈표 II-1-1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9	26
〈표 II-1-13〉	교육비 지원 실적: 2007~2008	27
〈표 II-1-14〉	유아교육 예산: 2002~2009	29
〈표 II-1-15〉	항목별 유아교육 예산: 2009	29
〈표 II-1-16〉	시·도별 원아1인당 유아교육 예산: 2009	29
〈표 II-1-17〉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 2004~2009	31
〈표 II-1-18〉	양육비용 지원 총괄표	32
〈표 II-1-19〉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2007~2009)	34
〈표 II-2-1〉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 수	36
〈표 II-2-2〉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37
〈표 II-2-3〉	보육 비용(주당 50시간)	37
〈표 II-2-4〉	연령별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1주일)	38
〈표 II-2-5〉	가구당 주당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비용(보조금 포함)	39

〈표 II-2-6〉	보육·유아교육서비스 비용 지원 시 지원 주체	43
〈표 II-2-7〉	연 소득수준별 자녀수별 아동가구 세액공제액: 2009~2010	45
〈표 II-2-8〉	아동가구 세액공제 비율: 최연장 자녀 기준	46
〈표 II-2-9〉	캐나다의 등록 보육서비스(2007년)	49
〈표 II-2-10〉	캐나다의 등록보육시설의 비영리 시설 비율(2007년)	50
〈표 II-2-11〉	취업(학업) 중인 모의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주요 보육서비스(2004~2005)	52
〈표 II-2-12〉	캐나다 취업(학업)모의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주요 보육서비스의 변화	53
〈표 II-2-13〉	지역별 보육료 지원 자격기준(연간 순소득)	56
〈표 II-2-14〉	가구소득별 연간 아동수당보조금 지급액(2008년 7월~2009년 6월) ..	59
〈표 II-2-15〉	30-34세 여성의 취업 및 결혼 구성	62
〈표 III-1-1〉	아동투자에 대한 B/C에 관한 주요 3개 연구 결과:	75
〈표 III-1-2〉	20개 OECD 국가의 1998 합계출산률과 가족친화적 정책과의 관련성 ..	80
〈표 IV-2-1〉	분석에 사용된 변수	99
〈표 IV-2-2〉	합계출산율에 대한 회귀분석	99
〈표 IV-3-1〉	다중회귀분석 사용 변수의 평균	103
〈표 IV-3-2〉	보육·교육공급 및 이용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계수	104
〈표 IV-3-3〉	시·군·구 기관이용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05
〈표 IV-3-4〉	시·군·구 기관이용증가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06
〈표 IV-3-5〉	보육시설 이용아 중 둘째 및 셋째아 이상 비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107
〈표 IV-3-6〉	보육시설 이용아 중 둘째 및 셋째아 이상 비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109
〈표 IV-3-7〉	시·군·구 양육비용지원 정책이 여성취업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110
〈표 IV-3-8〉	시·군·구 출산수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11
〈표 IV-3-9〉	시·군·구 출생아 중 둘째 및 셋째아 이상 비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112
〈표 IV-3-10〉	지방정부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 요약	113
〈표 IV-4-1〉	주요 종속변수 특성	116
〈표 IV-4-2〉	양육비용 지원정책 인지 변수 특성	117
〈표 IV-4-3〉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경험 및 현재 수혜여부	118
〈표 IV-4-4〉	양육비용 지원정책 수혜자 만족도	119
〈표 IV-4-5〉	기타 육아지원정책의 수혜경험 및 현재 수혜여부	119

〈표 IV-4-6〉	기타 육아지원 정책 수혜자 만족도	120
〈표 IV-4-7〉	가구 및 개인 변수의 특성	121
〈표 IV-4-8〉	양육비용 지원이 기관이용에 미친 영향	122
〈표 IV-4-9〉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23
〈표 IV-4-10〉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양육부담 완화 효과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124
〈표 IV-4-11〉	모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26
〈표 IV-4-12〉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28
〈표 IV-4-13〉	한자녀 가구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30
〈표 IV-4-14〉	두 자녀 가구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31
〈표 IV-4-15〉	기대자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33
〈표 IV-4-16〉	정부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 요약	136
〈표 V-1-1〉	시범지역 보육시설 수 및 보육전자카드 발급 현황	140
〈표 V-1-2〉	조사대상자의 보육료지원여부	141
〈표 V-1-3〉	지역 및 보육료 지원여부별 카드 발급여부 및 유형	141
〈표 V-1-4〉	보육전자카드 미발급 이유	142
〈표 V-1-5〉	결제일 공지 내용	143
〈표 V-1-6〉	부모의 카드 결제일 준수	143
〈표 V-1-7〉	전국 확대 시 보육료 결제 현황	144
〈표 V-1-8〉	보육료 카드 수납업무 담당	144
〈표 V-1-9〉	보육전자카드 보육시설에 전달하는 방법	146
〈표 V-1-10〉	보육전자카드 전달 방법: 시설장	146
〈표 V-1-11〉	분기 자동결제 및 예외급여 아동 비율	147
〈표 V-1-12〉	보육시설의 분기단위 자동결제 권장 여부	148
〈표 V-1-13〉	전국 확대 시 결제 형태별 현황(10월)	148
〈표 V-1-14〉	보육전자카드 발급 시 애로사항	149
〈표 V-1-15〉	보육전자카드 이용시 애로사항	150
〈표 V-1-16〉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이용 시 애로사항 5점 척도	151
〈표 V-1-17〉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이용 시 가장 큰 불편	151
〈표 V-1-18〉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이용의 번거로움 정도	152
〈표 V-1-19〉	보육전자카드로 보육료 수납 시 애로사항	153
〈표 V-1-20〉	지역과 시설유형별 보육전자카드로 보육료 수납시 애로사항	154

〈표 V-1-21〉	보육전자카드로 보육료 수납시 가장 큰 애로사항	154
〈표 V-2-1〉	부모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바람직함가에 대한 의견	156
〈표 V-2-2〉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이 바람직한 이유	156
〈표 V-2-3〉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157
〈표 V-2-4〉	보육전자카드의 필요성	158
〈표 V-2-5〉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제도 선호도 변화	159
〈표 V-3-1〉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변화 백분율 분포	161
〈표 V-3-2〉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변화 5점 척도	162
〈표 V-3-3〉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 변화 내용	163
〈표 V-3-4〉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 변화에 대한 시설장 응답	163
〈표 V-3-5〉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 변화에 대한 시설장 응답 5점 척도	164
〈표 V-3-6〉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및 시설장의 관계 변화	165
〈표 V-3-7〉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및 시설장의 관계 변화 5점척도	166
〈표 V-3-8〉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시설 행정 업무의 변화	167
〈표 V-3-9〉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시설 행정 업무의 변화 5점 척도	168
〈표 V-3-10〉	보육전자카드가 보육료에 미치는 영향	169
〈표 V-3-11〉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가 보육료에 미치는 영향 5점 척도	170
〈표 V-3-12〉	보육전자카드가 보육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	171
〈표 V-3-13〉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가 보육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 5점 척도	171
〈표 V-3-14〉	보육전자카드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173
〈표 V-3-15〉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5점 척도	173
〈표 V-3-16〉	보육전자카드 결제로 시설장 대외활동 제약 여부	174

그림 차례

[그림 II-1-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추이	22
[그림 II-1-2]	GDP 대비 보육·유아교육·농업인 양육비 예산 비율(2002~2009) ...	34
[그림 II-2-1]	일본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총경비 분담 비교(2009년 기준 정부예산) ..	68
[그림 III-1-1]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	84
[그림 III-1-2]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	85
[그림 IV-1-1]	양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논리 모형	94
[그림 IV-2-1]	국가단위 분석 모형	96
[그림 IV-2-2]	보육예산(중앙) 및 보육·유아교육양육비지원예산(1995~2008)	96
[그림 IV-2-3]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1995~2008)	97
[그림 IV-2-4]	여성경제활동참가율(1995~2008)	97
[그림 IV-2-5]	합계출산율(1995~2008)	98
[그림 IV-2-6]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 경로	100
[그림 IV-3-1]	시·군·구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모형	101
[그림 IV-4-1]	양육비 지원정책이 모의 취업과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모형 ·	115
[그림 V-3-1]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인식 변화 백분율 분포	161
[그림 V-3-2]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 변화에 대한 시설장 응답	16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최근 5년간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보육료·유아교육비 경감 정책 등 사업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였고, 2009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 4인 기준 258만원까지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즉,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50%에게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의 비용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 시설을 다니는 영아의 경우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보육분야에 투자를 확대한 것은 사회적·시대적 요청에서이다.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또한 국가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여성의 노동력 활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은 54%로 OECD 60% 수준에 미달하고, 특히 임신·출산기인 30~34세 취업률이 낮은 M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05년 1.08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후 2006년 1.13, 2007년 1.26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 다시 1.19로 낮아졌고, OECD 평균 1.6에는 크게 미달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출산한 자녀의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더욱 더 중요해진 반면, 가족해체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고, 또한 미래의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한 수단으로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설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을 중심으로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보육지원 이외에 다양한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새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0세와 1세아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되고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 지원의 전달체계로 전자카드형태의 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추진된다. 한편으로는 놓여온 보육교사 수당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유치원 교육

도 교육비 지원 이외에 종일제 등을 중심으로 교사 인건비와 종일반 비용 지원이 확대되며 교사수당제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가정내보육인 아이돌보미 비용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며, 농림부가 농어민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 확대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2002년 4천억원 규모의 보육예산이 2009년 현재 3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유아교육비 지원금도 1조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 정책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보육료 추가 지원,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 등이다. 많은 지방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시 또는 아동이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주로 현금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중앙정부 보육료 지원에 추가하여 보육료를 더 지원한다. 이는 대부분 출생순위별로 제한을 둔다. 서울시는 2009년 5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로 인건비 형태로 보조하는 유사 공공시설인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별 지원방식 시범사업으로 민간개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의 공공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 양육지원은 규모나 대상이 확대될 뿐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도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지원이나 지원방식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지원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부모에게는 만족도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가계 부담을 낮추어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실증적 증거는 미미하다. 따라서 증가된 양육비용 지원 예산과 앞으로의 추가적 확대의 당위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러한 예산 사용의 효과를 증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원방식의 변화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양육비용 지원의 효율성 증진방안 모색에 기초가 된다.

그 동안 자녀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이 외국의 연구이다. 양육비용 지원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미국 등 외국에서 장기 실험연구방법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양육비용 지원이 출산수준이나 여성취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단위로 지원예산 규모를 독립변수로 보고 출산수준과 여성취업률을 종속변수로 보는 연구가 주로 추진되어 왔다. 반면, 국내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

다. 양육비용 지원이나 질 높은 서비스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없으며, 몇몇 연구들이 횡단적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윤홍식(2007)과 이삼식 등(2008)은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이 총 출생아수 및 신생아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 바 있고, 그 결과로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에 직접 또는 어머니의 취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정책 실시 기간이 짧고 또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분리하고 있지 않아 지원 내용별 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 김현숙(2005)은 보육비용 지원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조세연구원(김현숙, 성명제, 2006)에서는 가상적 양육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추정하였다.

사실,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는 장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최근 5년간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재정투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출산 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 통계적 검증 이전에 통계치의 추세만 보더라도 정적 상관성을 논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개선되었다고 평가되고 이러한 개선이 아동의 성장이나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추정되지만 계량적 방법으로 이를 측정한 자료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제한적이거나 보육과 유아교육을 포함한 자녀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를 나타내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한다. 양육비용 지원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여성의 취업, 출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재정 전달방식이 정책에 대한 부모 체감도나 육아지원기관과 부모의 관계 등에 미치는 성과를 파악하여, 효율적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정부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비, 유아교육비, 양육수당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내용 및 전달방식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외국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및 비용 지원방식 관련 사례를 파악한다.

셋째, 국내외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영향 관련 분석 모형을 탐색하여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정책에 대한 인식, 여성의 사회활동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은 국가, 시·군·구 및 개인 단위의 세 가지 차원으로 실시한다.

넷째, 보육 비용 지원 전달방식의 변화가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이나 보육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섯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검토, 국내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부모 및 보육시설 설문 조사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가. 국내외 관련 문헌 검토

기존의 보육료·교육비 관련 법, 제도 및 현황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기존 문헌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외국 자녀양육비용 지원 제도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나. 국내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행정자치부 등 정부의 자녀양육지원 예산 및 정책 자료, 인구통계, 출산수준, 여성취업, 보육 및 교육서비스 기관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기존 통계자료를 수집, 가공하여 국가 및 시·군·구 지역단위 자료 파일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다.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양육비용 지원에 관한 부모조사와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보육시설 및 부모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는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

를 위한 것이고, 후자는 보육전자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분석자료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 양육비용 지원에 관한 부모 조사

양육비용 지원에 관한 부모 인식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영유아 부모 1,31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자는 전국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가구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각 시·군·구당 일정한 수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전화조사원에 의하여 2009년 6~7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가구 및 부모, 아동 특성과 현재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양육비용 지원 정책의 인지, 수혜여부 및 만족도,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총괄적 만족도, 현재 자녀수, 추가 출산 자녀수 등이다(표 I-3-1 참조).

〈표 I-3-1〉 양육비용 지원 관련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
가구 및 부모 특성	- 부모 인구학적 특성: 연령, 학력, 결혼기간, 취업상태, 결혼이민자 여부 등 - 가족특성: 가족유형, 가구소득
아동 특성	- 인구학적 특성: 연령, 성별, 출생순위, 건강상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 이용하는 육아지원서비스: 기관 및 개별서비스
육아지원정책 관련	- 육아지원정책 인지 - 육아지원 수혜여부 및 만족도 - 육아지원정책이 서비스 이용이 미치는 영향 -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포괄적 인식
출산 관련 의견	- 현재 자녀수 - 추가 출산 의사

동 조사의 모집단은 만 5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효표본수를 1,300명으로 설정하고, 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중 5세 이하 모집단의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유효 표본 1,300명을 배정하였다. 전화조사로 유효표본 1,300명을 얻기 위해서 영유아 가구 발생비율, 응답거부율, 전화번호 부정확, 부재 등으로 인한 접근비율 등을 감안하여 유효표본의 58.2배인 75,624명을 과표본(over sample)으로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과표본 중에서 전화설문조사에 참여하였던 대상자들은 20,342명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 중 조사에 응한

1,314명에 대한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전체 응답성공률은 약 6.5%이었다. 최종 응답자들 중에서는 307명은 전화조사 진행 도중에 바쁜 사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재통화를 시도하여 조사한 결과 194명이 설문조사를 완료함으로써 재접속 응답성공률은 63.2%를 기록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추출한 유효표본은 <표 1-3-2>와 같이 구성하였다. 조사는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만5세 이하 자녀들의 성별은 고려하지 않았다.

유효표본인구와 응답인구를 비교하여 지역별 응답 완료율을 살펴보면 응답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 지역의 107.1%이었으며 그외 지역들은 모두 100% 이상을 달성하여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본 전화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72\%$ 이다.

<표 1-3-2> 전국 16개 시도별 만 5세 이하 표본

단위: 명, %

구분	유효표본 0세~5세	응답자							응답률
		만5세	만4세	만3세	만2세	만1세	만1세이하	계	
서울특별시	245	36	35	50	60	63	6	250	102.0
부산광역시	74	9	14	12	13	24	2	74	100.0
대구광역시	60	8	10	13	11	12	7	61	101.7
인천광역시	72	21	10	13	13	12	3	72	100.0
광주광역시	41	8	9	5	6	10	3	41	100.0
대전광역시	42	6	4	10	2	12	11	45	107.1
울산광역시	31	3	10	5	8	4	1	31	100.0
경기도	342	45	56	65	76	71	30	343	100.3
강원도	37	6	7	8	10	3	3	37	100.0
충청북도	40	7	1	8	9	12	3	40	100.0
충청남도	54	4	9	9	7	18	9	56	103.7
전라북도	46	4	7	9	14	9	3	46	100.0
전라남도	46	4	8	8	14	8	4	46	100.0
경상북도	65	7	7	23	12	12	4	65	100.0
경상남도	88	13	14	16	18	20	9	90	102.3
제주도	17	2	1	4	3	3	4	17	100.0
전체	1,300	183	202	258	276	293	102	1,314	

주: 표본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의 「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 만 5세 이하 인구 자료를 활용함.

2)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보육시설 및 부모조사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조사는 보육서비스 이용권 시범사업지역인 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사상구, 강원도 횡성군 3개 지역에서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에 대한 인지, 육아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인식, 육아지원기관 이용 등 부모의 보육서비스 관련 행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9월이었다.

보육시설은 시범사업 지역 내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모조사는 보육시설당 최고 7명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우편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우편으로 조사 협조요청 공문과 함께 조사표를 송부하여 시설조사표는 시설장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부모조사표는 보육시설에서 아동연령별로 무작위로 아동부모에게 배분하여 작성하도록 요청한 후에 보육시설에서 수거해 주는 것으로 하였으며,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 시설장과 접촉,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표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표 1-3-3〉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
시설조사	시설특성	- 설립유형, 설립연도, 운영시간 - 정원 및 현원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에 대한 인식	- 보육전자카드 인지 - 보육전자카드 시행 전 찬성여부
	행동 및 태도 변화	- 보육전자카드 이용 후 행동 및 태도 변화
	행정 관련	- 보육료 결제 - 수납업무 담당 -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운영
부모조사	가구 및 부모 특성	- 부모 인구학적 특성: 연령, 학력 등 - 가족특성: 가구소득 - 현재 모의 취업상태
	아동 특성	- 인구학적 특성: 연령, 출생순위 - 어린이집 이용기간
	보육료 지원서비스	- 이용하는 보육료 지원 혜택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 보육서비스 이용권 인지 - 보육전자카드 발급 유무, 형태 및 애로사항 - 보육전자카드 이용 후 인식 변화 - 카드 결제 절차의 번거로움과 제도의 필요성 - 정책만족도

조사 내용은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특성과 현재 보육서비스 이용권 이용 현황 및 애로사항, 제도 시행 후 인식 및 태도 변화와 효과 등이다. 부모조사는 가구 및 부모, 아동 특성, 현재 시점에서의 보육료 지원 서비스 이용,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수용성, 이용 방법 및 애로사항, 제도 도입 후 인식 변화, 정책만족도 등이다 (표 I-3-3 참조).

조사결과 3개 지역에서 296개 보육시설 조사표와 1,714명의 부모조사표가 수거되었다. 시설조사는 전수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완료율은 80.2%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보육시설 수가 19개소에 불과한 강원도 횡성군은 조사 완료율이 100.0%인데 비하여 부산시 사상구는 88.3%이고 서울 광진구는 72.7%이다(표 I-3-4 참조).

〈표 I-3-4〉 보육 서비스 이용권 시범지역 조사 결과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 조사			부모 조사	
	전체	조사완료	완료율	아동수	조사완료수
서울시 광진구	205	149	72.7	5,912	813
부산시 사상구	145	128	88.3	4,702	780
강원도 횡성군	19	19	100.0	965	121
계	369	296	80.3	11,579	1,714

라. 전문가 의견 수렴

보육과 유아교육 전문가, 학자 및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실제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범주 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요 용어로, 보고서 제목에 포함된 ‘양육비용’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실시되는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양육수당, 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외국 사례연구에서는 세액공제, 바우처 등을 포함하여 광의로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가

며 다른 하나는 보육전자카드로의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방식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사실 독립적인 주제로, 보고서 구성상 주요 분석 결과는 별도의 장에서 각각 다루었으나 이론적 검토나 선행연구는 하나의 장에서 절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개념들은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산출결과(outcome)의 개념을 적용하였는데, 정책평가의 대상은 결국 성과와 효과이지만 투입-과정-산출-산출결과 개념들에서 과정상의 영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효과(effect)는 과정, 성과와 결과에서의 영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 출산이나 경제활동 참가 이외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육아지원기관 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의 범주에서 영유아기 투자의 가장 중요한 편익인 인적 자원 개발은 연구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자료가 생산된 바가 없고, 또한 본 연구에서도 자료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육아정책개발센터가 2007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통하여 앞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출산이나 전자카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은 2004년 이후 확대되었고,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도 2005년 이후에 추진되었다. 이러한 단순한 지원정책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결과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저출산의 원인도 매우 복잡적이므로 단일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아이사랑카드도 조사 시점이 4개월간의 시범사업이 종료된 시점으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특히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자카드 결제나 지원금 지불과 관련하여 적용 방법을 계속 변경시켜 왔기 때문에 더더욱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었음을 한계로 밝힌다.

II.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제도 및 현황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의 양육비용 지원 제도 및 재정,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양육비용 부담과 정부와의 분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보육비용, 유아교육비 지원 등 우리나라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양육비용의 부모 부담, 정부-부모간 분담 및 재정의 규모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제2절에서는 외국의 사례로 영국, 캐나다, 일본의 양육비용 지원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국 사례로 선택한 국가 중 영국과 캐나다는 노르딕 국가들에 비하여 자녀양육 지원 지출 규모가 작고 서비스 공급의 상당부분을 시장이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또한 최근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본은 일찍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 국가이지만 출산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높으나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국가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¹⁾

1. 우리나라 양육비용 지원 제도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 농어민 자녀 보육·교육 및 육아 비용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조세지원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비용 지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운영비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가. 보육비용 지원

영유아보육법은 다양한 형태의 보육에 대한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1) 우리나라는 서비스 비용 지원 중심인데, 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고 또한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소목차를 정하였음.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은 크게 설치비나 개보수비, 시설 운영비, 보육료의 세 가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 반면에 시설운영비와 아동 보육비 지원은 각각 전달방식에 따라 시설보조금, 부모보조금으로 구분되고 시설 공급 주체에 따라서 지원 종류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보육시설 운영, 즉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육비용이다.

1)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

가) 보육시설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교사는 80%를 지원하고,²⁾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외 차량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³⁾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된다.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으로 2004년 이전에 지정된 전담시설은 국공립, 법인 시설과 유사하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아보육시설 역시 인건비 지원 이외에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치료사 인건비 아동 9인당 1명 100%, 특수교사 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인건비 지원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특수교사 수당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한편 민간 및 가정 시설은 장애아반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은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민간 및 가정 시설의 경우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휴일보육은 정부 지원시설에만 지정하고 있는데, 휴일보육 3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보육시설⁴⁾에 대해서는 아동 16~20명 보육 시 교사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방과후보육은 아동 3명 기준으로 인건비의 100%를 지원한다. 이는 정부지원시설에만 해당된다.

이외 민간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2)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3)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함.

4) 2004년 3월 1일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였음.

을 지원하고 있고,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연간 50~120만원 지원하고 있다.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직장보육시설에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표 II-1-1 참조).

〈표 II-1-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구분		지원내용
국공립 및 법인 시설	40인 이상 시설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추가지원: 농어촌,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시설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40인 미만 시설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육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휴일보육 3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 -방과후 16~20명 보육 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은 3명 기준 인건비 100% 지원
	장애아 통합 시설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80%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영아전담시설 (2004년 이전 지정 및 국고보조 신축비 지원)		-원장(18명 이상) 및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 별도 편성 : 보육교사 인건비 30%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비 :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전담시설 (시·도 지사 지정)		-원장(6개반 이상),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인건비 80%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지원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120만원 -농어촌 소재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 통합 시설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시간연장 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24시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직장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 또는 1인당 월 100만원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12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사업안내.

한편으로 세제지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⁵⁾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소지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나)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다(표 II-1-2 참조). 2002년부터 실시하던 영아반 지원⁶⁾을 2006년에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다. 동시에 부모 부담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낮추어 통일하였다. 한편 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본 사업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표 II-1-2〉 영아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	249	104	69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부모부담 보육료	350	308	254	361	317	262	372	327	270	383	337	278
보육비용	599	412	323	653	451	348	712	491	379	733	506	390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은 민간 보육시설의 전반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준과 이용시설 유형에 따른 아동 및 부모에 대한 공적 재원 투입의 불공평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시설에도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아동별로 금액을 결정하여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이 시설보조금과 아동보조금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지만(서문희 외, 2006),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모두 살리지 못하는 제도로 평가되어 왔다(김현숙, 2007). 영아기본보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에서도 부분적으로 교사 급

5)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26조 제1항, 제136조, 제194조 6제2항, 제207조임.

6)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시설별로 40만원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음. 그 후 2003년에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음.

여 상승 등의 성과는 인정되지만 부모의 만족도 제고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의 성과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기백 외, 2005).

2009년 9월부터 도입되는 아이사랑 카드는 시범사업에서와 같이 기본보조금을 기본보육료로 일반 보육료와 분리하여 카드 결제와 관계없이 매월 5일 24시 아동수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에 지급하여⁷⁾ 사실상 시설보조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다) 부모 보육료 지원

부모 보육료 지원은 차등 지원과 무상보육,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부모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은 2003년도까지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⁸⁾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그 대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2006년부터는 차상위 계층에 기준단가 100%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3층은 지원단가의 80%, 4층 60%, 5층 30%를 지원하였다.

〈표 II-1-3〉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2009년 6월까지						2009년 7월부터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2009. 6	2009. 7. ~
1층	법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100
4층	60%까지	-	-	30	40	50	60	100(하위소득 50%)
	70%까지	-	-	-				60(하위소득 60%)
5층	100%까지	-	-	-	-	20	30	30(하위소득 70%)
6층	130%까지	-	-	-	-	-	-	-

자료: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보건복지가족부(2009. 4). 보도자료.

2009년 7월부터는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이 적용되었다.

- 7) 이는 보육료 사후결제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확보 문제와 보육시설 관리 수단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의 기대효과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파악됨.
- 8)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음.

2009년 6월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즉,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한다.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가족 소득 기준으로 각각 258만원, 339만원, 436만원이다(표 II-1-3 참조).

이러한 차등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은 2008년 말 기준으로 59만 2천여명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61.7%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0세아의 비율이 다소 낮다(표 II-1-4 참조). 이는 보육시설 이용 0세아의 부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맞벌이가 많아 지원 소득기준 범주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0세아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은 그 이외 연령 영유아 맞벌이 가구소득보다 높은 편이다(서문희 외, 2009).

〈표 II-1-4〉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 2006~2008

단위: 명, %

구 분	차등보육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5세이상	계
2008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9,245	160,320	242,324	229,424	192,668	36,198	960,179
보육료 지원 아동수(B)	53,072	99,423	152,076	144,917	123,015	19,653	592,256
보육료 지원 비율(B/A)	53.5	62.0	62.8	63.2	63.8	54.3	61.7
2007년							
전체 보육 아동수(A)	68,908	122,663	222,258	237,919	207,305	61,318	920,371
보육료 지원 아동수(B)	34,985	78,245	141,917	154,957	139,376	37,356	586,836
보육료 지원비율(B/A)	50.8	63.8	63.9	65.1	67.2	60.9	63.8
2006년							
전체 보육 아동수(A)	46,351	102,473	201,111	221,529	219,974	50,292	841,730
보육료 지원 아동수(B)	21,947	56,654	108,054	122,188	120,265	34,759	463,867
보육료 지원 비율(B/A)	47.3	55.3	53.7	55.2	54.7	69.1	55.1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통계.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⁹⁾ 2009년 현재에는 도시근로자

9)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20%를 지원하여 2009년 현재 50%를 지원한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영유아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에 3만 4천명이었으나 2008년 12월 기준으로 73만명,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64%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표 II-1-5〉 보육료 지원 아동수: 2006~2008

단위: 명, %

구분	차등보육료	만5세 무상지원	두자녀 이상	장애아	총계
2008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20,371	175,323	-	-	1,135,502
보육료 지원 건수(B)	592,256	122,858	(108,500)	15,644	730,758
비율(B/A)	61.7	70.1	-	-	64.3
2007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20,371	179,562	-	-	1,099,933
보육료 지원 건수(B)	586,836	145,303	(109,599)	17,615	749,754
비율(B/A)	63.8	80.9	-	-	68.2
2006년					
전체 보육아동수(A)	841,730	198,631	-	-	1,040,361
보육료 지원 건수(B)	463,867	139,031	(63,745)	14,093	616,991
비율(B/A)	55.1	70.0	-	-	59.3

주: 보육료 지원은 건수이므로 아동 대비 비율 해석상 주의를 요함. ()는 중복지원임.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통계.

2) 지방정부의 정책들

각 시·도, 시·군·구 등 지방정부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국고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지방정부 별도의 예산으로 지자체별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수보육사업은 보육료 지원, 시설운영 지원, 종사자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매우 다양하다. 보육료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은 시·도에 상관없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도별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보육료 지원 사업이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보육료 지원 외에 저소득계층 자녀 추가 지원¹⁰⁾, 둘째 이상 자녀, 셋째 이상 자녀 등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셋째아 이상 자녀, 부산시는 둘째 자녀 이상에게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운영비 지원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어린이집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고 이외에도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교재교구비 지원, 차량비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교육비 지급은 대부분의 시·도가 지급하며, 이외에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지원 등 인프라 관련 사업이 있다. 최근에는 출산이나 입양, 다자녀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다자녀가족을 위한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을, 인천광역시도 입양아 무상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 충청남도도 경상북도 등 결혼이민자 가정의 많은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비용 지원 방식

가) 중앙정부

보육비용 지원방식이 부모를 거치지 않고 시설에서 직접 수령하는 형태에서 2009년 9월부터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보육서비스 이용권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그동안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비용보조는 시설을 이용하는 지원대상 아동수에 따라 정부가 시설에 직접 비용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바우처의 한 형태인 묵시적 바우처라고 볼 수 있는데, 보육료 지원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시설로 직접 비용이 이전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36조¹¹⁾에 명시된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와 구별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들의 정부지원에 대한 수혜체감도가 낮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정부지원 대상자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육시설에서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많고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지

10) 민간시설 보육료와 정부 지원단가의 차액 지원 등이 포함되고, 출생순위별 지원도 소득계층 구분을 적용하기도 함.

11)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함.

원과 관련된 각종 규제 생산 및 관리업무가 과증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에 직접 지원하던 전달방식을 명시적 전자바우처 형태로 전환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아이사랑포털(부모지원시스템)로 구성하여, 행정담당자, 시설장 및 부모 특성과 요구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였다.

행정지원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 보육전자카드, 보조금, 커뮤니티관리, 사용자로 구성되었다. 어린이집 지원은 설치운영관리, 수납한도액 및 기타비용수납한도액관리, 반관리, 아동관리, 이용현황관리, 유치원중복관리, 사고관리, 종사자관리, 종사자임면관리, 지도점검관리로 구성하였다. 설치운영관리는 일반현황, 건물현황, 기본설비, 비상재해대비시설, 놀이터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하였고, 아동관리는 아동등록으로 거주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출생순위, 보육료 지원자격¹²⁾, 신청일, 장애등급, 가정유형, 보육서비스, 입소일, 반 구분, 상해보험, 상태, 보호자 성명 및 관계, 긴급연락처 정보가 수록된다. 보육전자카드는 예외급여지급승인 및 현황, 소급지급승인 및 현황, 카드발급 관리, 예약금 관리, 단말기 관리, 사업관리, 영수증 홍보 문구 등을 관리한다. 보조금 부분은 보조금 지급 승인, 신청, 지급 내역 등이 관리되며, 커뮤니티는 공지사항, 업무연락, I-사랑나눔방, 개선의견, 법령지침, FAQ,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 부분은 시·군·구 기관 관리자가 기관사용자를 승인하는 절차에 필요하다.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역시 행정시스템과 같은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설치운영관리, 수납액관리, 반관리, 아동관리, 이용현황관리, 사고관리, 종사자관리로 구성하였다. 보육전자카드는 결제 및 예외급여신청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아이사랑포털(부모지원시스템)은 회원, 아이사랑카드 소개, my 아이사랑카드, 어린이집 찾기, 우리아이어린이집, 나눔정보, e-고객센터로 구성하였다. 회원은 부모가 아이사랑포털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원에 가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my 아이사랑카드로는 카드 발급 및 결제 내역을 관리하며, 우리아이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이용현황과 가정통신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정보시스템과 함께 구축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는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도입하였다. 통합정보시스템과 더불어 보육료 지원내역을 몇 가지 변경하였다. 우선 보육아동 출석일수에 따른 보육료 일할 계산방식을 개선

12) 주민등록번호와 보육료 지원자격은 새울시스템과 연계됨.

하여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5일 이하 25%, 6~10일 50% 11일 이상 100%를 적용하고 영아 기본보육료는 출석일수 계산 없이 월 초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둘째 행정편의를 위하여 타지역 거주 아동을 시설소재지 지원으로 일원화하였고, 부모의 결제 편의를 위하여 분기 단위 1회 결제도 가능토록 하였고 정산에 따른 업무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선불제를 후불제로 변경하되, 이용일수 11일 이후에는 당겨결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부모의 결제편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영아 기본보조금을 전자 바우처에 포함하지 않아 당초에 논의되었던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를 차등보육료 체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추진되지 않았다. 또한 비용지원과의 연계도 아직은 구체화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효율성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나) 서울시와 부산시 사례

지방정부 중에서 민간 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방식을 도입한 시·도는 서울시와 부산시이다. 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국공립·민간시설 유형의 구분 없이 시가 권장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인증마크를 붙여 공인하는 제도를 발표하고, 2009년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안심보육 및 클린운영을 기본취지로 한다.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환경 및 보육과정, 안전과 보육인력 등의 기본평가를 통과하고, 시간연장형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급식관리 지침 준수 등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서울시 보육시설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운영비 집행은 클린카드를 통하여 해야 한다. 공인시설수는 2009년말 현재 1,941개소이다.

민간 공인시설에는 국공립시설보육시설에 버금가는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표 II-1-6>과 같은데, 이러한 지원은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둘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영유아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은 매년 1회 자체 운영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 평가인증 취소 또는 기간만료 시에는 공인자격이 함께 상실된다.¹³⁾

〈표 II-1-6〉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지원내용

구분	내 용	
민간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 시설장: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 · 영아반교사: 인건비의 80% 지원(영아반 2개 이상 시설)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 취사부(1인): 인건비의 100% 지원(40인 이상 시설)
	수당	- 처우개선비, 중식비, 시간연장, 초과근무수당 등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기준 적용(기능보장비 제외) -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국고사업 동일 적용(교재교구비 등)
	기타 운영비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기준, 평균보육료는 서울시 지정) · 아동현원: 매월 10일까지 e-보육을 이용, 등재된 수 기준
공통	도우미지원	- 보육도우미: 월 80만원, 공인시설 중 정원 40인 이상 - 급식도우미: 공인시설 중 40인 미만 시설, 노인일자리아업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연계 지원
	CCTV 설치비지원	- 설치비 50%지원(시설장, 교사, 학부모 합의하)
	급식조리 기구지원	- 100인미만 시설: 가정용 오픈기 구입비용 80% (최대 40만원) - 100인이상 시설: 단체급식용 오픈기(100인용) 구입비용 90% (시설당 최대 900만원)

자료: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children.seoul.go.kr>.

다음으로 부산시는 2009년에 민간·가정보육시설 10~20개소를 선발하여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공보육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차 구·군 심사, 2차 시 단위 심사 후 2009년 공보육시설로 확정된 시설은 민간보육시설 14개소, 가정보육시설 4개소로 총 18개소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육시설에서는 부산시로부터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즉, 시설장·영아반 교사는 80%, 유아반 교사 30%, 취사부 100% 지원 등이며, 영아기본보조금 차액분 및 교사 처우개선비는 미지급된다. 인건비 지원 반별 최소 현원 등제 지원 사항은 정부지원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 자격 및 신청자격 제외시설은 <표 II-1-7>과 같다. 지정된 후부터 적용되는

13) 정부평가인증 기간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평가인증참여 신청기한 내 재평가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재평가 기간)을 부여함.

지원조건은 국공립과 동일한 보육료 수납, 국공립시설 종사자 1호봉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 종사자 전원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 운영 등이다.

지정시설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평가결과 평균점수 이상 시설은 향후 3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지정할 수 있다.

<표 II-1-7> 부산시 어린이집 공인시설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외시설

구분	신 청 자 격
신청자격	①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시설 ② 정원 91인 이하, 종사자(시설장 포함)12인 이하 시설 ③ 동일 장소에서 3년 이상 운영 시설 ④ 영유아 현원 2/3이상이 부산시 거주자 보육시설(주민등록 기준) ⑤ 시설장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부산시내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신청자격 제외시설	①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보육시설 운영 관련 행정처분 이상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관련 운영정지 이상 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이상 부과(처분) ② 시설운영비리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는 시설 ③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영유아 관련 학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 ④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보육시설 이외의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료: 부산광역시 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4) 보육 재정

보육비용 지원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보육사업 예산도 크게 증가되었다. <표 II-1-8>은 2005년 이후 중앙정부의 항목별 보육사업 예산이다. 시설 및 아동별 지원 확대로 국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은 1조 3229억원, 2006년은 1조 7236억원, 2007년은 2조 2866억원, 2008년은 2조 9916억원이며 2009년에는 3조 57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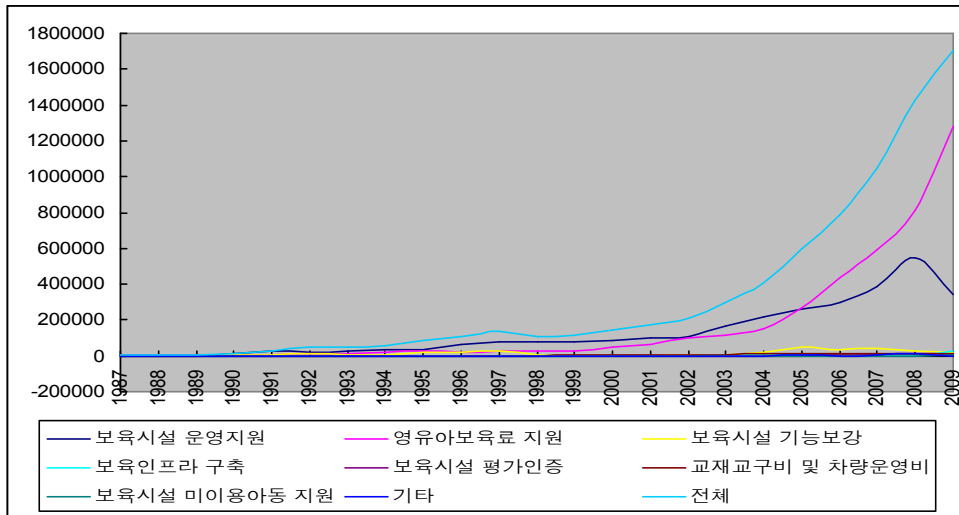
2009년도 보육예산 중 22.0%인 7855억원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고 74.7%인 2조 6692억원이 보육료 지원금이다. 또한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표 II-1-8〉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0~2006

단위: 백만원

내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596,865	672,563	554,824	658,368	753,082
	차량운영비	2,944	8,100	8,210	8,429	9,893
	교재교구비	22,559	24,546	22,000	21,896	22,609
	기본보조금	-	-	306,303	530,472	-
	소계	622,368	705,209	891,337	1,219,165	785,584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365,848	590,840	897,452	1,254,762	2,109,618
	5세아 무상보육	163,363	274,490	280,901	262,783	281,906
	장애아무상보육	31,274	61,043	71,543	66,577	105,602
	두자녀보육료	13,447	19,606	47,059	98,594	172,116
	소계	1,182,853	1,631,582	1,296,956	1,682,716	2,669,242
보육시설 기능 보강		120,291	67,189	83,263	65,197	41,978
인프라 구축 등 기타		6,383	5,237	15,100	24,615	8,205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	-	-	68,802
계		1,322,974	1,723,614	2,286,656	2,991,693	3,573,811

주: 국고 지원 사업 예산으로, 시·도 및 구·시·군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된 것임.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내부자료.



[그림 II-1-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추이

[그림 II-1-1]은 보육사업이 실시된 1990년 이후 보육사업 예산의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육사업 예산은 2004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보육예산의 증가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의 확대도 관계가 있으나 보육료 지원의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II-1-9> 보육 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예산 지원 현황(2009)

단위: 백만원, %

지자체	국고사업		특수사업			국고사업비 대비 비율(B/A)
	전체(A)	지방비	시·도	시·군·구	소계(B)	
서울특별시	543,544	428,241	114,829 ¹⁾	41,010	155,839	28.7
부산광역시	197,781	80,503	9,050	667	9,716	4.9
대구광역시	176,479	72,858	6,267	1,756	8,023	4.5
인천광역시	146,049	59,956	27,134	5,080	32,214	22.1
광주광역시	124,293	49,806	3,343	207	3,549	2.9
대전광역시	95,304	39,948	14,799	746	15,544	16.3
울산광역시	63,896	29,500	5,853	1,897	7,749	12.1
경기도	693,130	351,775	114,125	40,414	154,538	22.3
강원도	141,015	70,507	6,229	2,173	8,402	6.0
충청북도	149,198	74,600	3,680	15,505	19,185	12.9
충청남도	170,887	85,444	16,951	2,035	18,986	11.1
전라북도	230,523	115,261	14,926	2,695	17,621	7.6
전라남도	227,110	113,555	1,203	4,683	5,885	2.6
경상북도	222,783	111,312	12,680	5,688	18,368	8.2
경상남도	292,205	146,103	18,362	8,110	26,472	9.1
제주도	96,180	48,090	8,624	-	8,624	9.0
합계	3,570,376	1,877,457	378,054	132,662	510,716	14.3

주: 서울시 셋째아 보육료 50% 지원과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원 중 선택하는 비용 403억원이 포함됨.

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2009).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2) 보건복지가족부(2009). 국고지원확정내시.

이러한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사업 예산 이외에 각 시·도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수사업 실시에 따라 별도의 소요예산이 있으며, 이 예산 역시 총액은 계속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시·도 사업비 3871억원, 시·군·구 사업비 1327억원이다. 이는 각각 국고 사업비의 10.6%, 3.7%로 모두 14.3%이다.

이러한 지방정부 보육 특수사업 예산은 <표 II-1-9>에 나타난 것처럼 시·도별로 편차가 크고, 시·도와 시·군·구가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도 시·도별로 다양하다. 그

러나 거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에서 특수시책을 통해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지자체별 보육 관련 특수시책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경기도가 1,545억원 정도로 가장 많고 광주광역시가 35억원 정도로 가장 적다. 국고지원사업 비 대비 비율은 서울이 28.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22% 수준이며, 광주가 2.9%, 전남 2.6%로 가장 낮고, 부산과 대구가 5% 미만이다.

〈표 II-1-10〉 시·도별 지방정부 특수사업예산 원아 1인당 지원액(2009)

지자체	총 예산액(천원)	원아수(명)	1인당 지원액(원)	재정자주도(%)
서울특별시	155,839,032	186,691	878,257 ¹⁾	93.7
부산광역시	9,715,954	60,269	161,210	74.0
대구광역시	8,022,596	53,463	150,059	75.3
인천광역시	32,213,820	53,621	600,769	82.0
광주광역시	3,548,894	41,890	84,719	73.6
대전광역시	15,543,852	33,862	459,035	74.5
울산광역시	7,749,370	21,715	356,867	80.2
경기도	154,538,265	257,166	600,928	84.4
강원도	8,402,243	35,744	235,067	75.4
충청북도	19,184,677	40,060	478,899	74.6
충청남도	18,986,339	47,675	398,245	72.4
전라북도	17,621,266	53,680	328,265	71.7
전라남도	5,885,320	48,727	120,781	67.9
경상북도	18,368,462	59,968	306,304	74.6
경상남도	26,471,956	75,125	352,372	75.0
제주도	8,624,058	21,631	398,690	65.0
합계	510,716,104	1,091,287	467,994	78.9

주: 서울시는 양육수당 포함으로 다소 과다 추정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표 II-1-10〉은 시·도별 보육 관련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나타낸다. 시·도는 평균적으로 원아 1인당 467,994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다. 서울특별시가 88만원 정도로 가장 많고¹⁴⁾ 경기도와 인천광역지도 60만원으로 많았으며, 광주광역시 8만5천원 정도로 가장 낮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모두 재정자주도가 높은만큼 지원금액도 높다. 그러나 1인당 지원액이 낮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재정자주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주도가 낮은 제주도와 대전광역시의 1인당 지원액이 40만원 정도인 것을 보면 재정자

14) 일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포함되어 다소 과다 추정됨.

주도와 지원금액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수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 분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따라 지방 재정상의 여유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방의 재정상태와 정적인 관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의 차이는 정부 재정의 차이도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보육시설 설립과 운영 주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

<표 II-1-11>은 연도별 사업예산을 나타내는데, 특수사업 예산은 2009년 총 5107억원 규모로 과거에 비하여 액수는 증가하였으나 국고사업 예산 대비 특수사업 비용 비율은 많이 감소되었다.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확충에 따라 지방정부 분담금이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 사업비와 국고지원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2009년 현재 보육사업 예산은 총 4조 811억원이 된다.

<표 II-1-11>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1~2009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 사업비(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 사업비(C/A)
2001년 ¹⁾	360,027	41,755	-	401,782	11.6	-
2002년 ¹⁾	435,517	43,552	-	479,069	10.0	-
2003년 ¹⁾	627,705	156,230	28,081	812,016	24.9	4.5
2004년 ¹⁾	872,285	143,904	45,544	1,061,733	16.5	5.2
2005년 ¹⁾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²⁾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2007년 ²⁾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12.8	4.4
2008년 ²⁾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8.7	3.7
2009년 ³⁾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10.6	3.7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합한 것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자료: 1) 서문희 외(2006).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여성가족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3) 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표 II-1-12>는 2009년도 보육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지방과 중앙정부의 재원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총 예산 4조 900억원 중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의 41.4%를 분담하고 시·도가 27.7%, 시·군·구가 30.9%를 분담하고 있다.

〈표 II-1-1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9

단위: 천원(%)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계
국고지원사업	1,692,919	938,729	938,729	3,570,377
시·도 사업	-	193,527	193,527	387,054
시·군·구 사업	-	-	132,662	132,662
계	1,692,919	1,132,256	1,264,918	4,090,093
(비율)	(41.4)	(27.7)	(30.9)	(1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및 예산 개요.

나. 유아교육비용 지원 제도

1) 시설별 지원

유아교육 지원정책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에 차이가 많다. 전자는 시설별 지원이 주된 지원 방법이고 후자는 시설별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동별 지원이 주된 방법이다. 국공립유치원은 정부가 교사 급여는 물론 운영비와 시설비도 지역 교육청에서 국공립유치원에 직접 지원한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는 종일반을 운영하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수면실, 주방 및 위생시설,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당 500~2,000만원 정도를 환경개선비로 지원하였다.¹⁵⁾ 2005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통학버스 100대를 지원하였다. 농어촌에 거주하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원당 약 1백만원의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에 3,758개 유치원이 지원을 받았다.

또한 2006년부터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원한다. 이외 교육청별로 다양한 시설별 지원이 추진된다.

2) 교육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 9월부터 정부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부터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¹⁶⁾ 2004년부

15) 2004년에는 126개원, 2005년에는 1,416개원을 지원하였음.

16) 이는 보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터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이 현행 저소득층 만 5세아에서 만 3, 4세로 확대되어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두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둘째 자녀의 학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표 II-1-13〉 교육비 지원 실적: 2007~2008

단위: 명, %

구 분	만 3, 4세	만 5세	두자녀	계
2008년				
전체 취원아 수 (A)	283,677	254,145	-	538,976
교육비 지원 아동수 실적 (B)	110,000	129,000	(14,000)	239,000
교육비 지원 비율 (B/A)	38.8	50.8		44.3
2007년				
전체 취원아 수 (A)	263,731	277,819	-	541,550
교육비 지원 아동수 실적 (B)	121,697	135,652	(16,474)	257,349
교육비 지원 비율 (B/A)	46.1	48.8	-	47.5

주: ()는 중복지원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해당 연도). 유치원 현황 및 내부자료.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확대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전체 아동의 50.8%인 12만 9천여명이었고, 만 3, 4세 아동의 38.8%인 11만여명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였다(표 II-1-13 참조).

한편 유아교육법 하위법령으로 유치원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한시적으로 2년간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이 조항은 2007년 2월 2년 연장하였고, 2009년 2월 28일에서 2011년 2월 28일까지로 다시 2년 연장하였다.

3) 종일반 비용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유치원의 종일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일반 비용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종일반 운영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중 종일반에 다니는 유아에게 종일반비를 국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5만원 범위내에서 학부모의 실제 부담액을 지원한다.

4) 전달체계

유아교육은 2008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를 개정하여 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¹⁷⁾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2008년부터 적용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대부분의 지원 사업을 집행한다.

교육비용 지원전달방식은 원칙적으로는 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8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전자인식카드인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하였다. 유아교육 전자카드는 9월부터 전국 시범실시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아이 즐거운 카드는 보육비용 지원시스템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보육 아이사랑카드가 신한카드와 LG CNS 컨소시엄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 등급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발급되는데 비하여, 농협을 중심으로 발급한 유아교육 아이 즐거운 카드는 체크카드로 발급은 하지만 실제 교육비 결제는 인식시스템으로 완결된다. 원하는 경우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유아교육료 지원 대상에 대한 자산조사는 보육과 동일하게 읍·면·동에서 담당하며, 부모와 기관의 문의는 아이사랑카드 129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5) 유아교육 재정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국고 1억 2천만원, 지방 교육청 1조 2353억으로 모두 1조 2354억원이다. 보육예산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 개정 이전에는 중앙부처가 교육비 지원예산 일부를 국고로 확보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정부 예산이다(표 II-1-14 참조).

<표 II-1-15>는 2009년 유아교육 예산의 항목별 비율이다. 학비 지원이 인건비 지원보다 조금 많다. 이는 2005년도 유아교육 예산 중 71.1%인 4655억원은 인건비 지원 등의 시설운영지원이고 25.5%인 1671억원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었음과 비교하여 학비 지원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나타낸다. 그 동안 국고는 주로 소득계층별 교육비 차등지원금이고 지방정부예산은 주로 국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이었다.

17)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함.

〈표 II-1-14〉 유아교육 예산: 2002~2009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2008	2009
중앙	20,700	25,652	51,285	103,667	199,652	206,815	226	120
지방	314,079	356,835	405,162	551,200	686,359	762,675	1,058,982	1,235,323
계	334,779	382,487	456,447	654,867	886,011	969,490	1,059,207	1,235,44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각 연도).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표 II-1-15〉 항목별 유아교육 예산: 2009

단위: 백만원, %

구분	인건비	학비지원	교재교구비	기본운영비	시설비	기타	계
예산	459,713	487,059	19,982	99,454	70,304	98,812	1,235,323
비율	37.2	39.4	1.6	8.1	5.7	8.0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표 II-1-16〉 시·도별 원아1인당 유아교육 예산: 2009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원아수	원아 1인당 예산
전체	1,235,323	538,976	2.292
서울	105,405	82,155	1.283
부산	66,260	36,833	1.799
대구	55,476	27,326	2.030
인천	57,175	31,580	1.810
광주	46,461	16,872	2.754
대전	32,513	22,553	1.442
울산	42,053	16,191	2.597
경기	288,282	136,092	2.118
강원	54,980	14,356	3.830
충북	56,791	15,297	3.713
충남	62,516	21,380	2.924
전북	72,858	18,975	3.840
전남	75,388	18,593	4.055
경북	97,819	32,120	3.045
경남	112,334	43,376	2.590
제주	9,012	5,016	1.79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통계,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표 II-1-16〉은 시·도별 유아교육 항목별 예산과 유아교육 아동1인당 예산 규모를 제시한 것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강원, 충북, 전남, 전북이 원아

1인당 370~400만원 수준이다. 이는 농어촌 병설 유치원 등 국공립유치원의 인건비 지원 예산이 크기 때문이다.

다. 농어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1) 사업 내용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어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¹⁸⁾ 이 제도는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1.5ha 미만의 농어업인에 대한 부가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¹⁹⁾ 2005년에 사업대상 농지소유규모 기준을 2ha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에는 다시 5ha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20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가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 두 사업을 통합하여, 2009년부터는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8-115호('08.12.15)호에 의한 농촌 및 농림부고시 제1995-86호('95.10.10)에 의한 어촌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농지소유 5ha 미만인 가구를 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농가외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1,250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원 금액은 시설 이용아동 중 5세 미만아는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이고, 5세아는 100%, 시설 미이용아동은 전액지원 아동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35% 수준(단, 5세아는 50%)이다.²⁰⁾

18) 농림부는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에 일조하고자 2004년부터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음. 농어촌지역 기준은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고, 농가 기준은 농어업인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 하는 가구임.

19)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농지소유면적 15,000㎡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0~5세 아동,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임.

20) 2009년도 월 지원 금액은 0세아 134,000원, 만1세아 118,000원, 만2세아 97,000원, 만3세아 67,000원, 만4세아 60,000원, 만5세아 86,000원임.

지원방식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시·군·구 농정부서에서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시설에 수납하게 한다.

2) 지원 예산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은 2004년 292억원에서 2006년 445억원, 2008년 9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예산은 200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예산은 총 813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06억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2009년 예산이 2008년에 비해 줄었는데, 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수 감소와 보육교육비 차등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대상자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1-17〉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 2004~2009

단위: 백만원, 천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 계	29,204	38,308	44,484	55,658	98,824	81,296
국 비	14,602	19,154	22,242	27,829	49,412	40,648
지방비	14,602	19,154	22,242	27,829	49,412	40,648
지원 규모	27	30	33	32	49	49

자료: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각 연도). 농어업인 양육지원사업지침.

라. 양육수당 지원

현재 많은 지방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에 현금, 또는 현금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지역 주민 출산 장려책이므로 출산시에 현금을 축하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분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통장에 적립해 주는 지역도 있다. 출산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양육비용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의 2008년 지역별 자녀양육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표 II-1-1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지원금은 5만원부터 지역에 따라 50만원, 200만원, 3,000만원 등 다양하다. 지원금 지원대상은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되기도 하고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되기도 한다. 출산지원금을 첫째아에게 지원하는 지역은 인천 강화군, 경북 안동시 외 47개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둘째아에게 지원하는 지역은 충남 보령시, 경기 과천시 외 51개 시·군·구이다.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지역은 전북 순창군, 광주 서구 외 45개 시·군·구이다. 전남 순천시, 서울시 서대문구 외 34개 시·군·구는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며, 광주시 광산구와 서울시 송파구 외 17개 시·군·구는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셋째아 이상아 및 결혼 이주 여성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양육비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5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있다. 첫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전북 순창군, 전남 광양시 외 13개 시·군·구이고,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지역은 부산시, 강원도 인제군, 충북 보은군 외 18개 시·군·구이다.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인천시 중구, 전남 장흥군 외 57개 시·군·구이다.

〈표 II-1-18〉 양육비용 지원 총괄표

구분		대상	내역	실시 지방자치단체
출산	출산 지원금	첫째아	5만원~50만원	인천 강화군, 경북 안동시, 외 47개 시·군·구
		둘째아	5만원~200만원	충남 보령시, 경기 과천시 외 51개 시·군·구
		셋째아 이상	5만원~3,000만원	전북 순창군, 광주광역시 서구 외 45개 시·군·구
	출산용품 지원	모든 신생아	귀체온계, 내의, 물티슈, 목욕용품, 기저귀, 앨범, 3~30만원 상품권	전남 순천시, 서울시 서대문구 외 34개 시·군·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셋째 이상아 및 결혼 이주 여성 출생아	건강보험료 5년 불입 10년 보장계획 - 암 진단비 및 수술비 각종 질병 및 재해 입원비	광주시 광산구, 서울시 송파구 외 17개 시·군·구
육아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첫째아 이상	5만원~70만원	강원도 인제군, 전북 순창군, 전남 광양시 외 13개 시·군·구
		둘째아 이상	5만원~150만원	부산시, 강원도 인제군, 충북 보은군 외 18개 시·군·구
		셋째아 이상	5만원~400만원	서울시 성동구, 인천시 중구, 전남 장흥군 외 57개 시·군·구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재정리.

전반적으로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정책 이외에 추가로 출산 축하금이나 현금 또는 현물로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 육아비용 세제지원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부모의 보육료·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을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제도를 채택하여²¹⁾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일부 금액을 특별 공제한다. 공제액 한도는 초기에는 연간 100만원이었으며, 2004년부터 20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되었다. 또한 2004년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소득액공제제도는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 수준이 매우 낮다. 연 소득 3,000만원 기준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 공제 시 200만원 공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1,097,500원, 1,267,500원으로 연 17만원의 차이가 난다.²²⁾

바. 소결: 총 예산 규모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과 농업인 양육비를 모두 합하면 2008년은 4조 5246억원이고, 2009년도는 5조 4068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및 양육비용 지원 예산 비율은 2008년 기준으로 보육이 0.329, 유아교육이 0.103 등으로 총 0.442이고 2009년은 각각 0.389, 0.121로 총 0.528이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그림 II-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1) 조세 납부액에서 보육료, 교육비를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Tax Credit) 방식에 비하여 소득 역진적이고, 동일한 소득이 있는 가구라도 공제액 정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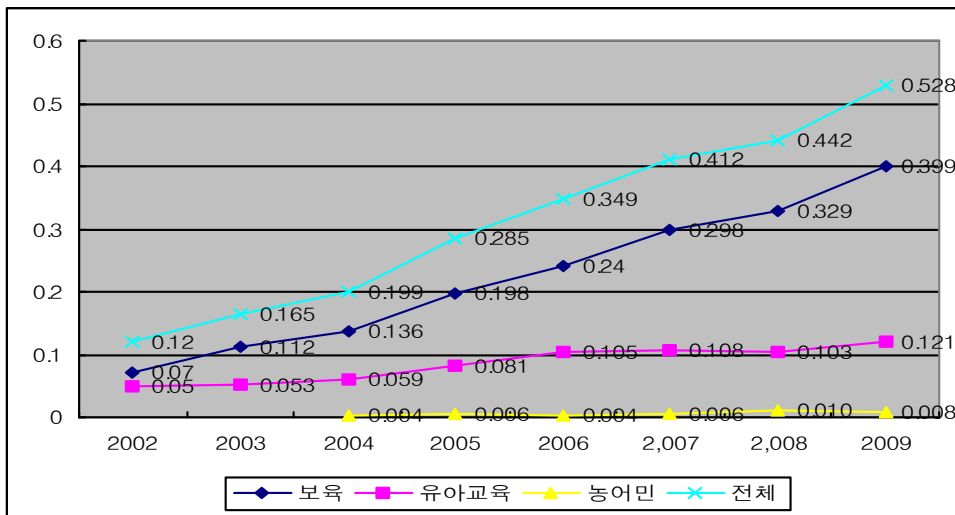
22) 국세청 홈페이지(<http://nta.go.kr>)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 이용하여 산출.

〈표 II-1-19〉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2007~2009)

단위: 백만원, %

구분	국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2007년				
보육	1,038,400	1,645,100	2,683,500	0.298
유아교육	206,815	762,675	969,490	0.108
농업인양육비	27,829	27,829	55,658	0.006
계	1,273,044	2,435,604	3,708,648	0.412
2008년				
보육	1,411,700	1,955,000	3,366,700	0.329
유아교육	226	1,058,889	1,059,115	0.103
농업인양육비	49,412	49,412	98,824	0.010
계	1,461,338	3,063,301	4,524,639	0.442
2009년				
보육	1,692,919	2,397,174	4,090,093	0.389
유아교육	120	1,235,323	1,235,443	0.121
농업인양육비	40,648	40,648	81,296	0.008
계	1,733,687	3,673,145	5,406,832	0.528

주: 2009년 GDP는 200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2009년 예산 중 양육수당 예산은 제외됨.
 자료: 1)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각 연도).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2) 농림부·농수산식품부(각 연도). 농어업인 양육지원사업지침.
 3)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자체 특수시책.



[그림 II-1-2] GDP 대비 보육·유아교육·농업인 양육비 예산 비율(2002~2009)

2. 외국의 양육비용 지원 제도

제2절에서는 외국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및 양육비용 지원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검토 대상 국가로 영국과 캐나다, 일본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이들 국가의 보육료 및 양육비용 지원제도가 다양하고, 둘째로는 최근에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을 강화한 사례 국가이기 때문이다.

가. 영국

영국의 양육비용 지원은 먼저 직접적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고, 이어서 수당, 세제지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가)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공급 및 이용 개요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영유아 정책은 아이들만의 정책이 아닌 부모와 노동 관련 정책으로 보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추구하였으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 보육을 국가 중요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1997년 노동당 정권에 의하여 만 3, 4세 유아교육의 무상화와 양질을 추구하는 지원제도로 전환하였고, 점진적으로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을 일원화하여 무상 공교육체제를 구축하였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중앙의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 중앙에서는 보육시설이 지켜야 할 기본이자 질적인 보육을 위한 기초로서 14개 영역으로 된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²³⁾을 제공한다. 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영유아들을 위해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설 운영자의 조건, 인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시설은 영유아의 복지, 학습, 발달에 대한 요구 등에 적합해야 하며, 아동법(Children Act)에 따라 국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영국의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이는 적합한 성인, 운영, 학습과 보호, 물리적 환경, 설비, 안전, 건강, 급간식, 동등한 기회, 특별한 요구, 행동, 가정과의 연계, 유아보호, 문서화 등 1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1)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공급

영국의 보육과 조기교육기관이 구별된다.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보육, 계절별 보육, 방과후 보육, 아동센터, 가정보육모로 구분되며, 조기교육 서비스는 유아학교, 유아학급(nursery classes)과 예비학급(reception classes)이 모두 있는 초등학교, 유아반은 없고 적응반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제공된다.

영국의 2007년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기관은 종일제의 비중이 가장 크고 가정보육모도 약 6만명 가량이 활동한다. 유아교육기관은 예비학급(reception classes)만 있는 초등학교가 8,900개소로 가장 많고, 유아학급과 예비학급이 모두 있는 초등학교가 6,800개소이고 유아학교는 450개소에 불과하다(표 II-2-1 참조).

서비스 공급의 주체는 유아교육기관은 대부분이 학교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보육서비스만 보면 서비스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은 아동센터가 58%이고 방과후클럽이 33%, 휴일클럽이 25%이고 종일제는 12%에 정도이다. 그러나 민간 중에서 상당수가 비영리 자원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계절 보육서비스는 65%가 민간 자원 형태로 운영된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사립기관의 비중이 크다(표 II-2-2 참조).

〈표 II-2-1〉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 수

구분	단위: 개소, 명	
	공급	정원
전체	112,600	2,494,000
보육(Childcare)	96,400	1,626,400
종일제	13,600	596,500
아동센터 종일제	950	51,100
기간제	8,700	248,100
방과후 클럽	8,500	259,900
휴일 클럽	5,800	230,300
가정보육모(등록)	59,800(69,200)	291,500
유아교육(Early Years)	16,200	867,600
유아학교	450	28,400
예비학급만 있는 초등학교	8,900	306,300
유아학급과 예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6,800	53,500

자료: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b).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07.

〈표 II-2-2〉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단위: %(개소)

구분	종일제	아동센터 종일제	기간제	방과후클럽	휴일클럽
민간	87	39	93	68	76
사립	66	20	29	43	44
자원	21	19	65	26	32
공공	12	58	7	33	25
지방당국	6	49	4	8	13
학교./대학	7	9	3	25	12
기타	-	-	1	2	2
계(수)	100(13,600)	100(450)	100(8,700)	100(8,500)	100(5,800)

자료: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b).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2007 Parent's Use Views and Experiences.

최근 영국은 보육서비스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 136개 가족정보서비스(Family Information Services) 기관 중 지역에 보육서비스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52%만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였고, 82%의 기관이 지난 1년 동안 부모들로부터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표 II-2-3〉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낸다. 주당 50시간을 기준으로 2세 미만 영아는 웨일즈 지방 평균이 146파운드로 가장 적고 런던 시내에는 226파운드이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잉글랜드 8,684파운드, 스코틀랜드가 8,216파운드, 웨일즈가 7,592파운드이다.²⁴⁾

〈표 II-2-3〉 보육 비용(주당 50시간)

단위: 파운드

구분	유아원 2세미만	유아원 2세이상	보육모 2세미만	보육모 2세 이상	방과후클럽 (15시간)
런던 시내	226	200	196	180	40
런던 외곽	192	177	189	176	52
잉글랜드 평균	167	156	156	152	40
스코틀랜드 평균	168	143	156	154	49
웨일즈 평균	146	142	150	148	41

자료: Daycare Trust(2009). Childcare cost survey 2009.

24) 2009년 1월 기준 영국 GNP는 45,575달러이고, 12월 기준 1파운드는 1906원임.

(2)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표 II-2-4>는 2008도 부모조사에서 조사된 지난 1주일간의 서비스 이용률을 나타낸다. 조사된 7,076명의 14세 이하 아동 중 36%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64%가 이용하였는데, 44%가 공식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종일제 보육서비스는 0~2세 아동 21%가 이용하며, 주당 12.5시간 무상보육 대상인 3~4세 아동의 17%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73%가 유아교육기관 및 놀이집단을 이용한다.

〈표 II-2-4〉 연령별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1주일)

단위: %(명)

구분	0-14세	0-2세	3-4세	5-7세	8-11세	12-14세
서비스 이용	64	59	90	63	64	50
공식 서비스	44	38	86	45	42	26
유아학교	3	3	14	-	0	0
유아학급	3	1	22	-	0	0
예비학급	4	0	17	11	0	0
종일제 보육시설	6	21	17		0	0
놀이집단/ preschool	4	6	17	0	0	0
방과후 활동, 클럽(학교)	20	-	4	27	35	22
방과후 활동, 클럽(학교 외)	4	-	1	6	7	4
보육모	4	5	6	6	4	1
내니/오페어	1	2	1	1	1	
비공식 서비스	34	37	39	34	35	27
전 배우자	5	3	6	5	7	5
조부모	22	30	28	21	20	12
형제자매	3	1	1	1	4	8
기타친인척	4	7	6	3	4	3
기타 이웃 등	6	3	5	7	7	5
보육서비스 미이용	36	41	10	37	36	50
(수)	(7,076)	(1,336)	(1,491)	(1,170)	(1,754)	(1,325)

주: (수)는 가중치 미부여임.

자료: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9).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f Parents 2008.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지출하는 보육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주당 평균 38.76 파운드인데 영유아가 지출하는 비용은 0~2세아 65.43파운드, 3~4세아 50.03파운드로 0~2세가 상대적으로 높다(표 II-2-5 참조).

〈표 II-2-5〉 가구당 주당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비용(보조금 포함)

단위: 파운드(명)

구분	0~14	0~2	3~4	5~7	8~11	12~14
평균	38.76	65.43	50.30	19.90	18.59	25.33
평균 표준오차 (수, 가중치 미부여)	±1.67 (2,072)	±3.41 (550)	±2.47 (712)	±2.12 (309)	±2.70 (378)	±8.86 (123)

자료: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07.

나) 보육·유아교육 비용지원 제도

(1) 유아 무상보육·교육

앞에서도 기술한 것과 같이 영국은 전체 3,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당 12.5시간, 연 38주간 무상 보육·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상 서비스는 유치원, 유아원, 가정 보육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는 유아교육 개혁 10개년 계획(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에 의한 것이다. 영국은 2004년 12월에 유아교육 개혁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06년 4월에 영유아 무료 교육기간 및 주당 교육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0개년 보육·교육전략 행동계획(Action Plan for 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을 발간하였다. 이 10개년 계획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선택성과 탄력성,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접근성,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 보육 이용가능성 등을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주요 실행계획으로 2006년 4월에 3, 4세 아동 무료 교육시설 이용기간을 연간 33주에서 38주로 연장하였고(HM government, 2004; HM Treasury et al., 2006), 또한 빈곤층 자녀 2세아 무료 보육을 시범 실시하여 1만 2천명이 수혜받도록 하고, 65만명 이상의 아동이 슈어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국은 2010년까지 아동빈곤을 퇴치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 영국 전역에 걸쳐 800여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²⁵⁾. 2006년 9월에 2,500여 개의 학교를 이용하여 학교시간 전후 아동보육을 제공하고, 2007년에는 무료 교육시설 이용시간을 주당 12.5 시간에서 15시간으로 시범확대하고, 2010년에 무

25) 슈어 스타트(Sure Start)는 영국 잉글랜드 정부의 아동 대상 프로그램으로, 원래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보육, 교육, 건강 및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모든 아이들의 보육 가능성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과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며, 그 부모를 부모로서 그리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부모·지역사회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영국내 하위 20%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동과 그 이외 지역 아동의 격차를 없앤다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임.

료 교육시설 이용시간 주당 15시간으로 전 기관에 확대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주당 2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 보육료 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는 보육과 연계하여 보육료로 지출된 비용의 80%²⁶⁾까지 지원하고 상한액은 한 자녀는 주당 175파운드이며, 두 자녀 이상은 주당 300 파운드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보육서비스는 승인(approved) 보육서비스 및 등록(registered) 보육서비스이다. 등록보육서비스는 잉글랜드²⁷⁾는 교육·아동서비스 및 기술 기준국(Ofsted), 웨일즈²⁸⁾는 보호 및 사회서비스 검사기구(The Care and Social Services Inspectorate), 스코틀랜드²⁹⁾는 보호규제위원회(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Care), 북 아이랜드³⁰⁾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 위원회나 신탁(A Health and Social Services Board or Trust)에 등록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승인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8세 이상 아동을 보호하려면 교육기술부의 위임을 받은 서비스 기관(Nestor Primecare Services Ltd)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7세 이상 보육 품질체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³¹⁾

(3) 고용주로부터의 지원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고용 취업보육수당, 보육비, 교육비 지원을 장려하였는데, 이는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고용주가 보육 바우처, 계약에 의한 위탁 보육, 사업장에 유아원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제로

26) 2006년 4월에 70%에서 80%로 조정되었음.

27) 잉글랜드는 7세 이하 아동이 하루 2시간 이상 아동의 집 이외의 장소에서 보육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하며 8세 이상아 보육이나 아동 집에서 보육서비스 제공은 승인을 받아야 함. 등록자는 보육대상아동 연령별로 5세 이하는 영유아 등록(Early Years Register), 5-7세는 강제 일반보육등록(compulsory part of General Childcare Register), 8세 이상은 자발적 일반보육등록(voluntary part of General Childcare Register)으로 구분됨.

28) 웨일즈도 7세 이하 아동이 하루 2시간 이상 아동의 집 이외의 장소에서 보육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함.

29) 스코틀랜드는 16세까지 아동 집 이외 장소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함, 내니나 시터 회사들도 등록하여야 하지만, 아동 집에서의 개인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하지 않음.

30) 북아이랜드는 7세 이하 아동이 하루 2시간 이상 아동의 집 이외의 장소에서 보육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하면 아동 집에서 보육서비스 제공은 승인을 받아야 함.

31) <http://www.hmrc.gov.uk>

근로자의 조세 부담과 보험금 부담을 감소시켜 그만큼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2006년 조사 결과 2.5%의 기업이 근로자의 보육 지원제도를 채택하여, 아동을 가진 해당 근로자의 36%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8%에 해당된다(HM Revenue & Customs, 2006). 또한 2008년 부모조사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받은 부모의 28%, 전체 서비스 이용가구의 7%가 고용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DfCSF, 2009).

(가) 보육바우처 등 세제 연동 제도

세제와 연동된 고용주의 지원제도는 보육 바우처, 계약에 의한 위탁 보육, 사업장 유아원 설치·운영의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보육 바우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조세제도와 연계한 아동보육바우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보육바우처는 예비세금감면(pre-tax deduction)의 일종으로 조세정책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일하는 부모가 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의 하나이다.³²⁾ 고용인과 고용주가 계약에 의하여 종이 및 전자 형태의 보육바우처를 받아서 사용하는 제도이다. 보육바우처는 급여명세표와 함께 받거나 이메일로 받아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고용주가 보육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보내기도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와 계약에 의하여 급여에서 바우처 금액을 삭감(salary sacrifice)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육 바우처 발행의 조건은 아니다. 급여를 그대로 두고 추가 지원으로 바우처를 발행하는 기업도 상당수이다. 보육 바우처의 적용 아동연령은 16세까지이다.

보육바우처를 받는 근로자는 일주 당 55파운드, 매달 243파운드까지 보육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데, 보육바우처에 해당되는 비용은 소득세, 국가보험금에서 면제되어 세율 적용에 따라 1년에 한 부모당 각각 1,195파운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세율 부담자는 1년에 904파운드까지 절약되며, 높은 세율 부담자는 연간 1,195파운드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면 각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고용인에게는 전환된 급여분의 국가보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고용인이

32) 영국은 고용주의 근로자 보육 지원 방안으로 고용 취업보육수당, 보육비, 교육비 지원을 장려하였는데 이들은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 기준에 포함됨. 그런데 2005년부터 보육바우처, 계약에 의한 위탁 보육, 사업장 유아원 설치 및 운영하여 근로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06년 조사 결과 2.5%의 기업이 근로자의 보육 지원제도를 채택하여, 36%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 부담금의 12.8%까지 절약할 수 있다(HM Revenue & Customs, 2009³³).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보육시설, 유아원, 유치원, 탁아소, 보모, 아기 돌보미, 방과 후 클럽, 휴일이나 주말의 놀이활동 클럽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모두 적용되는데, 이들 서비스는 아동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보육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서비스이어야 한다.

이러한 보육바우처 제도는 많은 경우에 보육바우처 회사를 통하여 실시되는데, 수수료는 제공되는 보육바우처 서비스 비용의 5~8%로 알려져 있다. 이 금액은 기업이 절약하는 비용에 미치지 않는다.

전자 보육바우처를 다루는 아코르 서비스(Accor Service)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³⁴ 이 회사는 현재 전세계 40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가입자 수가 49만 회사 및 기관, 3200만 이용자, 120만 서비스 제공자에 달하며, 사업 중의 하나가 보육바우처 사업이다. 1989년에 처음으로 영국에 보육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3년 'Direct Stored Value System'을 도입함으로써 전자 형태의 바우처를 시행하였다³⁵. 전자바우처도 종이 바우처와 마찬가지로 수혜 대상 예정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 수혜 대상 예정자의 급여의 세액 수준과 기관 이익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서비스 동의, 계약 개정, 관할 세무서의 통지 및 등록 등 심사 절차가 끝난 후, 수혜 대상 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수혜 장소 및 지불액이 결정된다. 이용자는 아코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요청하면³⁶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제도 이용을 원하는 피고용인들은 직접 아코르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고용주들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 등록 후에 서비스 이용을 선택한 피고용주들에게는 이용자들이 연락할 수 있는 아동보육담당자의 목록, 개인의 고유 ID와 개인 계좌번호가 인쇄된 개별 회원 카드, 그리고 제도 안내 편지가 배달된다. 작업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본인 부담금 내역은 전산 시스템 혹은 ARS를 통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작성하며,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국 금융거래 전자처리 시스템(Bankers' Automated Clearing Services: BACS)를 통하여 임금이 지급된다(이재원, 2008).

33) <http://www.hmrc.gov.uk>

34) 영국의 보육바우처회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재원(2008)을 참고함.

35) <http://www.accorservices.co.uk>

36) 이 과정은 DSV라고 불리는 아동보육바우처 시스템(Childcare Vouchers System)에 업로드하는 과정임.

(나) 세제연동 제도와 다른 지원 제도간의 관련성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보육바우처로 받는 경우에 급여를 최저 임금 이하로 낮추면서 바우처를 받을 수는 없다.

급여의 삭감((salary sacrifice)은 급여에 기반을 두는 각종 보험이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선 소득이 낮아지므로 소득이 기준이 되는 제도의 범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소득에 근거하여 기여하는 각종 급여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법정모성급여와 법정질병급여가 (Statutory Maternity Pay and Statutory Sick Pay)가 이러한 급여에 해당된다.

근로세액공제와의 관계만 보아도 소득이 감소하면 근로세액공제 자체는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소득이 높아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자³⁷⁾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부모의 보육료 부담액이 감소하면 80%까지 지원되는 보육료의 아동소득공제 대상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감소한다. 따라서 그 영향은 잘 따져 보아야 한다.

(4)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수혜 경험

2007년 조사에서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55%로 조사되었는데, 이중의 18%가 비용을 지원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04년 15%에 비하여 증가된 비율이다.

〈표 II-2-6〉 보육·유아교육서비스 비용 지원 시 지원 주체

단위: %(명)

구분	전체	최연장 자녀 연령					가족유형	
		0-2	3-4	5-7	8-11	12-14	양부모	한부모
지방 교육당국	61	41	80	64	42	42	65	47
지방 당국 사회서비스부	4	5	3	2	4	7	3	6
고용주	19	34	12	16	9	8	24	3
보육지원기금	2	2	2	2	12	0	1	9
전 배우자 파트너	6	2	3	11	11	28	1	20
기타	12	18	7	6	23	16	10	18
(수)	(483)	(140)	(276)	(67)	(69)	(31)	(452)	(131)

주: (수)는 가중치 미부여

자료: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2007 Parent's Use Views and Experiences.

비용을 지원 받았다는 경우에 가장 보편적인 지원은 지방교육당국으로부터로 61%

37) 아동소득공제의 상한은 연 58,175파운드이며, 0세 미만아가 있으면 연 66,350파운드임.

가 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19%는 고용주, 6%는 전 배우자 및 파트너이고 4%가 사회서비스, 2%가 보육지원기금 등이다. 정부는 고용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의 증가를 바우처 등 기업의 근로자 지원정책의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이는 2004년에 7% 수준이었다(표 II-2-6 참조). 한편, 2008년 부모조사 결과에서 고용주로부터의 지원은 73%가 보육바우처를 통한 지원으로 조사되었다(DCSF, 2009).

최연장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취학전 자녀의 경우 특히 영아가 고용주 지원이 비율이 34%로 높고,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3-4세가 지방교육당국으로 지원을 받는 비율이 80%이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지원 받은 비율은 낮고 배우자 및 파트너의 지원을 받았다는 비율이 20%이다

2) 양육비용 현금 지원

가) 아동 및 근로 세액공제

영국의 세액공제는 2003년에 중류소득의 가정을 돕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부양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에 참여하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가 있다.

아동세액공제는 영유아 및 교육받는 아동을 양육하는 16세 이상 부모가 대상이며, 취업 및 소득과 연계하여 세액을 공제한다. 아동세액공제는 대상 아동이 통상 만 15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되고 장애아동은 만 16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전일제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9세까지 적용되며, 16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교육중인 경우에도 특정조건을 전제로 20주 동안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제금액은 아동세액공제액만으로는 한 자녀 기준으로 연 소득 15,000 파운드까지는 2,780파운드, 20,000파운드는 1,240파운드, 5만파운드는 545파운드, 55,000파운드는 210파운드를 공제 받고, 6만파운드 이상은 공제대상이 아니다(표 II-2-7 참조).

근로세액공제는 연령, 부양자녀 여부,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부양자녀는 아동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가 결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양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16세 이상으로 주당 최소한 16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한다. 부부가 종일제로 근로하며 연소득이 25,000파운드이고 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연 4,540파운드로 주당 87파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두 배가 되면 주당 10파운드로 낮아진다.

한편 부양하는 아동이 없을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25세 이상은 최소 주당 30시간

근로, 장애가 있으면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 당사자나 배우자가 50세 이상이고 소득보장급여, 구직수당 등을 중단하고 근로로 복귀할 경우 주당 최소 16시간 근로하여야 공제 자격이 부여된다. 근로세액공제액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독신 14,000파운드, 부부 18,000파운드 이하로 축소되고 공제액도 감소한다. 혼자 살면서 종일제로 근무하고 연 10,000파운드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 1,270파운드로 주당 24파운드의 세액을 공제 받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3,130 파운드를 공제 받는다.

<표 II-2-7> 연 소득수준별 자녀수별 아동가구 세액공제액: 2009~2010

단위: 파운드

연 소득	아동세액공제 단독			아동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경제활동 안함	2,780	5,020	7,255	2,780	5,020	7255
5,000	2,780	5,020	7,255	6,535	8,770	11010
8,940 ¹⁾	2,780	5,020	7,255	6,330	8,565	10805
10,000	2,780	5,020	7,255	5,915	8,155	10390
15,000	2,780	5,020	7,255	3,965	6,205	8440
20,000	1,240	3,475	5,715	2,015	4,255	6490
25,000	545	1,525	3,764	545	2,305	4540
30,000	545	545	1,815	545	545	2590
35,000	545	545	545	545	545	640
40,000	545	545	545	545	545	545
45,000	545	545	545	545	545	545
50,000	545	545	545	545	545	545
55,000	210	210	210	210	210	210
60,000	-	-	-	-	-	-

주: 1) 25세 이상 성인이 주당 30시간 근로할 때 받는 최소 임금임.

자료: HM Revenue & Customs(2009).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아동 수당을 받거나 등록된 맹아인 경우에 해당된다. 소득 공제액수는 장애아동은 주당 51파운드로 연 2,670파운드, 중증장애아는 주당 72파운드로 연 3,745파운드를 공제 받는다.

<표 II-2-8>은 세액공제 수혜비율을 나타낸다. 1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최연장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2004년 64%, 2007년에 66%의 가구가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이중 42%는 아동세액공제, 25%는 근로 및 아동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연령별로는 영유아가구가 수혜 비율 70%로

그 이상 연령가구보다 수혜비율이 높다. 한편 근로세액공제 신청자 중 보육비용으로 공제를 받은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10% 정도인데, 취학전 아동가구는 영아가구 16%, 3-4세 가구 19%로 취학아동가구보다 수혜비율이 높다.

〈표 II-2-8〉 아동가구 세액공제 비율: 최연장 자녀 기준

단위: %(가구)

구분	2004	2007						2008
		전체	0-2	3-4	5-7	8-11	12-14	
안 받음	36	34	29	29	34	35	39	32
아동세액공제	38	42	51	45	40	38	38	43
근로세액공제와 아동세액공제 (수)	(7,691)	(7,054)	(1,405)	(1,423)	(1,169)	(1,648)	(1,409)	(7,004)
근로세액공제신청자 중 보육비용 공제 비율 (수)	11 (2,034)	10 (1,750)	16 (329)	19 (363)	9 (288)	7 (422)	5 (348)	14 (1,737)

주: (수)는 가중치 미부여

자료: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2007: Parent's Use Views and Experiences.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9).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Of Parents 2008.

영국의 세액공제는 2003년에 중류소득의 가정을 돕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부양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아동세액 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에 참여하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공제(Working Tax Credit)가 있다.

아동세액공제는 영유아 및 교육받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대상이며, 취업 및 소득과 연계하여 세액을 공제한다. 아동세액공제는 통상 만 15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되고 장애아동은 만 16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전일제 교육 대상자는 19세까지 적용되며, 16세 이상 17세 미만인데 교육중인 자도 특정 조건을 전제로 20주 동안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90%가 아동세액공제 수혜를 받고 있다.

근로 세액 공제는 1주일에 16시간 이상 근로하는 저소득층 경우에 근로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액수는 연령, 부양자녀 여부,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양하는 아동이 없을 경우에는 25세 이상은 주당 30시간, 장애가 있고 16세 이상은 주당 16시간 이상, 당사자나 배우자가 50세 이상이고 소득보장급여, 구직수당 등을 중단하고 근로로 복귀할 경우 주당 16시간 근로하여야 한다.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16세

이상으로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한다. 혼자 살면서 종일제로 근무하고 연 10,000파운드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주당 24파운드의 세액을 공제 받는다. 한편 부부가 종일제로 근로하며 연소득이 25,00파운드이고 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주당 87파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두 배가 되면 주당 10파운드로 낮아진다.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아동 수당을 받거나 등록된 맹아인 경우에 해당된다. 소득 공제액수는 장애아동은 주당 51파운드로 연 2,670파운드, 중증장애아는 주당 72파운드로 연 3,745파운드를 공제 받는다.

나) 아동수당(Child Benefit)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저축 등에 관계없이 1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면세가 되는 급여이다. 아동 연령이 16세나 17세라도 교육이나 훈련 중이거나 또는 승인된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교육 중이면 수혜 대상이 된다. 아동이 함께 살지 않더라도 아동을 부양하고 지불하는 액수가 수당 급여액보다 많으면 신청 대상이 된다.

수당 액수는 아동 출생순위별로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첫 번째 아동은 주당 20파운드이고, 그 이후 출생 아동은 아동 1인당 각각 일주일에 13.20파운드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은 4주에 한번 지급되지만, 소득관련 급여, 소득에 기반을 둔 구직수당, 고용수당을 받거나 한부모일 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지급한다.

다) 기타

영국은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는 해지하거나 찾을 수 없는 장기 저축 및 투자 계정인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02년 9월 1일 출생아이고 영국에 거주하며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출생시에 정부가 250 파운드 바우처를 만들어 주고 만7세에 한 번 더 250 파운드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각 250파운드를 추가로 불입하여 준다. 이 계정에 부모는 연간 1,200파운드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고, 계정의 형태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 취업하기 전 26주 동안 소득보전수당, 구직수당, 불능급여, 중도장애수당 등을 받던 사람으로 취업하여 주당 16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 취업수당(Job Grant)이 지급되며, 소득수당이나 구직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이 아동을 부양해야 할 경우 주당 5파운드부터 1,000파운드까지 아동부양 보너스 및 급여가 제공된다.

나. 캐나다

1)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가)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공급 및 이용 개요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s)와 3개의 준주(territories)로 구성된 연방정부로,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는 주와 준주 정부의 업무이며 연방정부는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 Social Development)가 보육 주무부처로 주정부와 공조한다. 이외에 재정부 및 보건부 등에서 사안에 따라 관련 업무에 협조한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원주민이나 군인가족, 신규 이민자나 망명자 등 특수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한다. 둘째, 육아휴직수당이나 아동수당(National Child Benefit)과 같은 현금이나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주와 준주에 대한 이전 지불(transfer payment)을 통해 유아교육 및 유아보육 재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이전 지불은 2003년 시작되었으며, 각 주·준주의 ECEC 프로그램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Framework Agreement), 보편적 양육수당(UCCB) 등을 통해 연방정부의 리더십을 제공한다(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2007).

캐나다는 모든 지역에서 크게 취업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과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외에 유아원 등이 주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모든 주·준주는 공립 유치원과 등록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등록된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이용률, 질, 재정, 비용, 교사/직원 훈련, 임금, 관리감독 등은 지역마다 많은 편차가 있다. 특히, 퀘벡 주는 다른 주와는 달리, 1997년부터 보편적 보육프로그램(universal child care program)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비용의 지원 양상이나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다른 주와 차이를 보인다. 유치원은 이용시간, 연령자격, 교과과정 접근 및 교육적 기대 면에서 다양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캐나다 전역에 걸쳐 비교적 일관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원화된 체계에 따라 캐나다의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

캐나다 보육서비스 등록 등은 주·준주 정부 책임으로, 사회·지역사회 서비스부(Social, Community Services Ministries)에서 담당한다. 각 주·준주 정부는 등록된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아동 대 교사비율, 반 정원, 교사자격, 건강 및 안전 등을 규제하고, 가정보육서비스에 대해서도 인증기구를 통하여 혹은 주정부가 직접 인증·규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많은 가정보육서비스는 규제 밖에서 운영된다.

캐나다에는 2007년 현재 가정보육과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하여 약 837,000여개의 보육서비스가 인가, 등록되어 있다. 전체 보육서비스 중 가정보육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이다(표 III-2-9 참조). 보육서비스 공급은 1992년의 371,573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보육시설은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II-2-9〉 캐나다의 등록 보육서비스(2007년)

단위: 개소

구분	0-5세 아동 종일제 기관	학령기 아동 보육	가정보육 서비스	전체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Newfoundland and Labrador)	4,812	700	356	5,868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Prince Edward Island)	3,992	797	35	4,824
노바스코샤 주(Nova Scotia) ⁴⁾	N/A ⁴⁾	N/A ⁴⁾	148	13,247
뉴브런스윅 주(New Brunswick) ⁵⁾	7,858	6,516	288	14,170
퀘벡 주(Quebec) ¹⁾	114,499	161,428 ⁶⁾	88,645	364,572
온타리오 주(Ontario)	149,129	74,912	19,447	242,488
마니토바 주(Manitoba)	15,697	6,780	3,898	26,375
사스카추완 주(Saskatchewan)	5,613	935	2,302	8,850
앨버타 주(Alberta)	44,171	15,579	11,427	71,177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British Columbia)	41,412	26,533	14,441	82,386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909	450	344	1,730
누나부트 준주(Nunavut Territory)	852	118	0	970
유콘 준주(Yukon Territory)	520	175	250	1,293
합계	398,197	299,289	141,581	837,923

- 주: 1)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 사용으로, 일부 주의 경우 합계가 100%가 아님.
- 2) 일부 주에서는 종일제와 반일제 미구분으로 캐나다 전체를 포함하지 못함.
- 3) 가정보육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연령구분에 따른 수치 자료를 얻기가 어려움.
- 4) 노바스코샤 주는 0-5세 아동과 학령기 아동 미구분으로, 전체 기관서비스의 2/3(8,733)은 0-5세 범주에, 나머지 1/3(4,366)은 학령기 범주로 할당하였음.
- 5) 뉴브런스윅 주와 유콘 준주에서, 연령으로 나누어진 수치는 이용서비스의 수치를 나타냄.
- 6) 퀘벡 주 학령기 아동의 보육 관련 자료 미확보

자료: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Child Care Space Statistics(2007).

〈표 II-2-10〉 캐나다의 등록보육시설의 비영리 시설 비율(2007년)

단위: 개소, %

구분	비영리시설 (A)	영리시설	전체 (B)	비영리시설 비율(A/B)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Newfoundland and Labrador)	1,632	3,880	5,512	30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1), 2)} (Prince Edward Island)	2,003	2,821	4,824	44
노바스코샤 주(Nova Scotia)	7,052	6,047	13,099	54
뉴브런스윅 주(New Brunswick) ³⁾	-	-	14,170	34
퀘벡 주(Quebec)	237,362	38,565	275,927	86
온타리오 주(Ontario) ⁴⁾	172,472	51,569	224,041	78
마니토바 주(Manitoba)	21,338	1,139	22,477	95
사스카추완 주(Saskatchewan)	6,523	25	6,548	99.6
앨버타 주(Alberta)	28,322	31,428	59,750	47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British Columbia)	-	-	67,945	N/A ⁵⁾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1,359	0	1,359	100
누나부트 준주(Nunavut Territory)	970	0	970	100
유콘 준주 ¹⁾ (Yukon Territory)	676	617	1,293	52
합계	479,709	136,091	697,915	69

주: 1)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와 유콘 준주는 등록된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수치임

2) 유치원이 공교육체계에 속한 다른 주·준주와의 비교를 위해 단일제 유치원은 제외함.

3) 뉴브런스윅 주는 영리/비영리 보육시설 숫자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음. 보육시설의 약 34%가 비영리, 66%가 영리시설로 알려져 있음.

4) 온타리오 주의 비영리 기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한 수치임

5)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Child Care Space Statistics(2007)의 표를 재구성함.

이들 기관 보육서비스 중 2007년 현재, 전체 기관보육서비스의 약 70% 가량이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준주마다 큰 차이가 있어서 비영리 비율이 30~40%에서 1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부 주·준주에서는 영리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표 II-2-10 참조).

캐나다의 보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부담금,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보조금,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재정을 충당한다. 모든 주·준주에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자금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퀘벡 주를 제외하면, 이러한 등록된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권(entitlement)을 주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Background Report for Canada, 2003). 공공재정에 의해 지원되는 대부분의 보육정책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형태로, 권리라기보다는 복지서비스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김혜원 외, 2007).

퀘벡 주는 다른 주·준주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퀘벡 주는 1997년 9월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보편적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을 새로운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하여, 보육시설의 정원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1997년 시행된 퀘벡 주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법률(Québec's Act Respecting Childcare Centres and Childcare Services)에서는 '모든 아동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질 좋고 연속성 있는 개별적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주의적 원칙을 밝히고 있다(Tougas, 2002). 구체적으로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나머지 비용을 정부가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비용을 직접 운영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퀘벡 주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나갔는데, 제도 시행 초기인 1997년에는 4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하루 5달러로 제한하고,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종일제 유치원 운영을 시작하였다. 보육비 지원은 1998년 9월, 3세 아동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모든 보육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11월에는 보육비가 7달러로 상승했다. 보육서비스는 주로 비영리, 지역사회 기관들에 의해 제공되며, 정부가 운영비의 80%이상을 지원하고 부모가 내는 비용은 운영비의 20%에 불과하다. 부모의 소득이나 취업(학업)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주당 23시간까지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Tougas, 2002).

캐나다의 보육 서비스 이용률³⁸⁾은 대체로 낮은 편이며, 주와 준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0~6세 아동의 약 24%가 등록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다.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는 퀘벡 주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다른 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표 II-2-11>은 캐나다 아동청소년 종단연구(The Canadian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NLSCY)의 6주기(2004~2005년도)³⁹⁾ 자료를 토대로

38) 캐나다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자료가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음.

39) NLSCY 자료가 현재 캐나다 전역의 보육서비스 이용양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이지만, 모가 취업 중이거나 학업 중인 경우에만 미취학 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에 전체 캐나다 통계는 아님. 보육서비스의 유형은 4가지로, 등록 보육서비스는 기관과 가정 보육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며, 유치원을 포함시킬 경우 유치원도 등록 보육서비스에 속함. 전통적으로 NLSCY에서는 유치원을 보육서비스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Lefebvre & Merrigan, 2008을 볼 것), 많은 부모들이 유치원을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대체물로 이용함에 따라, Cleveland 등(2008)은 유치원도 보육서비스의 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 이 조

만들어진 것으로 모가 취업중이거나 학업중인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나타낸다(Cleveland, et al., 2008).

〈표 II-2-11〉 취업(학업) 중인 모의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주요 보육서비스(2004~2005)
단위: 명, %

구분	유치원 포함시		유치원 미포함시	
	아동수	비율	아동수	비율
등록 보육서비스	619,200	48.8	435,600	34.3
미등록 보육서비스, 비혈연	186,300	14.7	212,000	16.7
미등록 보육서비스, 혈연	187,100	14.8	215,800	17.0
부모/가족이 돌봄(서비스 미이용)	275,700	21.7	405,000	31.9
합계	1,268,300	100.0	1,268,400	100.0

주: 이 표를 비롯한 NLSCY의 자료들은 주로 6-71개월 아동에 대한 자료임.
자료: Statistics Canada, NLSCY 2004-5(cycle 6), Cleveland et al., 2008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주요 보육서비스란 기준이 되는 주에서 가장 많은 시간동안 이용한 보육서비스 유형을 의미하며, 부모 또는 가족이 돌본 경우는 아동이 다른 보육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부모 또는 가족이 전적으로 돌본 경우에만 해당된다.⁴⁰⁾

〈표 II-2-11〉에 나타나듯이, 모가 취업 중이거나 학업 중인 가정의 미취학 자녀들은 3분의 1 가량이 등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거의 절반까지 증가한다. 유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자료를 보면, 등록 보육서비스 이용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부모 또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치원 이용 아동들 중에는 다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유치원만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 보육서비스 다음으로는 부모나 가족이 전적으로 돌보는 비율이 높았으며, 비혈연 또는 혈연에 의한 미등록 보육서비스는 이용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부모나 가족 외의 사람이 아동을 돌보는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70~8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자료를 NLSCY의 가장 오래된 자료인 1주기(1994-1995년도) 자료와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캐나다의 보육서비스 이용 양상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특히

사는 가을-겨울에 걸쳐 이루어짐.

40) 이러한 이유로 NLSCY 자료는 부모/가족의 돌봄의 역할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부모/가족의 돌봄을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함(Cleveland et al., 2008).

1997년 보편적 보육프로그램을 도입한 퀘벡 주와 나머지 주·준주들을 비교해 보면, 퀘벡 주의 보편적 보육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I-2-12> 캐나다 취업(학업)모의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주요 보육서비스의 변화
단위: %

구분	캐나다 전체		퀘벡 주		나머지 주·준주	
	2004~05	1994~95	2004~05	1994~95	2004~05	1994~95
등록 보육서비스	48.8	21.9	72.2	24.9	41.6	21.2
미등록 보육서비스, 비혈연	14.7	31.5	5.5	31.8	17.5	31.4
미등록 보육서비스, 혈연	14.8	14.8	5.8	13.4	17.5	15.1
부모/가족이 돌봄	21.7	31.8	16.5	29.8	23.3	3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Statistics Canada, NLSCY 1994-5(cycle 1) and 2004-5(cycle 6), Cleveland, et al.(2008)에서 재인용.

<표 II-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캐나다 전체에서 10년 동안 등록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혈연에 의한 보육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비혈연에 의한 미등록 보육은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부모나 가족이 전적으로 돌보는 비율도 3분의 1가량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퀘벡 주의 보육서비스 이용 양상은 나머지 주·준주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퀘벡 주에서는 2004~05년에 취업 또는 학업 중인 모의 미취학 자녀의 70% 이상이 등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등록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주·준주에서 등록 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은 40%를 겨우 웃돌고 있다. 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도 퀘벡 주에서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나머지 주·준주에서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퀘벡 주의 보편적 보육프로그램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등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2) 유아교육서비스 이용현황⁴¹⁾

캐나다의 유치원은 만 5세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의 일부로서, 거의 모든 주·준주⁴²⁾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에는 교육담당 부서가 없다. 취학전 만 5

41) 캐나다의 지역별 유치원 원아수와 유치원 이용특성(이용아동 연령, 종일제 운영여부 등)은 신나라·조혜주(2008)를 참고할 것.

42)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에서는 보육시설법(Child Care Facilities Act)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가 유치원 허가, 교사자격, 재정 등의 교육부의 유아교육 관련 사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음(신나라·조혜주, 2008).

세 이상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모든 주·준주가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유치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⁴³⁾, 5-6세 이상 아동의 95%가 이러한 유치원에 다닌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한 주는 노바스코샤주와 뉴브론스윅주뿐이며, 그 이외 주·준주에서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대부분의 4세 아동들도 유치원(junior kindergarten)에 다니는 반면⁴⁴⁾, 다른 주에서는 소수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만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OECD, 2006).

유치원에는 2006년 현재 약 328,028명의 5세 아동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4세 이하 아동은 약 131,758명으로 추정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4세 이하 아동들은 대부분 온타리오 주에 속해있다. 유치원은 대부분의 주에서 하루에 2.5시간 가량 하는 반일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 일부 주의 몇몇 학교에서는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온타리오 주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격일제로 유치원이 종일제로 운영되기도 한다(신나리·조혜주, 2008).

나)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비용지원 제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캐나다의 보육서비스는 주·준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히 1997년 보편적 보육을 도입한 퀘벡주와 그 이외 주·준주들은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퀘벡 주와 나머지 주·준주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캐나다의 비용지원 제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퀘벡 주와 마니토바 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부모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보육시설 또는 가정 내 보육에 비용을 제공한다(Cleveland, et al., 2008). 퀘벡 주는 모든 연령의 아동에 대해 1일 7달러로 동일하게 보육료를 책정한 반면, 마니토바 주는 연령에 따라 보육료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⁴⁵⁾.

퀘벡 주를 제외한 주·준주에서 보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비용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설보조금으로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이들 주의⁴⁶⁾ 부모 보조금 지원 제도는 다양하게⁴⁷⁾ 설계되어

43) 대개는 시간제 프로그램이지만 퀘벡 주에서는 종일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4) 4세 아동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하급유치원(junior kindergarten), 5세 아동 대상의 유치원을 상급유치원(senior kindergarten)으로 구분함.

45) 2-5세 아동의 경우, 월 376달러, 영아의 경우 월 560달러임.

46) 퀘벡 주는 1997년 이후 4년에 걸쳐 보육료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47) 보조금에 대한 대기수요, 보조금의 액수, 부모의 추가비용 납부 가능여부, 영리기관에 대한 보조금 제공 가능여부 등이 포함됨.

있으나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이를 보면, 첫째, 대상 가족들은 일종의 수급자격조사를 주기적으로 거쳐야 한다. 둘째,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입증하는 사회적 자격기준(social criteria)과 소득 자격기준(financial criteria)의 두 가지 종류의 자격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회적 자격기준에는 부모의 취업·학업·훈련 상태나 장애, 건강상태와 아동의 특수욕구나 위험요인 등이 포함된다. 셋째, 보조금은 등록된 종일제 기관과 등록된 가정보육서비스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비용은 부모가 아닌 보육시설에서 직접 수령한다. 넷째, 앨버타 주를 제외한 주·준주에서 보육료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12~13세가 될 때까지 지원된다(Beach & Friendly, 2005).⁴⁸⁾

보육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가구의 연간 순소득은 각 주별로 다음 <표 II-2-13>과 같다. 보육비 지원 자격은 가구형태와 자녀수 등에 따라 다른데, 가구 형태별로 연간 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육료 지원 자격을 잃게 된다. 연간 순소득이 그 사이일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2004년 이후, 네 개 주⁴⁹⁾에서는 소득 자격기준이 올라갔으며, 나머지 주·준주에서는 거의 일정하다.

전반적으로 캐나다의 보육비용 지원 금액은 공교육 국가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2006년도 보육시설 당 평균 지원금액은 3,259달러이다. 지원 증가율 또한 매우 낮아서 2004년에 비하면 36달러, 2001년 이후 고작 74달러가 증가한 데 그치고 있다(CRRU, 2007). 그러나 주·준주에 따라 재정지원은 큰 차이를 보인다. 퀘벡 주의 2006년도 현재 보육시설 당 지원액은 4,644달러인 반면, 하위 5개 주·준주의 보육시설 당 지원액은 2,000달러 미만이다. 또한 보육재정을 0~12세 아동 수로 나눈 아동 1인당 보육재정은 캐나다 전체로 볼 때 평균 561달러인데, 퀘벡 주에서는 1,617달러로 국가 평균의 2.9배인 반면에 앨버타 주에서는 141달러에 불과하다(CRRU, 2007).

등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도 다른 주·준주에서 2003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3,300달러에서 많게는 10,000달러에 이른다⁵⁰⁾. 그러나 퀘벡 주의 보육비는 다른 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1일 7달러로 제한했을 때 퀘벡 주의 부모들은 대략 월 140달러, 연간 1,620달러를 보육비로 지출한다.

48) 앨버타 주에서는 아동이 7세 미만, 미취학 상태일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원됨.

49)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뉴브런스윅 주, 앨버타 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50) www.clc-ctc.ca

〈표 II-2-13〉 지역별 보육료 지원 자격기준(연간 순소득)

단위: 캐나다 달러(C\$)

주·준주	가구형태	전액 지원 소득 기준	미지원 소득 기준	비고	시행일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Newfoundland and Labrador)	한부모, 한자녀	20,280	42,960	자산은 2,500달러까지 허용됨. (RRSP ¹⁾ 는 자산에서 제외, 그러나 RRSP에 대한 추가불입은 허용하지 않음)	2005. 2.
	양부모, 두자녀	20,640	45,120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Prince Edward Island)	한부모, 한자녀	13,440	25,440	자격기준조사에 자산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	1998
	양부모, 두자녀	19,200	51,040		
노바스코샤 주 (Nova Scotia)	한부모, 한자녀	16,800	24,900	RRSP를 포함, 10,000 달러까지 유동자산 허용	1995
	양부모, 두자녀	17,700	34,980		
뉴브런스윅 주 (New Brunswick)	모든 가구형태 동일	22,000	41,000	자산은 고려하지 않음	2004.9
온타리오 주 (Ontario)	육구조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결정하므로 정해진 소득기준은 없음.			한부모, 한 자녀에 대해 5,000달러까지 유동자산 허용하고 가구원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됨. RRSP와 RESP ²⁾ 는 자산에 불포함	
마니토바 주 (Manitoba)	한부모, 한자녀	13,787	24,577	자산은 고려하지 않음	1991
	양부모, 두자녀	18,895	40,475		
사스카추완 주 (Saskatchewan)	한부모, 미취학 자녀 한 명	19,800	36,720	자산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기준이 순소득이 아닌 총소득임	2003.6
	양부모, 두자녀 (유아 한명, 미취학 한명)	21,000	54,960		
앨버타 주 (Alberta)	한부모, 한자녀	35,100	52,200	자산 고려하지 않음 소득기준이 총소득임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비용은 소득공제	2003.8
	양부모, 두자녀	39,600	70,000		
브리티시 컬롬비아 주 (British Columbia)	한부모, 한자녀	30,984	48,984	자산은 고려하지 않음	2005.10
	양부모, 두자녀	35,016	71,016		
노스웨스트 준주 (Northwest Territories)	육구조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결정하므로 정해진 소득기준은 없음 육구는 공공부조 수준에 의해 결정			RRSP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육구 산정시 고려. 20,000달러 이하의 자동차는 제외	
누나부트 준주 (Nunavut Territory)	육구조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결정하므로 정해진 소득기준은 없음.			보육료 지원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일부로 예금, RRSP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됨 (RESP 제외)	
유콘 준주 (Yukon Territory)	한부모, 한자녀	20,316	32,196	자산은 고려되지 않으며 부모의 총소득의 5%까지 RRSP에 납부가능함	2001
	양부모, 두자녀	30,024	52,704		

주: 1) RRSP: 개인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계정으로 RRSP에 유입되는 소득은
개인소득신고 때에 일정 금액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2) RESP: 정부에 등록된 교육적금(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으로 수혜자가 고등학교
교 이상의 교육에 사용할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자료: Beach & Friendly(2005)를 재구성함.

한편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⁵¹⁾, 학교체제의 일부인 공립유치원으로 운영되어⁵²⁾ 부모부담비용이 거의 없으며, 거의 모든 5세 아동들이 유치원을 다닌다.

2) 양육비용 현금지원⁵³⁾

양육비용 현금지원은 육아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보편적 양육수당(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세제를 통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캐나다 육아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캐나다의 육아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육아보조금은 아동수당(National Child Benefit)과 장애아가 있을 경우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Child Disability Benefit)으로 구성되며, 아동수당은 다시 기초보조금(Basic Benefit)과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가 연합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의 아동수당보조금(National Tax Benefit Supplement)으로 구성된다. 육아보조금은 자격기준에 따라 기초보조금, 아동수당보조금, 장애아동수당이 합산되어 일괄 지급된다.

육아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18세 미만 아동의 주 양육자이어야 하며,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거주자 자격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외에 육아보조금 신청 이전에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 거주자도 포함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12개월 이상 앓고 있는 아동에게 지급된다.

육아보조금은 신청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⁵⁴⁾ 보조금의 금액은 자녀의 수, 거주하는 주·준주, 아동장애수당 수급자격 여부, 부부의 순소득 합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1년으로 해서 보조금이 계산된다. 보조금은 처음 6개월간 지급되는 보조금은 두 해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 뒤 6개월 간은 바로 전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액수가 정해진다. 자녀의 수, 결혼상태의

51)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주는 노바스코샤 주와 뉴브런스위크 주뿐이며, 이 두 주를 제외한 주와 준주에서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님.

52) 유치원 교사의 학력, 임금, 근로조건도 초등학교 교사와 유사함.

53) 양육비용의 현금지원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cra-arc.gc.ca>)를 참조하여 정리함.

54) 아동의 출생 즉시, 부양할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하자마자, 혹은 캐나다의 거주민이 되자마자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이 지연되었을 때는 최고 11개월까지 소급해서 보조금이 지급됨.

변화 등에 따라 보조금 액수는 조정된다.

기초보조금은 전체 캐나다 가구의 약 80%에 지급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둔 앨버타 주를 제외하고는⁵⁵⁾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일정액이 지급된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지급되는 보조금은 연간 1,307달러, 월 108.91달러이며,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셋째 자녀부터 아동 1인당 연간 91달러, 월 7.58달러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연간 가구 순소득이 37,885달러 이상인 경우, 한자녀 가정에는 37,885달러 초과분에 해당하는 가구 순소득의 2%를, 2자녀 이상 가정에는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에서 제외한다.

아동수당보조금(NCBS)은 아동빈곤을 예방, 감소시키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된 제도로, 전체 캐나다 가구의 약 40%에 지급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이라는 특성상,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급되는 보조금의 액수는 감소하고, 기초보조금보다 소득 한계점 또한 낮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은 해마다 발표되는데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면, 가구 순소득이 21,287달러 미만이면 아동수당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반면, 그 이상이면 가구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한다. 아동수당보조금은 전액 기준으로 첫째 자녀인 경우 연간 2,025달러, 월 168.75달러를 지급하며, 둘째 자녀에게는 연간 1,792달러, 월 149.33달러를 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연간 1,704달러, 월 142달러를 지급한다. 한편, 자녀가 한 명인 가구는 연간 순소득이 21,287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2.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자녀가 두 명인 가구는 21,287달러 초과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는 연간 소득 초과분의 33.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 지급한다. 이와 같이 아동수당보조금은 연소득과 자녀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녀가 세 명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21,287달러에서 37,385달러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부분적으로 아동수당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자녀가 네 명 이상인 가구는 연간 가구 순소득이 42,500달러가 넘어도 아동수당보조금을 일부 지급받는다(표 II-2-14 참조).

한편, 공공부조 수급가구인 경우, 아동수당보조금은 공공부조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데, 많은 주·준주에서는 아동수당보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이 금액만큼 공공부조 금액을 조정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운

55) 앨버타 경우, 7세 미만 아동은 연간 1,196달러(월 99.66달러), 7세~11세 아동은 연간 1,277달러(월 106.41달러), 12세~15세 아동은 연간 1,429달러(월 119.08달러), 16세, 17세 아동은 연간 1,514달러(월 126.16달러)를 지급함.

영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주·준주를 대신하여 이러한 수당을 집행해주기도 한다.⁵⁶⁾ 따라서 주·준주의 아동·가족수당들은 국세청을 통해 매월 육아보조금과 함께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육아보조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표 II-2-14〉 가구소득별 연간 아동수당보조금 지급액(2008년 7월~2009년 6월)

단위: 캐나다 달러(C\$)

가구 순소득	1자녀 가구	2자녀 가구	3자녀 가구	4자녀 가구
21,287 미만	2,025	3,817	5,521	7,225
21,287~25,000 미만	1,572	2,963	4,284.6	5,988.6
25,000~30,000 미만	962	1,813	2,619.6	4,323.6
30,000~35,000 미만	352	663	954.6	2,658.6
35,000~40,000 미만	-	-	-	993.6

자료: 캐나다 국세청 자료의 기준을 이용하여 계산함.

나) 보편적 양육수당(Universal Child Care Benefit)

2006년 6월 캐나다 정부의 「종합육아계획(Universal Child Care Plan)」⁵⁷⁾의 일환으로 도입된 보편적 양육수당은 캐나다 가정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가정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가족에게 보육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캐나다의 보편적 양육수당은 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나 부모의 소득 수준에도 관계없이 일정 조건만 만족시키면 월 100달러씩 연간 1,200달러가 지급된다.

보편적 양육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동의 연령이 6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육아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동일하다. 보편적 양육수당은 육아보조금과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한다. 이미 육아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보편적 양육수당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편적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지급된다. 보편적 양육수당은 육아보조금과 달리 과세대상이어서 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에 부과된다. 단,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이 금액은 육아보조금이나 연방 판매세(GST), 연방 및 주정부 통합세(HST)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조정된 가구 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56) 앨버타 주, 브리티시 컬롬비아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 & 알브라도주, 노스웨스트준주, 노바스코샤주, 누나버트준주, 사스카추완주, 유콘준주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이 이에 포함됨.

57) 종합육아계획의 두 가지 요소는 보편적 양육수당의 도입과 보육시설 확충노력(Child Care Spaces Initiative)임.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준주에 따라서는 보편적 양육수당 지급으로 공공부조 금액이 삭감되기도 한다.

다) 세제를 통한 지원

캐나다의 보육서비스는 조세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조세체계는 개인을 기본으로 하는데 비해 캐나다의 조세정책은 가족을 기본단위로 한다.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세액공제 제도에는 보육비 세액공제와 보육의 질을 위한 세액공제가 있다.

(1) 보육비용 소득공제(Child Care Expenses Deduction)

캐나다에서는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에게 보육비용이 직업을 유지하거나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세액공제는 부부 중 순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나누어 신청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반드시 먼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아동은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자녀이거나, 또는 연간 순소득이 9,600달러 이하로 본인 또는 배우자나 동거인이 부양하는 아동이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은 16세 미만이어야 하나, 아동이 본인,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부양을 받고 있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에 포함되는 보육서비스 제공자(기관)는 개인양육자, 보육시설(day nursery school and daycare center),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캠프의 주된 목적이 보육인 일일 캠프나 스포츠 학교, 기숙사 학교, 야간 스포츠 학교, 또는 숙박이 제공되는 캠프 등이다. 이 때 개인양육자는 아동의 부모나 부 또는 모의 동거인, 18세 미만의 혈연이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의료비나 병원비, 의복, 교통 등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학교에 지불한 비용 중 보육이 아닌 교육과 관련된 부분, 즉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테니스 교습이나 스카우트 등록 비용 등 레저나 여가활동을 위하여 지불한 비용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육과 관련하여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다.

2006년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7세 미만 아동 1명 당 연간 7,000달러, 7세~16세 아

동 1명당 4,000달러까지이며,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경우 10,000달러까지 공제된다. 2007년 새로운 아동세액공제(a new child tax credit)가 도입되면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연간 2,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실시되어 7세 미만 아동 공제는 아동 1명 당 연간 9,000달러, 7세~16세 아동은 연간 6,000달러로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 보육비용 세액 공제는 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조정된다.

(2) 보육서비스 질 공제(Child Care Quality Deduction)

등록된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캐나다에 거주하는 많은 가족들은 부모, 혈연, 이웃 등이 제공하는 등록되지 않은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 보육서비스 질 공제(child care quality deduction)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부모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양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즉, 수많은 가족들이 부모, 혈연, 이웃 등이 제공하는 등록되지 않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육서비스 질 공제에 포함되는 금액에는 비혈연 양육자를 고용하기 전 전과기록 조회를 하는데 드는 비용, 보모나 혈연, 이웃의 보육서비스 제공자에게 응급처치나 아동발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나 훈련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 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해 훈련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 일본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⁵⁸⁾은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1994년, 1999년 두 차례의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엔젤플랜에 이어 2005년에 자녀양육지원플랜을 발표하고 2009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해마다 새롭게 발전된 정책을 제시, 추진하여 왔다.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 수준은 1.3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다소 높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며,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취업률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영아를 둔 부모의 취업률은 28.5%이고 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48.2% 수준에 머문다(OECD, 2005).

58) 1989년에 출산력이 1.57을 기록한 것을 쇼크로 받아들였음.

59) 각 플랜별 구체적 내용은 서문화·김은실·장혜경·박수연(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강화방안.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 참조

30~34세 여성 중 기혼으로 취업중인 여성 비율은 1997년 31.4%, 2004년 30.2%로 거의 차이가 없다(Suzuki, 2007).

자녀 양육비용 지원정책은 포괄적 저출산대책의 일부분이다. 보육정책의 경우만 보더라도 비용지원보다는 대기아동 해소⁶⁰⁾에 더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일본의 자녀양육제도를 보육비용과 현금 지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2-15〉 30-34세 여성의 취업 및 결혼 구성

단위: %

구분	1997			2004		
	미혼	기혼	계	미혼	기혼	계
취업	11.9	31.4	43.3	12.9	30.2	43.1
미취업	9.6	47.1	56.7	8.2	48.7	56.9
계	21.6	78.4	100.0	21.2	78.8	100.0

주: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mployment Status Survey.
 자료: Suzuki, Toru(2007). Nuptiality and Fertility Declines in Japan.

1) 보육료 지원

최근 일본의 보육료 지원제도는 중앙정부의 기금이나 교부금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의 양육지원 상황에 따라 활용하여 각 지역의 지원 사업을 확충해 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표준보육단가와 보육료

보육시설에서 입소 아동의 보호와 최소한의 유지 등 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육단가제도를 통하여 보호자로부터 수납한다. 일본은 매년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하여 고시한다. 표준보육단가 산출은 보육시설 규모별로 총인건비와 관리비를 산

60) 도시부를 중심으로 많이 존재하는 보육원의 '대기아동'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대기 아동제로작전'을 추진하고, 2005년도부터는 '아이-육아 응원플랜'을 바탕으로 2009년도까지 보육원 수용 아동수를 215만 명까지 확대하는 등의 움직임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보육원의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원의 대기 아동수는 5년 만에 증가하였으며 2008년 4월 대기 아동수는 1만 9,550명(전년대비 1,624명 증가)이 되었음. 또한 아동복지법을 바탕으로 대기 아동이 50명 이상 있으며 보육 실시사업 등 공급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특정 시정촌은 84곳이 되었으며 전년대비 10곳이 증가함(새롭게 특정 시정촌이 된 곳 19곳, 특정 시정촌에서 제외된 곳 9곳임).

출, 합산하여 이를 아동수별로 균등하게 나누고 여기에 유아에 한하여 월별 일반생활비 정액을 합하여 보육단가를 산출한다. 표준보육단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크게 인건비, 관리비 및 아동일반생활비로 구분되며, 인건비 및 관리비에는 다양한 세부항목이 포함된다.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이러한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를 보육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 부담 중 1/2는 중앙정부, 1/4은 도도부현, 1/4은 시정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부모 보육료 징수 기준을 소득계층에 따라서 7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7계층은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시정촌민세비과세 대상, 소득세과세는 없으나 시정촌 주민세 과세대상자, 그 이외의 소득세과세 대상은 전년도 과세수준에 따라서 차등한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2009).

그러나 일본에서 실제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 및 전체 보육료 운영 비용에서 보호자의 부담비율은 지방정부마다 각각 다르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보육료 징수기준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 이외에도 지방정부마다 보육내용을 질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방정부가 국가 기준의 1.5~2.0배 정도를 배정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 차이가 심각하다.

보육료를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는 경우에도 계층 구분이나 단계가 지역마다 다양하다. 국가 기준에서 정부 부담금 이외에 보육료 징수 금액의 일부를 대부분 지방자치 정부에서 지원하여 각각 다른 징수 체계를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실제로 국가가 제시한 표준보육비용을 그대로 수납하는 지역은 없다. 예를 들어 요코하마시는 소득계층별로 26단계를 적용하고, 동경도 세다가야구는 25단계를 적용한다. 동경도 세다가야구는 3세아와 4세 이상아 보육료를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자녀 및 세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의 보육료를 크게 낮추어 준다.

이러한 결과로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낮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총 보육시설 운영비 중 보호자 부담은 20.2%이다. 2006년 기준 보육아동 34,747명에 대한 총 보육예산은 486억 7천만엔이다. 이 중 중앙정부 지원액은 12.6%에 불과하다(서문희·나정·최혜선, 2006).

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국가기준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은 주장하지만 국가 전반적 개혁 분위기 속에서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인정보육시설 등 국가 인가 외 시설의 보육료도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원하기는 한다. 그

러나 수익자 부담 원칙⁶¹⁾의 적용으로 인가보육시설 지원과는 다소 차이 있다. 인정 어린이원⁶²⁾의 경우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한편, 정해진 정규 종일 보육시간 전후로 시간연장형 보육을 요하는 경우 보육료는 매우 엄격하게 시간단위로 추가된다. 또한 야간보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단가를 산정하여 정규시간 비용에 가산하여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가는 보육시설 규모별로 다르며, 2007년 기준 31인~45인 시설의 경우 3세 이하는 8,770엔이고 4세 이상은 10,340엔이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2007).

또한 연장보육, 휴일·야간보육 등 특수보육을 하는 보육시설에는 보육료 지원 이외에 기본적으로 시설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인가외보육시설 지원⁶³⁾

인가외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크게 다르다. 예를 들면 도쿄도(東京都)는 2000년도부터 인가외보육시설로 독자적인 인증보육시설을 설치해 왔다. 중앙정부의 인가보육제도보다 도쿄도의 인증보육시설은 설치기준이 낮아 보육료도 보육시설이 자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인가보육시설과 인증보육시설의 지원 분담비율을 보면 인가보육시설은 국가부담 중 중앙정부가 1/2, 도 1/4, 시정촌이 1/4을 지원하는데 비하여, 인증보육시설은 도와 시정촌이 각각 1/2씩 지원하고 있다.

〈표 II-2-16〉 인가 보육시설과 인증보육시설 운영비 비교

구 분	인가보육시설(5,600만엔)		인증보육시설(5,600만엔)	
	분담비율	분담액	분담비율	분담액
중앙정부	1/2	22백만엔	-	-
도	1/4	11백만엔	1/2	16백만엔
시정촌	1/4	11백만엔	1/2	16백만엔
이용자 부담		12백만엔		24백만엔

주: 1) 인가보육시설 정부기준 2007년도 실시단가임.

2) 인가보육시설은 도의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시정촌이 독자적으로 지원함.

자료: 保育研究所編(2007). 保育白書.

인가보육시설 대기아동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인가외보육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인가외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원수준은

61) 응익(應益) 부담원칙이라 함.

62) 2009년 4월 현재 358개소로 파악됨(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2009. 8)

63) 인가외보육시설 지원은 2007년부터 지원됨.

소득계층이나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보조금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인가보육시설의 이용자부담평균 월 35,240엔이라고 하면, 인증보육원의 이용자 부담 평균은 59,000엔~67,000엔으로, 약 2배의 보육료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의 사례로, 먼저 도쿄도(東京都) 신주쿠구(新宿區)는⁶⁴⁾ 2007년 4월부터 신주쿠구(新宿區)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로, 도내의 월 160시간 이상 운영하는 인증보육시설, 보육실, 가정복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호자가 각 시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가 시설에 비용을 지원하고, 보호자는 지원액수를 뺀 보육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지원 액수는 소득제한이 없고 아동 1인당 인증보육시설이 월 20,000엔, 보육실이 월 12,000엔, 가정복지원이 월 4,500엔이다.

도쿄도(東京都) 중앙구(中央區)⁶⁵⁾에서도 인증보육시설과 보육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 조건은 아동 및 보호자가 중앙구내에 등록되어 있고, 아동이 현재 시설에 월 160시간 이상의 월정계약으로 입소하고 있으며 보육료를 보호자(계약자)가 지불하고 있는 경우이다. 보조금 월 지원액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 1인당 1만 엔이며, 대상시설 및 인가보육시설 입소하고 있는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둘째아 이후 아동은 3세미만아는 1인당 2만엔, 3세이상아는 1만엔이 지원된다.

다) 보육 재정(예산)

대기아동대책으로서 최근 보육예산은 다소 증가경향에 있지만, 고이즈미(小泉) 정 권한에 진행된 「삼위일체개혁」⁶⁶⁾에 의해, 2004년도부터 공립보육시설운영비의 국고부담금이 일반재원화되었다. 일반재원화에 의해 40%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예산을 삭감하였다. 보육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보육 교재교구비 삭감 71.5%, 신규직원의 채용억제 34.1%, 시간제 직원채용 22.1%, 직원배치의 재검토 14.5% 등의 변화가 있었다. 보육료에 대해서도 약 10% 정도의 시·정·촌이 금년도부터 보육료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보육료를 인상하는 시·정·촌의 절반정도는 가격인상 이유를 보육시설운영비예산의 감소라고 하고 있다. 2010년에 보육료의 가격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시·정·촌도 13.2% 있다.⁶⁷⁾

64) <http://www.city.shinjuku.tokyo.jp/fukusi-web/000001/002365.html> 참조

65) <http://www.city.chuo.lg.jp/kurasi/syusan/hoiku/insyohoikusyo/ninkagaihoikusisetuhoikuryoujose/index.html> 참조

66) ①국고보조 부담금의 폐지·절감, ②세재원의 이양, ③지방교부세의 일체적인 재검토 임.

67) 자료는 신문보도(http://www.jcp.or.jp/akahata/aik3/2004-10-18/03_01.html 등) 내용임.

2) 유아교육비용지원

유치원 수업료는 문부과학성이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단가를 2010년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지원 대상 소득한도액은 연 680만엔이며 4개 등급은 생활보호세대와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시정촌민소득 비과세 세대, 연소득 360만엔 이하, 연소득 680만엔 이하로 나누어진다.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 지원단가는 지원대상에 따라 3,700엔~9,200엔이 증가하였다(표 II-2-17 참조).

〈표 II-2-17〉 일본의 사립유치원 지원단가

구분	단위: 엔	
	2009	2010
생활보호세대,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153,500	162,700
시정촌민소득할 비과세 세대	116,300	123,300
연소득 360만엔 이하	88,400	93,700
연소득 680만엔 이하	62,200	65,900
연소득 680만엔 이상	-	-

주: 2005년도 자녀순위는 유치원 이용 자녀 순이며, 2006년부터는 출생순위로 변경되었음.
자료: 日本 保育研究所(2009). 保育白書.

정부는 형제자매가 있는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2009년에 둘째와 셋째아의 유아교육비 보조단가를 조정하였다. 형제자매가 유치원 취원아인 경우 부모부담률은 둘째아의 경우 첫째아 대비 0.7에서 0.5로 낮추었으며, 셋째아는 0.2에서 전액 지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형제자매가 초등학교 1~3학년인 경우에는 셋째아 지원이 0.8에서 전액 지원으로 크게 지원 비율을 높였고(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2008b), 2010년에는 둘째아 지원을 0.9에서 0.5로 낮추어 조정할 예정이다(保育研究所, 2009. 10).

<표 II-2-18>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정부와 부모 비용분담을 나타낸다. 총비용은 사립보육시설⁶⁸⁾이 55만엔으로 가장 높고 공립유치원이 42만엔으로 가장 낮으나, 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50~55만엔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와 보호자 부담을 비교할 경우 기관유형에 따라 정부부담률 차이가 나타난다. 공립유치원 81.0%, 사립유치원 44.5%, 공립보육시설 36.0%, 사립보육시설 41.9%로 공립유치원의 정부부담률이 가장 높다. 공립보육시설과 사립보육시설은 보호자부담액은 32만엔으로 동일하나 정부지원금이 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사립보육시설이 높아 정부부담률이

68) 일본의 사립보육시설이나 사립유치원은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함.

사립보육시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용 아동수는 사립유치원이 133만명으로 가장 높고 공립보육시설 63만명, 사립보육시설 72만명, 공립유치원 31만명으로 공립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장 적다.

〈표 II-2-18〉 일본의 유치원 보육시설 비용분담 비교

구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공립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
전체(A)	42만엔	45만엔	50만엔	55만엔
정부(B)	34만엔	20만엔	18만엔	23만엔
보호자	8만엔 (월 6천엔)	25만엔 (월 21천엔)	32만엔 (월 27천엔)	32만엔 (월 27천엔)
(정부분담비율(B/A))	(81.0%)	(44.5%)	(36.0%)	(41.9%)
아동수	31만명	133만명	63만명	72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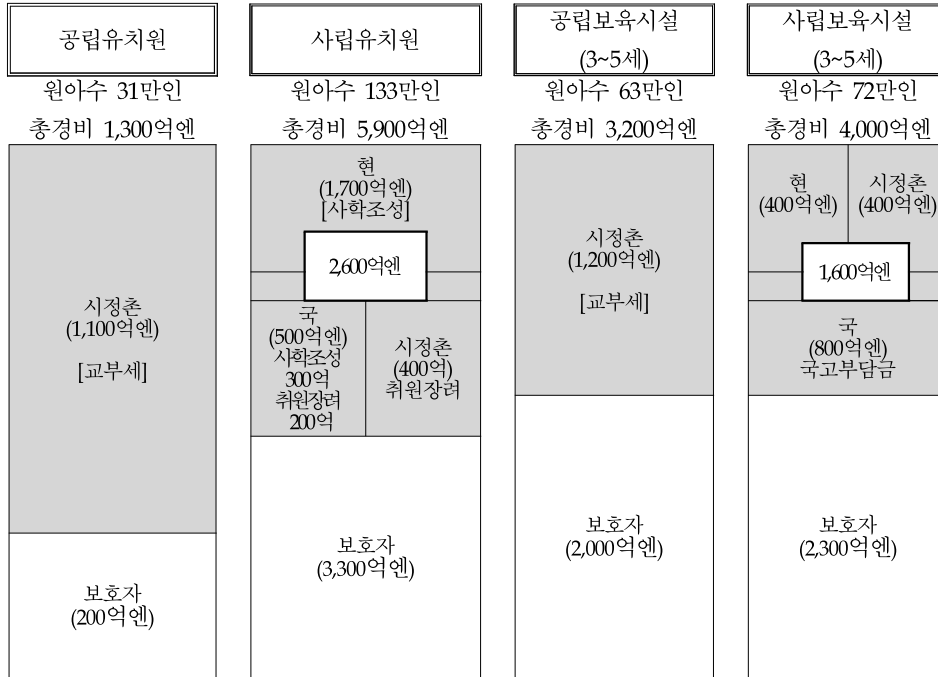
자료: 日本 保育研究所(2009). 保育情報 2009年 9月號.

[그림 II-2-1]은 2009년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총경비를 나타낸다. 사립유치원이 5,900억엔, 사립보육시설 4,000억엔, 공립보육시설 3,200억엔, 공립유치원 1,300억엔이다. 아동수가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이 가장 높고 공립유치원이 가장 낮다.

공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은 시·정·촌으로부터 교부세를 받고, 사립유치원과 사립보육시설은 중앙정부와 도도부현, 시·정·촌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사학조성금 형태로 지원을 받는다. 정부와 보호자 부담을 비교할 경우 기관유형에 따라 부모부담률의 차이가 나타난다. 공립유치원 15.4%, 사립유치원 56.0%, 공립보육시설 62.5%, 사립보육시설 57.5%로 공립유치원의 부모부담률이 가장 낮다.

앞서 살펴본 정부와 부모의 비용 부담율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공립보육시설과 사립보육시설은 부모부담액이 2,300억엔으로 동일하나 지원금이 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사립보육시설이 높아 부모부담률이 사립보육시설이 더 낮게 나타났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 도시화, 핵가족화 등을 배경으로 다양화하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시간(4시간) 전후나 장기휴직 기간 중 「맡기기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2007년 6월 현재 「맡기기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약 72%가 되었는데, 이러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1-2-1] 일본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총경비 분담 비교(2009년 기준 정부예산)

유치원 지원으로 유명한 지역은 도쿄도(東京都) 에도가와구(江戸川区)⁶⁹이다. 에도가와구(江戸川区)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① 보육료 보조금 월 26,000엔 한도, ② 입학 보조금 80,000엔 한도, ③ 졸업기념품 1,000엔 한도, ④ 취원장려비용 보조금 2008년 기준 소득에 따라 연 59,200엔~260,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입원보조금과 보육료보조금에는 소득제한이 없고, 각 원의 입학금과 보육료에 의해 보조액수가 달라진다.

3) 사업소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소가 자기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육아 개호서비스 이용 비용을 보조하는데, 민간시설 이용 비용 지원이나 사업소 내에 설치한 보육시설 인건비나 건물 임차료 등 지원,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가 계약을 하고 실제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며, 베이비시터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지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

69) <http://city.edogawa.tokyo.jp/kurashi/kosodate/hoiku/shiritsu/index.html> 참조

원에 대하여 정부가 근로자 육아 개호서비스 비용 중 사업자 부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중소기업은 1/2, 대기업 1/3을 지원하며, 상한은 연간 1인당 30만엔, 사업소당 360만엔으로 5년 한도이다.

베이비시터 이용에 대한 근로자 지원은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All-japan Babysitter Association)⁷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육아지원사업 협정을 체결한 사업주나 대상 보육소⁷¹⁾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때 1일 1회 1,500원이나 2,000원의 할인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업은 아동수당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종업원의 취로와 관련된 재택보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베이비시터, 가정지원센터(FSC), 가정보육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절차를 보면 재단법인인 어린이미래재단이 후생노동성의 지원으로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사업주 또는 해당 보육소와 협정을 체결한다. 베이비시터협회는 베이비시터 회사 및 사업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협정 기업에 1매당 1,500엔짜리 재택보육 할인권을 수수료 150엔을 받고 납입한다. 베이비시터협회로부터 할인권을 받은 기업이나 해당 보육소는 근로자에게 재택보육 할인권을 교부하고, 할인권을 받은 근로자는 재택보육서비스를 받으며 할인권을 제한 비용을 지불한다. 할인권은 협회를 통하여 어린이미래재단이 정산하게 된다. 이 할인권은 근로자 1인당 하루에 1장을 사용할 수 있다.

협정 대상 및 규모를 보면,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1,200매부터 최대 4,800매를 지원하고, 보육소는 개소당 1,200매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사업주는 1일 1회 1,500엔이고, 연장보육종사자는 2,000엔으로 차등을 둔다.

이러한 사업은 1994년에 시작한 이래 계속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2006년 통계로는 전국에서 1,016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성 금액은 1억 448엔이다. 발행된 할인권이 모두 사용되지는 않는데, 발행 대비 정산 비율은 2006년 66.5% 정도이다.

4) 현금지원

일본의 경우 자녀 양육관련 재정지원은 아동 출생시 출생보너스, 아동수당, 조세 지원이 있고, 이외 임신부검진지원, 육아응원특별수당, 유아의료보조 등이 있다.

70) 베이비시터회사들의 협회는 1989년에 설립되어 베이비시터 회사 125개가 가입하고 있음. 회사들은 연 20만엔에서 30만엔 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광고나 베이비시터에 관한 정보제공을 담당함.

71) 야간보육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임.

가) 아동수당(児童手当)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1971년 법률 제73호로 1972년에 지원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2007년 4월에는 일본의 급격한 저출산 진행을 고려하여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3세 미만 유아의 양육자에 대한 아동수당액을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 대해 확대하여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만엔으로 인상하였다.

일본의 아동수당은 인정소득 수준 이하 가정 아동이 만12세가 된 해의 3월 31일까지의 초등학교 수료전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 단지, 전년의 소득이 일정액수 이상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3세미만은 월 10,000엔⁷²⁾, 3세 이상은 첫째아와 둘째아는 월 5,000엔, 셋째아 이후는 월 10,000엔이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연 3회(2월, 6월, 10월)로 나누어 각각 지난 달 분까지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소득제한 한도액에 따라 지급되며, 소득제한 한도액은 전년(1월부터 5월까지는 두해 전)의 소득액에 의해 판정된다. 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있으며, 자영업자와 샐러리맨 등 직업 종류에 따라 소득제한 한도액에 차이가 있다. 또한 <표 II-2-19>에서 보듯이 각 자치단체마다 아동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다.

〈표 II-2-19〉 일본 도쿄도 지자체별 아동수당

지역	아동수당
도쿄도(東京都) 지요다구(千代田區)	- 아동수당지급의 대상연령을 임신 5개월의 태아로부터 고교생까지 확대 - 교육비경감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1~6년생은 중앙정부기준에 1,000엔 추가 지원
도쿄도(東京都) 중앙구(中央區)	- 아동수당지급의 대상연령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도쿄도(東京都) 분쿄구(文京區)	-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연령을 12세(소 6)까지로 하며, 구내공통 상품권(연 1회, 5,000엔분)을 교부
도쿄도(東京都) 시나가와구(品川區)	- 중앙정부기준의 소득 제한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액수는 중앙정부에 같은) 지급

아동수당은 자산조사에 의거하여 소득제한을 두는데, 2003년 소득수준 제한으로

72) 2007년부터 유아가산금 적용

인하여 15%의 아동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Suzuki, 2006). 2007년에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고자 중학생까지 포괄하고 소득제한이 없는 어린이 수당제도가 논의되기도 하였다.⁷³⁾

나) 임신부검진, 출산육아일시금

2008년 10월 29일, 정부는 임신부건강검진으로 바람직한 회수로 여겨지는 14회분을 전액 공적 자금으로 부담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2009년도부터 14회분 모두 무료이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1/2씩 부담하게 된다. 임신부건강검진은 모체나 태아의 건강 확보를 위해 14회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동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로 5회 상당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부세는 용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1회분밖에 조성하고 있지 않은 시·정·촌도 있어서 자치단체간의 격차가 문제가 되어왔다. 임신부건강검진비용은 1회당 5,000~1만엔 정도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부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 출산육아일시금은 2008년에 38만엔이 2009년 10월부터는 42만엔으로 인상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9월 28일, 퇴원 시에 부모가 분만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부모가 부담하지 않게 하는 출산육아일시금신제도를 내년 4월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시금은 부모가 아니고 의료기관에 지불되기 때문에, 출산 후 약 2개월이 지나야 지원되어 자금유통 악화를 염려하는 개업의들을 배려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10월부터 실시하지만, 자금조달의 준비가 늦는 의료기관은 최장 6개월간 실시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전 제도는 부모가 의료기관에 분만비용을 일단 지불한 후 건강보험 등으로부터 출산육아일시금이 부모에게 지급되었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게 된다.⁷⁴⁾

73) 민주당은 2007년 12월 <어린이 수당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하였음. 현행의 아동수당제도를 재검토하고, 중학교수료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26,000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1)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국고부담으로 하고, (2)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금액을 동일하고, (3)보호자의 소득 제한을 하지 않는 등임. 그러나 정권교체 후, 사회민주당은 소득제한을 제정함과 동시에 아동 1인당 월 1만엔(셋째아이 이후는 2만엔)을 지급하는 제도를 주장하고 있음. 현 단계에서는 민주당 안에 찬성하여, 중학교졸업까지 월 2만6000엔(내년도는 반액)을 지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공제·부양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큰 상태임.

74) 신문보도(<http://mainichi.jp/life/edu/child/news/20090929k000m010123000c.html>)

다) 육아응원특별수당

전 아소우정권의 생활 대책으로 육아응원특별수당이 언급되었다. 이 육아응원특별수당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아이들이 많은 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내용은 둘째 이후 아동에게 1인당 36,000엔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 아동은 2008년도 초등학교 취학 전 3년간에 속하는 아이로, 둘째이후인 아동이 지급대상이 되며, 지급 대상 아동의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지급 대상 소득제한 여부는 시·정·촌이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소득제한을 정할 경우 하한선은 정액급부금과 같이 1,800만엔이고, 소득 기준은 세대주의 개인소득이며 세대합산은 하지 않는다.⁷⁵⁾ 그러나 대부분의 시·정·촌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다.

라) 유아의료보조

취학전까지 의료비를 무료로 하는 유아의료보조는 양육비지원에서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구에 따라 의료보조 지원 대상은 각기 다르다.⁷⁶⁾ 네리마구(練馬區)는 입원은 소학교 6년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시부야구(澁谷區)와 에도가와구(江戸川區)는 입원은 중학교까지로 확대하였고, 고토구(江東區)는 2006년부터 입원은 중학교 3년까지, 2007년부터 외래는 소학교 3년으로 확대하였다.

마) 한부모 가정에 대한 수당 지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감소되어 왔다. 생활보호(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자가산도 폐지되어, 한쪽 부모에 대한 지원은 삭감되고 취업을 통한 자립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신정권의 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정권은 생활보호의 모자가산의 부활을 공약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 부활될 전망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아동부양수당은 모자세대에 한정되지만, 도치기현 가누마시(鹿沼市)나 지바현(千葉縣) 노다시(野田市)등 자치단체에서는 부자세대에도 아동부양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라. 시사점

외국 3개국 양육비용 지원의 특성을 통한 시사점은 최근의 자녀 양육 지원정책의

75)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참조(http://www.mhlw.go.jp/kinkyu/juyou/kosodate/info_090108-01.html)

76)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경감의 사례(2006년도)(<http://www.8.cao.go.jp/shoushi/suisin/se-6/siryop41-p50.html>)

강화와 정책의 다양성으로 볼 수 있다.

영국, 캐나다, 일본 모두 최근에 보육 등 자녀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였다. 아동수당제도가 확고한 영국은 2004년 12월 아동보육 10개년 전략을 수립한 이후 3, 4세아 무상교육 시간 확충, 슈어스타트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 정책 강화 등 영유아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고, 고용주에 의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를 통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2006년 육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편적 수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도 엔젤플랜 이후 지속적으로 보육시설 확충은 물론 보육과 유아교육의 협력을 통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등 부모의 육아불안 해소를 통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자녀 양육지원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인간발달에서 영유아 시기의 조기투자의 효과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등에서 자녀 양육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양육비용 지원 유형이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머물지 않고 현금 지원이 상당부분 포함된다. 영국은 아동수당, 아동세액공제 등 보편적 현금 지원 제도로 있고, 또 보육비용 세액공제를 근로와 연계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소득공제(decution)와 세액공제(credit) 제도를 통하여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최근에 수당제도도 도입하였다. 출산수준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그 수준이 미미하다고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보편적 현금 지원인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영유아 정책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실시한다. 영국은 지역정부마다 다른 차별적 정책을 추진하며, 캐나다는 특히 퀘벡주가 다른 주·준주와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이용의 확충 등 정책적 효과를 거두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지만 각 지방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 이상의 정책을 추진한다. 동경도의 경우에도 각 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은 물론 도의 정책과도 다른 강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가 2009년 하반기부터 다소 달라지고 있으나 그동안 획일적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비용 지원 정책을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Ⅲ.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및 시사점

제3장에서는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모형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절에서는 보육료를 포함한 양육비용이나 공공보육서비스 공급의 지원이 아동 성장 발달, 보육서비스의 이용, 어머니의 취업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고,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09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바우처 방식의 보육비용 지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분석모형 설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로 아동 성장 발달, 육아서비스 이용, 자녀 양육부담 완화, 여성의 취업 및 출산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간에 대한 생애주기별 투자에서 투자효과는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높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보육시설,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부모들은 그 이용이유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등을 들고, 교사나 부모는 실제로 이러한 기관 이용 이후에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한다. 가정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계량적 자료는 없기 때문에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간의 연구들은 대체로 외국에서의 연구로, 우리나라 자료는 부재한 실정이다.

외국의 장기연구 결과에 의거한 아동투자에 대한 3종의 B/C 분석연구에 의하면 아동투자는 최소 3.78배, 최고 17배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III-1-1>은 외국에서 실시한 3종의 장기 연구결과를 Barnett·Ackerman(2006)이 요약한 것이다. 이를 보면 먼저 1962년부터 실시한 페리 유치원(Perry Preschool) 연

구에서는 투자 \$1당 \$17.07의 환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고(Schweinhart et al., 2005), 미국 국립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가 1972년부터 북캐로라이나(North Carolina)에서 시행한 영유아기 아동투자사업 (Abecedaria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연구에서는 투자 \$1당 \$3.78의 사회환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Masse & Barnett, 2002). 또한 시카고 아동부모센터(Child-Parent Centers)의 연구(Reynolds et al., 2002)에서는 투자 \$1당 \$7.14의 투자 환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III-1-1> 아동투자에 대한 B/C에 관한 주요 3개 연구 결과:

구분	Perry Preschool Study	Carolina Abecedarian	Chicago Child-Parent Centers
IQ 단기 증가여부	○	○	NA
IQ 장기 증가여부	×	○	NA
장기적 성취 증가여부	○	○	○
특별 추가 교육 비율 비교	37% : 50%	25% : 48%	14% : 25%
학업 미진(낙제) 비율 비교	35% : 40%	31% : 55%	23% : 38%
고교 졸업비율 비교	65% : 45%	67% : 51%	50% : 39%
21세 구속 비율 비교	15% : 25%	45% : 41%	17% : 25%
C/B 분석 결과			
Cost	\$16,264	\$36,929	\$7,417
Benefit	\$277,631	\$139,571	\$52,936
B/C 비율	17.07	3.78	7.14

주: 비율의 비교는 앞이 실험집단 : 비교집단임.
 자료: W. Steven Barnett and Debra J. Ackerman(2006). Costs, Benefits, and Long-Term Effects of Early Care and Education Programs: Recommendations and Cautions for Community Developer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Vol. 37. No. 2. Summer 2006.

이들 세 연구의 구체적 성과는 <표 III-1-1>에 잘 나타난 있는데, 투자 대비 효과를 가장 낮게 평가된 연구로 미국 국립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의 연구 자료를 보면, 2002년 사업 대상 아동 1인당 비용이 \$14,000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긍정적 이득은 훨씬 높아 투자 \$1당 \$3.78의 사회환원 효과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U.S.A., 2003). 장기적으로 지능 및 학업성적 향상으로 더 높은 소득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낮은 학년 및 특수학급에 보류되는 비율을 낮추어 학교교육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게 하고, 어머니의 고용 개선과 소득향상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흡

연기능성을 낮추고,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다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

나. 육아비용 지원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육아비용 지원의 확대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는 캐나다의 연구가 있다. 캐나다의 전반적 영유아 지원정책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수준인데, 다른 주와는 다른 정책을 추진한 퀘벡주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캐나다 다른 주·준주에서 부모 보육료 보조금 지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퀘벡주는 만5세 무상교육은 물론, 0-4세와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도 하루 7불로 비용 상한제를 실시하고 공공보육시설에는 하루에 40불, 사립보육시설에는 계약에 의해 하루에 30불, 가정보육에는 20불을 지원하는 등의 강력한 지원 정책⁷⁷⁾을 추진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의 다른 지역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2배 증가한데 비하여 퀘벡주는 3배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Cleveland, 2008). 또한 정책 사례에 대한 Baker, Gruber & Milligan(2005) 연구에 따르면 지원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의 도입 이후 보육시설 이용은 다른 주에 비하여 14.7%p 정도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율을 10% 증가시킬 경우 보육시설 이용은 약 4.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육아지원과 어머니의 취업

취업하지 않은 영유아 어머니의 다수가 가사와 자녀양육부담을 주요 이유로 지적한다. 그러나 또한 상당수가 마땅한 일자리의 부족을 이유로 든다.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을 보면 0세아를 둔 경우 25% 내외이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야 우리나라 평균 여성 취업률에 도달한다(서문희 외, 2009).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자녀의 존재 자체와 자녀수는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지원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보편화되어 있고 비용지원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근거로 차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세아의 보육시설 이용자도 미취업모와 취업모의 비율이

77) 퀘벡주는 영유아 이외에도 포괄적 가족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는데, Fortin(2008)은 퀘벡주의 가족수당, 부모휴가, 영유아보육교육, 방과후학교 정책 패키지를 별 넷 정책(A four stars policy)으로 표기함.

유사한 수준이다(서문희 외, 2009). 이처럼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 이용 등 영유아 양육지원과 여성취업과의 관계는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외국의 일부 연구들은 영아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은 어머니의 취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혼남성의 노동공급이 주로 임금과 비근로소득의 함수인데 반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데(Blau et al., 1998), 이는 자녀양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영유아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시장 행동은 노동참여, 근로시간, 임금, 직업상 지위 등이다(Gunderson, 1986, Cleveland & Krashinsky, 2003 재인용).

OECD 국가들을 단위로 한 연구로는 Immervoll & Barber(2005) 연구가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3세 미만아를 둔 여성의 취업률과 3세 미만아의 보육등록률을 이용한 단순회귀분석에서 영아 보육 등록률은 취업률에 16%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둘의 관계를 양방향으로 추정하였다. 영아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면 여성취업이 증가하고, 또한 여성취업률이 증가하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Meyers와 Gornick(2003)은 Esping-Anderson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⁷⁸⁾을 적용하여 ECEC의 사회화 정도와 모성 취업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의 사회적 지원 정도에 따라 미약한 나라와 충분한 나라 간에 자녀가 어머니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름을 보여 주었다.

Cleveland와 Hyatt(1996)에 의하면 보육비용이 영유아 부모의 노동 공급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공공보육시설이나 재정 지원이 취약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는데, 시장 보육서비스가 보편화 된 캐나다의 경우 보육비용이 10% 증가되면 고용은 3.9%, 보육서비스 구매는 11%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aker, Gruber & Milligan(2005)에 따르면 보육비용 지원율을 10% 올릴 경우 보육시설 이용은 약 4.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0~4세의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은 퀘벡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7.7%포인트 증가하여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율을 10% 증가할 경우 여성노동공급은 2.4% 증가할 것으로(민희철 외, 2007) 보고하였다. Fortin(2008)도 퀘벡주의 보육

78) Esping-Anderson(2002)은 ‘탈 상품화’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독립적 가구 구성권 개념 미포함(Orloff) 등 여성주의 관점의 비판을 수용하여 ‘탈가족화’개념을 제시하고 측정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모부성 휴가를 제시하였으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3개 지표의 이질성 등의 비판은 여전히 있음.

을 포함한 강력한 지원정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어 특히 아동가구의 가구 소득이 1998년~2006년 사이에 22%에서 30% 증가하였는데 이의 3/4가 여성의 근로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미국의 연구로 Gelbach(2002)는 미국의 편모가정에 무료로 공립유치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여성노동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프랑스의 연구로, 1994년 아동양육수당을 두 번째 자녀에게까지 확대한 가족정책은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져왔으나 여성경제활동률은 0.3%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하였다(Laroque & Salani, 2004, 민희철 외, 2007에서 재인용). 이 같은 취업률 감소는 출산율 제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Piketty, 1998).

영국의 연구로는 Chevalier와 Viitanen(2002)은 영국에서 공식적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보육비용에 대한 여성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상이하어 Blau(2000), Anderson과 Levine(2000) 등은 최대 0.4를 넘지 않는다고 추정하였다. 특히 영국의 세액공제제도는 1999년부터 2002년 동안 부양자녀를 둔 무배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감소하고 남성의 참여는 증가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이삼식 외, 2008).

이탈리아 연구에서도 3세미만아를 위한 보육 정원 비율의 출산력과 여성 취업률에 대한 효과는 각각 0.058, 0.043으로 유의도 5%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Del Boca., 2002).

일본의 경우, 정부의 대기아 감소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출산율도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공공보육 서비스가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주는지가 의문시된다. 그러나 미시접근에 의하면 보육서비스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石亞希子(2003)는 보육비용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적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여 보육료 감소가 여성경제활동 촉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육아지원과 여성노동 참여와 관련성 연구로는 김현숙(2005)은 보육비용이 많이 들수록 노동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김현숙과 성명제(2006)는 정책도입의 예상적 효과 연구로 노동패널 2004년 자료를 활용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자녀세액공제 도입시 여성의 노동참가 효과성을 분석하고, 면세점 이하의 기혼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안, 일정 소득구간에 한하여 정액보조금을 주는 방안, 근로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

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면세점 이하의 기혼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김현숙·원종학(2004)은 노동패널 1~5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제합수 접근법을 사용하고, Heckman의 2단계 표본선택모형과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다항선택모형으로 조세 방식의 보육료 보조금의 여성 노동참여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자녀의 보육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며, 특히 노동시간 참여에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보육비용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육비용이 취업여부를 결정하는데 근로시간 선택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민희철 등(2007)은 구조모수 추정치를 이용한 다양한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s)으로 그 영향의 하나로 취업모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보육비 지원정책이 노동공급은 3% 증가시키고 인적자본은 0.18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개별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으로 구현될 경우에 나타나는 정책 혼합(policy mix)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현재의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와 기존의 차등보육료제도를 유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형태의 정책 중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가 출산과 특히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대해 비용효율적인 면에서 우월한 정책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영유아 이외 전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최형재(2008)가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자녀의 존재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상당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교육 지출은 기혼여성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비례하며, 계층간 격차가 현저하며 저소득 계층에서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면 이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유인이 있는 반면, 상위 소득계층에서는 사교육비가 늘어나게 되면 일부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 활동을 포기하고 집안에서 자녀교육을 지원·지도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혼여성들은 사교육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취업여성들은 비취업상태에 있는 기혼여성들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노동시장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직장 활동에 따른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자녀교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또는 자녀교육과 직장생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연구자는 결론적으로 자녀교육 문제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취업여성의 경우 직장생활과 집안에서의 자녀교육이라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어 교육 분야에서 외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제활동'과 '자녀교육 매진' 사이의 선택에서 큰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라. 육아지원과 출산수준

외국 연구를 보면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비용, 보육시설 존재 유무 등과 같은 요인들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제시한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Gauthier 등(2001), Sleebos(2003), D'Addio와 Mira d'Ercole(2005)의 보고서를 들 수 있다.

〈표 III-1-2〉 20개 OECD 국가의 1998 합계출산률과 가족친화적 정책과의 관련성

구분	1998 합계출산률과 상관관계
일반적 보육서비스 이용률	
0~3세	.73**
3세이상 의무교육 이전	.37
평균	.69**
국가부담 보육서비스 이용률	
0~3세	.44
3~6세	-.52*
평균	-.30
출산/육아 휴가	
출산휴가기간(주)	-.07
대체비율(% 평균임금)	-.44
총 출산/육아 휴가기간(주)	-.32
일반 가정에의 사회복지 지출	
GDP 대비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 지출 비율	.35
1인당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율	.18
가정 서비스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07
1인당 가정 서비스 지출률	-.01
사업장의 유연성	
자유근무시간제 종사자의 비율	.50*
자발적으로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	.01
일/가정 조화 정책의 종합지수	.51*

자료: Francis G. Castles(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London.

먼저 Guathier 등(2001)의 문헌 연구 검토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약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1개 OECD 국가들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Castle, 2003)를 보면 특히 영아 공보육체계와 국가의 출산력은 상관성이 높다(표 III-1-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별 국가를 분석했을 때는 일치되지 않은 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보육제도의 유무가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앞서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에서는 1991, 1993, 1995년 3개 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가능성과 시간제 근로의 증가가 모두 출산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Del Boca., 2002).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보육시설과 공보육시설의 유무가 출산력에 주는 영향력이 긍정적이거나, 그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보육비용을 포함한 자녀양육비용과 출산력의 관계를 분석한 Blau와 Robins(1989) 연구 등을 보면 자녀양육비용이 전업주부의 출산율은 낮추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율은 낮추지 않는다. 이는 양육비용의 활용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Sleeboos(2003)는 Gauthier(2001) 등의 문헌 연구 검토를 토대로 연구방법과 육아 관련 정책의 범주 차이로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나타났으나 대체로 약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고, 또한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에 관해서는 상호 부적 관계를 보이던 1980년대와는 달리 1990년 이후 출산수준이 높은 국가가 여성취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Sleeboos(2003)는 OECD 국가들의 1998년 출산율과 1995~2000년의 보육 등록률을 이용하여 3세미만의 영아 보육 이용 가능성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분석하여 회귀계수를 0.01로 산출하고 설명력을 43%로 추정하였다. 또한 1998년 자료에서는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는 출산수준에 대하여 7%의 설명력을, 일과 가족의 조화로운 정책은 27%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하여 출산수준 제고 정책으로 영아를 위한 공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D'Addio와 Mira d'Ercole(2005)은 OECD 국가들의 사회정책이 출산력에 주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취합하여 보육시설의 이용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출산과 일의 조화를 돕는 강력한 도구이고, 반대로 육아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산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 개별 국가들의 연구로는 영국의 경우 육아비용 지원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고(Ermish, 1988, D'Addio and Mira d'Ercole, 2005 재

인용),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조세감면이 가족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Whittington et al., 1990; Whittington et al., 1992, D'Addio & Mira d'Ercole, 2005 재인용).

프랑스는 1994년 아동양육수당을 두 번째 자녀에게까지 확대한 정책으로 두 번째 자녀 출산율을 10.9% 증가시키고 세 번째 자녀의 출산율을 2.4% 감소시켜 전체 출생이수의 3.7% 증가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2004년 출산관련 수당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4.7%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Laroque & Salani, 2004, D'Addio & Mira d'Ercole, 2005 재인용; 민희철, 2007 재인용). Gauthier와 Hatzius(2005) 연구도 프랑스의 가족수당 2.5%의 증가는 출산율 4.5%(0.07명)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민희철, 2007 재인용). 그런데 프랑스의 가족수당 개혁은 앞서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출산율은 증가시켰으나 여성 취업률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Piketty, 1998).

일본의 경우, 總務省(2004)에서는 새엔젤 플랜의 정책효과 측정을 육아의 부담감의 완화 → 출산·육아 인센티브의 부여 → 출생수, 합계출산율 증가라고 하는 정책 효과의 발현 맥락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육아 인센티브의 부여와 출산과의 사이에는 외부요인으로서 자녀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개재하고 있어서 새 엔젤 플랜의 효과 측정에 곤란성을 나타내고 있다(相馬直子, 2006). 이에 차세대육성지원대책에서는 정책성파로 부모의 육아비용자체가 감소했는가, 증가했는가? 아버지·어머니 사이의 육아비용 부담의 불평등이 감소했는가, 확대했는가?(탈가족화 정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동시에 보육, 교육, 취업으로 관한 불평등이 감소했는가, 확대했는가?(탈계층화 정도)라는 점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相馬直子, 2008).

구체적 정책 효과연구로 Suzuki(2007)는 일본은 자녀 양육관련 재정지원을 아동출생시 출생보너스로 35만엔, 아동수당으로 12만엔, 조세지원 10만 9천엔 등 출생첫해 동안 총 579,000엔을 지원받게 된다고 추정하고⁷⁹⁾, 이러한 지원으로는 출산력의 소득탄력도를 고려할 때 의미있는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山上俊彦(1999)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 소득이 만엔 상승할 때 출산율이 0.00244% 상승하고,

79) 2007년 기준으로 출생 후 첫 1년간 부모가 수당 35만엔과 월 만엔씩 총 47만엔을 지원받고, 16세 미만 아동을 가진 부모가 소득세로 38만엔, 지방세로 33만엔을 면제받는데 소득조세율이 20%, 지방세율이 10%이므로, $38만 * 0.2 + 33만 * 0.1 = 109,000$ 엔을 감면받게 되어 총 579,000엔이 됨(Suzuki,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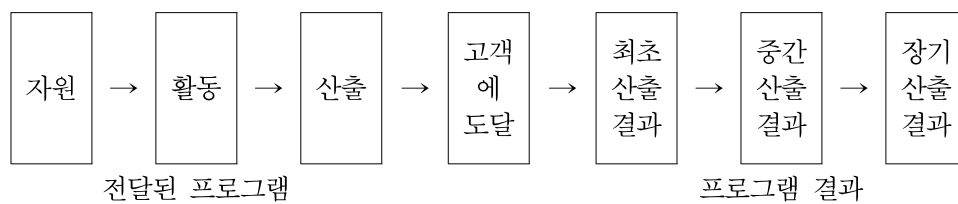
大山昌子(2004)는 남편 소득이 월 만엔 상승할 때 출산율이 0.01% 올라간다고 추정 하였으므로, 소득이 579,000엔이 오르면 출산율은 각각 0.141%, 0.048% 상승하게 된다. 森田陽子(2006)는 평균소득이 432,000엔이므로 연 평균 579,000엔은 11.1%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출산력에 대한 소득탄력도를 0.043을 적용하면 출산율은 0.48%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재정지원으로 합계출산율을 0.1% 올리는 힘들다는 것이다.

일본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시적 연구에서 보육비용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의 관계를 보인다고 조사하였으나, 한 다변량분석에서는 보육지원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滋野由紀子·大日康史(1999)는 보육시설 대기아동수와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야간보육서비스 이용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출산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滋野由紀子·松浦克己(2003) 연구에서는 보육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출산력 모형에 포함시켰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가지 변수의 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의 보육정책의 순효과가 있다하더라도 그 강도가 너무 작아 분명하게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였다(Suzuki, 2007).

국내 육아지원과 출산과의 관련성 연구로는 윤홍식(2006)은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이 2006년 신생아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2006년 출산과 출산 양육지원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한자녀 출산 후 2006년 출산한 가구와 미출산 가구를 비교하여 계량분석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보육료 지원이 두 번째 자녀 출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2007)는 설문조사와 프로그램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을 활용하여 저출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800명과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문항은 정부의 저출산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성의 우선순위, 저출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으로, 이를 통하여 총괄평가부분과 70여개 세부사업 각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출산예정이거나 향후 자녀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25.9%가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통한 평가는 저출산정책의 수행의 논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프로그램논리모형의 단계는 크게 프로그램 전달(집행)과 프로그램 결과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 전달단계는 정부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인 투입(inputs), 각종 서비스의 제공, 법률이나 규제의 집행 등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활동(activity), 그리고 자원과 활동으로부터 생성되는 직접적인 생산물인 산출물(outputs)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결과 단계는 정부 활동과 산출물로부터 나오는 편익으로 프로그램의 산출결과구조로 최초 산출결과(initial outcome), 중간 산출결과(intermediate outcome), 및 장기적인 산출결과(long-term outcome) 등이다(노화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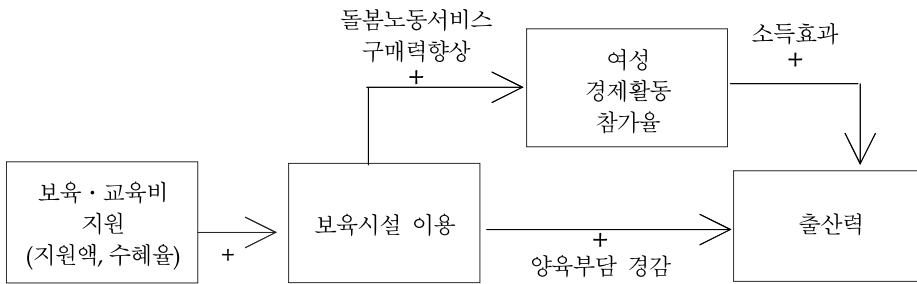
자료: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

[그림 III-1-1]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

양육비용 지원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자원은 예산 확대, 활동은 각종 지원사업이며 산출은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수 증가이고, 최초 산출결과가 부모 양육부담완화와 양육이 국가책임 강화이며, 중간산출결과가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고, 장기적 산출결과는 출산수준 제고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예산은 확대되었으나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많아서 출산율 제고정책으로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삼식 등(2008)은 이러한 논리모형을 반영하여 저출산 정책의 논리성과 효과성 평가 모형을 설정하고 시계열 및 2007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였다(그림 III-1-2 참조). 이 연구는 보육·교육비지원이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39로 정적 효과($p < .001$)를 보였고, 한편,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이 여성의 취업여부를 매개로하여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02로 미약하나마 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보육·유아교육시설 확충서비스 증대가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20($p < .001$)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모의 취업여부를 매개로 하여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무시할 수준이다. 한국사회에서 보육교육인프라는 모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

고 있어 여성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총 출산자녀수에 대한 소득공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0.11($p < .01$)로 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녀양육비용의 지출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자녀출산결정에 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공제가 모의 취업여부를 매개로 하여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2로 미약하나마 부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자료: 이삼식 외(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III-1-2]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

한편, 민희철 등(2007)의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s) 연구에서는 취업모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약 2% 정도이고 결혼은 약 0.04%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노동공급은 3%, 인적자본은 0.18년 증가 효과보다는 효과가 낮다고 분석하고,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로 보면 현재의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가 기존의 차등보육료제도를 유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정책보다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에 비용효율적인 면에서 우월한 정책임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산율 제고정책에 동원될 수 있는 재정이 유한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본적인 출산정책은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게 지원을 하되 취업모에 대한 지원을 보완책으로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2. 양육비용 지원방식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자녀 양육비용 지원은 현물, 서비스, 바우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

다. 그런데 지원 방식은 대체로 지원의 내용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방식만을 분리하여 그 성과나 효과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서비스 이용권 형태로 지원방식이 변경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성과들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 도입 초기단계로 실증적 연구는 없으며, 또한 실제로 지원 내용의 변경과 거의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므로 그 바우처 방식의 효과성만을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도 퀘벡주만이 시설별 보육비용 지원 정책을 쓰고 있으나 지원규모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퀘벡주의 성과가 단순한 지원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 절에서는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시설보조금과 부모보조금의 기대효과의 차이, 바우처 방식의 부모보조금의 기대성과를 논의하고 이어서 제한적이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시설보조금과 부모보조금의 효과

시설보조금과 부모보조금의 차이는 우리나라 국공립·법인 보육시설과 민간개인보육시설의 지원방식을 통하여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Cleveland와 Krashinsky(2003)는 이를 이념적 문제로 파악하였다. 시장의 기능을 믿는 쪽은 아동별 지원은 부모의 선택에 초점을 두는데, 시장 기능을 믿지 못하는 쪽에서는 부모가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와 부모의 선택이 정책적 의도와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 시설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

국내와 외국의 최근 정책은 이 두 가지 방식이 혼재되는 경향이다.⁸⁰⁾ 보육수요자를 통한 지원으로 정책을 강화한 우리나라의 전자바우처와 호주, 네덜란드의 사례가 있고, 시설보조금 지원 정책으로는 캐나다 퀘벡주와 서울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호주가 1998년에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였고, 네덜란드의 경우 종전에 인건비 지원 비율을 65%에서 30%로 삭감하고 삭감한 재원을 아동보육료 지원 쪽으로 변경하였다. 아동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호주나 네덜란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보육 수준이 낮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국가적 특성 때문에 아동별 지원

80) 외국의 사례 벤치마킹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주, 미국, 캐나다는 민주주의적 국가로 시장 지향적이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등 조합국가는 종교 단체에 기초한 시설이며, 스웨덴, 노르웨이는 사회 민주주의적 국가가 공공시설을 기본으로 함(Cleveland & Krashinsky, 2003).

을 선택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퀵백주는 다른 주와 달리 기본보조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육료 상한선을 두고 있고, 서울형 어린이집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료를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가장 커다란 기대 효과는 안정성과 효율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무게를 둘 경우 시설보조금 형태를 선택하고 규제를 강화하며,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면 부모보조금을 선호하게 된다. 부모와 시설 중 어디에 감독을 위한 구조기능적 의미를 더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나. 바우처 부모보조금 지원방식의 효과

부모보조금 지원방식 차이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바우처에 관한 연구이다.

일찍이 Savas(1987)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방식을 핵심적인 세 주체, 즉 ‘소비자, 생산자, 중개자(Arranger) 또는 공급자(Provider)’⁸¹⁾에 기초하여 10가지 유형으로 파악하고, 요금제와 사적재 중 소비가 장려되어야 하는 것들은 보조금과 구입증서라는 두 가지 다른 제도적 대안을 통하여 공급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둘의 차이는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적합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재화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구입증서 제도는 특정재화의 소비를 특정 계층의 소비자들에게 장려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보조를 함에 따라 소비자가 시장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이다(Blöndal, 2005, 유한욱,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구매권의 정도와 적용대상은 정부정책에 의해 규정된다(정광호, 2007). 바우처는 일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는 하나, 이용의 자유를 규제한다. 선택권의 허용범위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금지급과 현물지급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Steuerl, 2000). 즉, 정부가 해당 사업을 직접 공급하는 대신, 바우처를 통해 소비를 증진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⁸²⁾

81) 생산자는 자신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생산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하는데 반해 중개자 또는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생산자를 또는 생산자에게 소비자를 배정하거나 생산자를 지정하는 주체를 의미함.

바우처 제도의 주요 목적은 효율성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유한욱, 2006), 이밖에도 특정분야의 공공서비스 확대나 소비촉진, 산업육성, 행정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먼저 바우처의 효율성 측면을 살펴보면,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경쟁을 유발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생산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과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작용을 통해 적절한 공급자와의 매칭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되며(Cave, 2001, 유한욱, 2006에서 재인용), 또한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 부분에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에 내재된 비효율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바우처는 특정 서비스 향유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해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특정목적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려고 할 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를 통해 정부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각종 행정업무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행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주요 사회서비스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 확대되면서 바우처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바우처에 대한 찬반 논란은 크게 이념적인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한승훈, 2008). 바우처의 효과성에 대한 이념적인 측면은 주로 바우처를 도입할 때 나타나는 정치적인 논리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바우처에 대한 찬성론은 바우처의 시행 목적, 즉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등 주로 바우처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나타나는 반면, 바우처에 대한 반대론은 바우처 도입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발생, 서비스 제공자들의 바우처 수령 거부현상 등 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주된 논리로 내세운다. 반면 실증적인 측면에서의 논쟁은 현실에서 과연 바우처가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에 대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바우처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실제로 교육 바우처의 효과성에 관한 논문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한승훈(2008)에

82) 바우처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Steuerle, 2000; 유한욱, 2006; 김진, 2007; 신은수, 2007). 바우처는 통상적으로 명시적, 묵시적, 환급 바우처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제공되는 바우처 금액에 따라서 균일 바우처와 차등 바우처로 구분되며, 수혜자의 선정 범위에 따라 선별적 바우처와 보편적 바우처로 구분됨. 또한 바우처 금액의 추가 소비 가능성에 의해, 추가 소비 가능형(top-up) 바우처와 추가 소비 불가능형 바우처(no top-up)로 구분함.

따르면 미국의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바우처가 정책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하였다. 즉, 바우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그 자체로 효과성을 갖는다고보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설계되었을 때 효과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과성은 높거나 낮을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앞서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로서 바우처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육서비스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러한 목표달성에 적합하도록 바우처 제도를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 보육, 유아교육 이용권 제도의 효과

우리나라 보육이나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권 제도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단계이므로 그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없다. 다만, 이재원·정진우·이정화(2008)는 보육전자카드의 도입을 앞두고 예상되는 카드 도입의 효과성을 ROI(Return On Investment)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ROI는 프로젝트 비용(input) 대비 순효과(output)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육전자카드의 경우 프로젝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포털시스템 구축, 시스템 통합, 카드 수수료,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유지,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등에 드는 비용으로, 연구 당시 포털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이었으므로 프로젝트 비용을 모두 산출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순효과는 다시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구분되는데, 정량적 효과는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서비스 공급자·지자체의 업무량 감소를 추정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 대한 정량적 추정치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공급자 기대효과는 351억 2700만원으로, 지자체 기대효과는 47억 800만원으로 추정되어, 총 기대효과는 398억 450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정성적 효과는 제도 도입 후 포털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공급자, 지자체 등의 만족도(체감도), 정책관리 효율성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이외 보육전자카드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육서비스 이용권 도입 관련 연구로는, 이재원·정진우·이정화(2008)와 유희정 등(2009)의 연구가 있다. 이재원·정진우·이정화(2008)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들, 즉 서비스 신청, 카드결제방식, 보육료 지급 청구와 지불, 부정사용 방지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행해지고 있는 보육사업의 특수시책들을 i-사랑카드에 담기 위해 표준화하는 방안과 양육수당과 i-사랑카드의 통합관리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유희정 등(2009)의 연구에서는 i-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도입과 관련하여 육아지원기관장들과 기관이용 부모들,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들의 평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서비스의 질 관리방안과 바우처 제도를 연계할 것,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증진시킬 것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장명립(2008)은 유아교육바우처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보육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Besharov와 Samari(2000)는 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 선택에 있어, 바우처 도입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보다 바우처 방식 도입 이후 다양한 서비스(반일제, 연장제, 야간보육 등)가 증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설 간의 격차(경제계층간, 인종간 분리현상)가 감소하고 보육서비스 공급이 증가한 반면, 서비스 비용이 상승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했다. 이는 바우처를 가진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장의 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한 결과이다. 그러나 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또 한 가지 현상은 추가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부모들이 값싼 보육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받지 않은 서비스나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는 바우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과 더불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반면, 메사추세츠 주의 바우처 시스템이 아동, 가족, 서비스 제공자 및 의뢰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한 Washington과 Reed(2008)의 연구에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바우처의 긍정적인 측면은 인지하였지만, 낮은 바우처 금액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자들이 바우처를 제한적으로 받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짧은 바우처 적용 기간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와 가족들 사이에는 강한 유대감이 있는 반면, 두 집단 모두 바우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우처의 제공은 아동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이 서비스 단절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바우처 프로그램인 주택바우처와 보육바우처의 효과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Turner, Adams, Rohacek과 Eyster(2007)의 보

고서에서는 두 바우처 프로그램이 제도 도입의 초기에 있었던 논쟁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대체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바우처의 수혜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일정한 수준을 충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일부 서비스 공급자들이 바우처 수혜 아동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꺼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기꺼이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바우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① 주별, 지역별, 기관별로 서비스 질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 ② 바우처의 부정수혜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조사 기간 동안 서비스의 단절이 발생한다는 점, ③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선 서비스 후 지급, 서비스 이용일수 제한, 입학금·교재비·현장학습비와 같은 추가비용 미지불 등 바우처 수혜 아동을 꺼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 ④ 바우처 수혜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일정한 수준을 충족시키기는 하지만 높은 질의 서비스는 아니라는 점 등이다.

한편, 영국의 조세 및 급여와 연계된 보육서비스 바우처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제도도입 직후 2005년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되었는데, 계약이나 직접 보육시설 설치하는 방식보다 바우처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2배 정도 높았다. 2008년 부모조사에서는 고용주의 보육지원을 받은 부모 중 73%가 바우처를 통한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DCSE, 2009). 그러나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36%만이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로 추정된다(HM Revenu and Custom, 2006).

3. 시사점

양육비용의 지원이나 지원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의 자료에 국한된 연구결과이지만, 질 높은 영유아 서비스가 아동 발달 등 인적 자원에 미치는 재정투자 효과는 매우 높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외국의 거시적 연구들은 보육서비스 비용 증가나 공공서비스 공급의 증가가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또한 이러한 보육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여성취업률을 높이고, 이러한 자녀양육 여건의 변화는 직접 또는 여성취업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증명하는 연구보고들이 있으나 각 국가별 연

구는 서로 상반된다. 우리나라 연구들은 자녀양육 지원정책이 출산에 기여한다는 증거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 확대를 매개로 한 출산에의 기여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자녀양육 지원정책 중에서 차등보육료·교육비 확대가 수당 정책보다 출산정책으로 효과가 더 높다고 평가된다. 한편 양육비용 지원방법으로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출산수준의 증가에는 기여할 수도 있으나 여성의 취업률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의 공공서비스 대체수단으로 지원되는 영아 양육수당이 영아의 어머니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랑스의 가족수당 대상 확대 정책은 출산 수준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여성 취업률은 다소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지원금을 공급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의 영향 차이를 분명하게 분석한 연구는 없다. 다만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시설 보조금 지원으로 낮은 보육료 상한선을 두는 등의 예산 확충과 함께 추진한 정책이 부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다른 주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접 공급자에 지원하는 방식에 비하여 바우처 방식이 이재원(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행정효율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용 지원에서와 같은 투입, 과정, 산출, 산출결과의 개념들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산출이나 산출결과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정 중심으로 바우처 방식에 대한 효과 분석 모형이 구성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IV.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

1. 분석의 개요

특정한 사업의 효과성은 전통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수혜자나 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란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목적하는 바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 지원사업의 목적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가구의 아동에 대해 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일과 가정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을 기여하는 데 있고, 또한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하여 출산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인서비스의 효과성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만 효과성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서비스 투입에 들어가는 자원부터 서비스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효과성의 개념에는 인적·물적 자원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는가하는 자원의 적합성,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욕구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가하는 욕구의 적합성, 인적·물적 자원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그에 맞도록 쓰이고 있는가하는 과정의 적합성, 조직이 서비스 제공 또는 관리 목적을 달성하였는가하는 목적달성 등이 포함된다(박경숙, 강혜규,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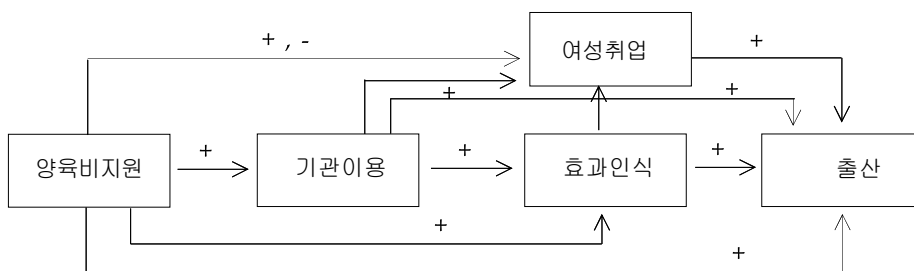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국가재정법(제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조)」에 근거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 관리는 재정사업이 예산의 집행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사회적 결과물(output)을 생산해 내고 이를 통해 정책 목표로 선정한 성과(performance)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투입-과정-산출 및 프로그램논리모형(노화준, 2006) 등을 고려하여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산출결과(outcome)의 개념을 적용하였다⁸³⁾. 투입은 자원과 정책, 활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

력의 양과 질을 나타내고, 과정은 투입에 따른 대상자의 정보나 인식 변화 등으로 규정하고, 산출은 투입의 성과이며, 산출결과는 투입과 산출의 최종결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이나 지원에 대한 인식 및 만족 등이 과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책평가의 대상은 결국 성과와 효과이다(노화준, 2006). 그러나 이러한 성과나 효과는 단시간에 나타나기 어려우며,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수집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보육료와 유아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용 지원이 서비스 이용, 정책효과 인식, 여성취업, 출산수준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투입, 과정, 산출 및 산출결과 모형에서 동일한 범주의 변수들간에도 상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출결과로 여성취업률과 출산 수준이 포함되지만 여성취업률은 출산수준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본 분석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은 [그림 IV-1-1]과 같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직접 비용은 모든 부모에게 보편적인 부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지원은 직접적으로 부모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한편, 기 출산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 출산의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여력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양육비용 지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향상은 취업모델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IV-1-1] 양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논리 모형

83) 산출(output)과 산출결과(outcome)를 투입-과정-산출 모형에서 모두 산출로 간주할 수 있음, 이러한 개념적 분석들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을 평가한 연구(김승권 외, 2007)의 개념 분석들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음.

또한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참가는 소득 상승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자녀양육 비용 측면에서 추가 출산이 용이해 질 것이다. 이렇듯 양육비용 지원은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질 것이다. 이러한 투입, 산출 및 산출결과 변수들의 관계는 외국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양 또는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제도의 확대로 육아지원에 재정투입이 증가하면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여성취업률은 감소하나 출산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하는 양육비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이냐에 따라 분석 모형이나 결과는 달라진다.

본 분석은 분석 단위를 국가 단위, 시·군·구 단위 및 개인 단위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전체 단위에서는 국가의 육아지원 예산을 투입변수로 설정하고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여성취업률, 출산수준을 효과로 설정하였다. 이들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로 통계청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하는 통계자료이다.

둘째, 지역단위 분석은 시·군·구 단위 분석으로, 국고 지원 사업 이외의 시·도 및 시·군·구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육아지원, 전체 및 공공육아서비스 공급 확충 등을 투입변수로 설정하고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여성취업률과 출산수준을 효과로 설정하였다. 국가단위 분석과는 달리 지역특성 변수, 지방정부의 총괄적 재정 등의 정책변수가 포함된다.

셋째, 개인단위 분석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수혜가 어머니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인식, 취업이나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0~5세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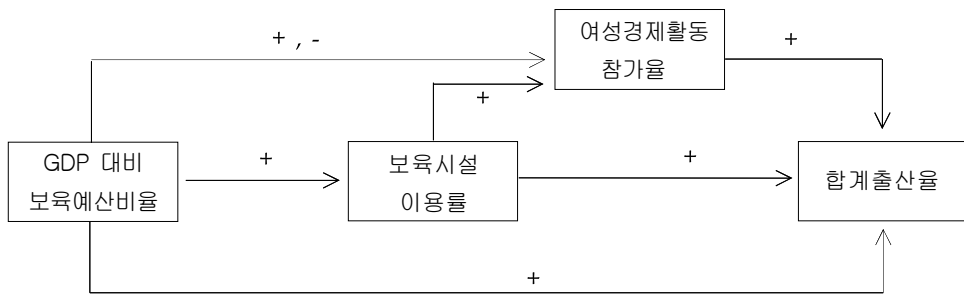
2. 국가단위 통계 분석

가. 분석틀

국가단위분석 자료는 GDP대비 보육예산 비율, 보육서비스 이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합계출산율로 1995~2008년의 14년간 자료이다. 본 분석에서는 예산이나 이용률은 보육변수만을 고려하였고 유아교육 관련 요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보육예산은 1995년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한 반면에 유아교육 예산은 2002년

이전의 자료, 특히 지방교육청 자료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⁸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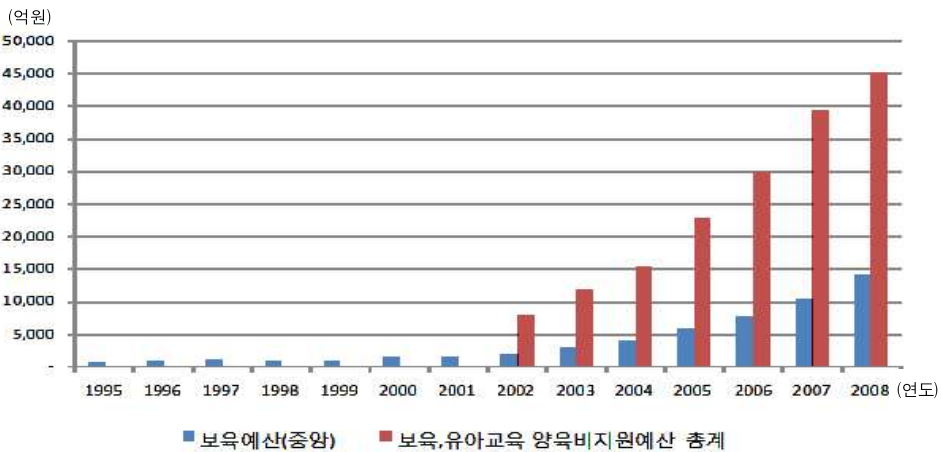
이러한 자료로 구성된 국가단위분석 모형은 [그림 IV-2-1]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로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논리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보육료 지원 규모는 보육기관 이용률을 높이고 이들은 모두 경제활동률에 기여하며, 또한 직접 간접으로 합계출산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림 IV-2-1] 국가단위 분석 모형

나. 관련 변수의 변화 추이

[그림 IV-2-2]부터 [그림 IV-2-5]는 관련 변수들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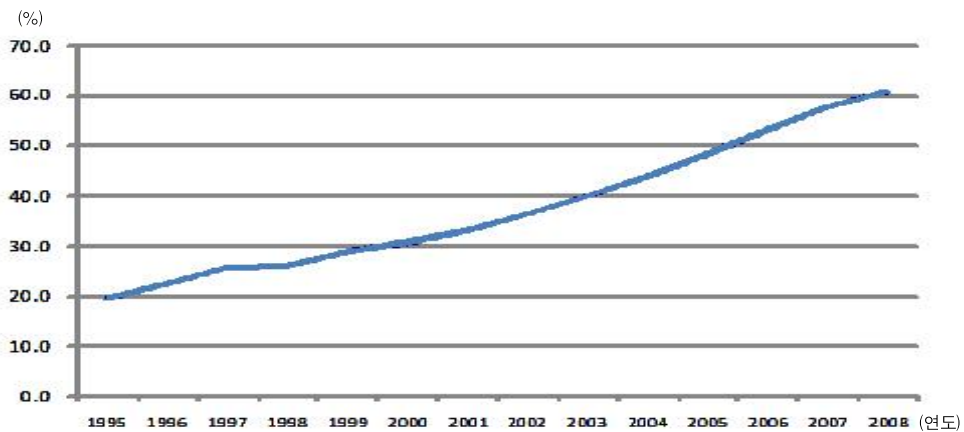


[그림 IV-2-2] 보육예산(중양) 및 보육·유아교육양육비지원예산(1995~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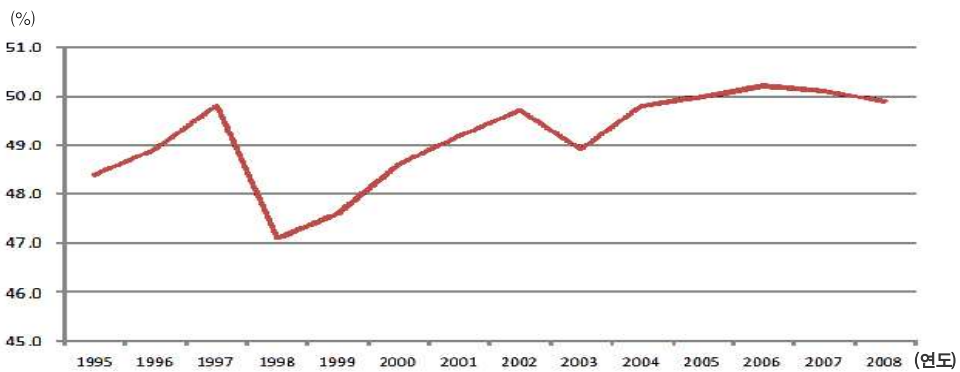
84) 사례수가 7개로 회귀분석에 부적절하여 제시하지 않음.

먼저 우리나라의 양육비용 지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용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2002년 이전 자료 수집이 가능한 중앙 보육예산만을 살펴보면, 1995년 830억원, 2000년 1,460억원, 2005년 6,001억원, 2008년 14,236억원으로 1995년 대비 2008년 17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국고지원 보육예산과 유아교육예산을 합한 보육·유아교육 예산은 2002년 8,138억원에서 2004년 15,475억원, 2006년 19,956억원, 2008년 45,247억원으로 2002년 대비 2008년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IV-2-3]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1995~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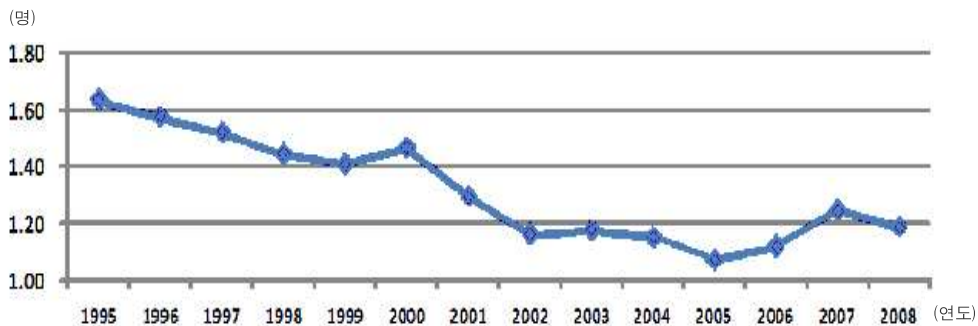
[그림 IV-2-4] 여성경제활동참가율(1995~2008)

이용하는 서비스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률은 [그림 IV-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19.6%, 2000년 31.0% 2005년

48.3%, 2008년 61.0%로 1995년 대비 2008년 3배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지원 예산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이 증가하여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대상아가 늘어나면 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아동들도 기관 이용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48.4%, 2000년 48.6%, 2005년 50.0%, 2008년 49.9%로 40% 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1998년과 1999년은 47% 수준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7년 IMF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이후에는 50%를 조금 넘기기도 하였다(그림 IV-2-4 참조).

또 다른 산출결과 변수인 합계출산율은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 1.63명, 2000년 1.47명, 2005년 1.08명, 2008년 1.1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과 2007, 2008년은 합계출산율이 최저점을 기록하였던 2005년에 비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IV-2-5 참조).



[그림 IV-2-5] 합계출산율(1995~2008)

다.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는 GDP대비 보육예산, 보육서비스 이용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합계출산율로 1995~2008년의 14년간 자료이다. 합계출산율과 그 이외 자료는 1년 시차를 두고 적용하였다. <표 IV-2-1>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을 나타내며, <표 IV-2-2>는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보육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GDP대비 보육예산의 단순회귀계수는 256.8이며 베타값은 0.924이다. 조정된 R²값이 0.842이다.

여성취업률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단순회귀계수는 0.059이며 베타값이 0.677이다. 분석모형에서는 보육이용비율을 포함하였으나 GDP 대비 보육예산과 보육이용비율의 단순상관관계가 높아⁸⁵⁾ GDP 대비 보육예산 변수는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조정된 R²값은 0.413이다.

다음으로 합계출산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합계출산율에 대한 GDP 대비 보육예산, 보육이용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다중공선성 문제로 GDP 대비 보육예산 변수는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보육이용률만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합계출산율에 대하여 약 80%의 설명력을 가졌고, 모형2에서 보육이용비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에는 합계출산율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지 않았다.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률과 여성취업률의 보육이용비율의 직접적인 효과는 각각 -0.893($P<.001$), -0.003으로 모두 부적인 방향을 나타냈고,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2-1〉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	단위	평균	표준편차	자료원
합계출산율	TFR	1.3542	0.201	통계청
GDP 대비 보육예산(국고)비율	비율	0.051	0.040	보건복지가족부
0-5세아 보육시설 이용률	%	22.501	10.975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49.157	0.962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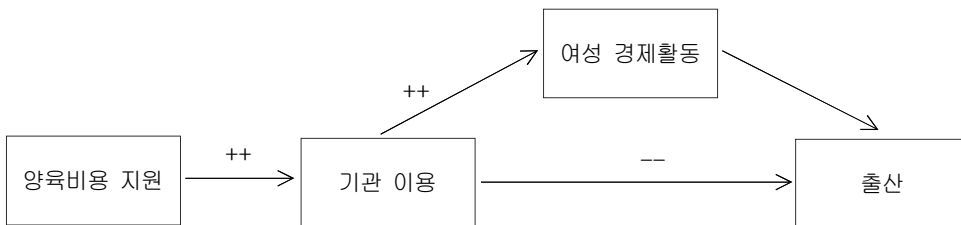
〈표 IV-2-2〉 합계출산율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보육 이용률		여성취업률		합계출산력			
					모형1		모형2	
	B	β	B	β	B	β	B	β
GDP 대비 보육(국고)예산	256.8 ^{***}	0.924	-	-	-	-	-	-
0-5세아 보육시설 이용률	-	-	0.059 ^{**}	0.677	-0.016 ^{***}	-0.895	-0.016 ^{***}	-0.893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	-	-	-	-0.001	-0.003
R ²	0.842		0.413		0.802		0.802	
constant	9.478		47.823		1.722		1.75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는 $p<.001$ 을 의미함.

85) $r=0.924$ 임

다음으로 [그림 IV-2-6]은 분석결과를 경로모형으로 제시하여 보육예산, 보육서비스 이용 및 여성취업률의 출산력에 대한 간접 효과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육예산은 보육이용비율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방향을 나타내었다. 즉, 단순상관계수가 시사하였듯이 보육예산이 증가할수록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은 여성취업률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보육예산은 여성취업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합계출산력에는 부적 관계를 갖는다. 여성취업률도 합계출산력에는 유의하지 않다.



[그림 IV-2-6]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 경로

즉, 합계출산율로 측정된 출산력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보육이용률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002^{86)}$ 로 미미하다. 즉, 보육이용은 여성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취업이 아직까지는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삼식(2008)의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이 여성의 취업여부를 매개로하여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02로 미약하나마 정적으로 나타난다는 보고와는 방향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미미한 수준은 동일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예산의 확대는 보육서비스 이용률과 이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출산수준은 계속 감소하여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선행 연구들의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에 의하면, 양육비용 지원정책은 직접 또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해 출산력 변화에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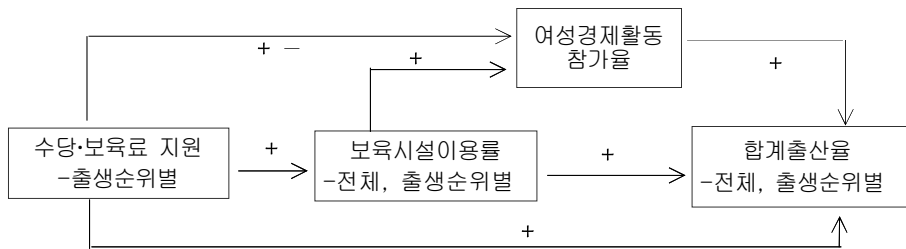
86) $0.677 \times (-0.003)$

3. 지방정부 자녀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가. 시·군·구 단위 분석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원예산의 확대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보육서비스 이용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출산수준과는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고, 여성취업률도 출산에 대하여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그간의 외국의 연구결과나 일반적 기대와는 차이를 보였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모든 지방정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군·구 단위 분석에서는 중앙정부 정책 이외에 시·도,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별도의 지방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정부는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현금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출생순위별로 차별화하여 지원한다. 이러한 지방정부가 출생순위별로 적용하는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등과 같은 현금 지원과 출생순위별 보육료 추가 지원이 전체 및 출생순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여성의 취업률이나 전체 출산수준, 출생아의 출생순위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모형은 [그림 IV-3-1]과 같다.



[그림 IV-3-1] 시·군·구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모형

나. 관련변수

먼저 자녀의 양육비용 지원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현금지원과 보육료 지원여부를 사용하였다. 현금지원은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수당이나 양육수당 지원여부로, 아동 출생순위별로 첫째아 이상 지원, 둘째아 이상 지원 및 셋

째아 이상으로 구분하여 변수화하였다. 또한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여부,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여부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책은 지방정부마다 지원 규모나 대상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모두 그대로 코딩하여 통계자료화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지원 수준이나 지원 연령 제한은 고려하지 않고 출생순위만을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더미로 변수화 하였다. 해당 연도는 2006~2008년 3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종속변수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였다. 지방정부의 양육비용 지원 제도들이 2004년을 전후하여 실시되었고 2006년에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한번 채택한 정책은 그 다음 해에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되므로 연도별 정책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한 개 연도 자료만 포함하였다.

또한 자녀의 보육지원을 나타내는 변수로 각 시·군·구의 특수보육사업 예산 수준을 이용하였다. 이는 국고 지원사업 이외에 각 지방정부의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아동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보육정책변수로 국공립보육 및 전체 정원율⁸⁷⁾을 포함하였다.

이외에 시·군·구 지역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시·군·구 단위 통계는 매우 제한적인데, 가능한 자료로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시·군·구 재정자주도와 2005년 인구총조사 결과로 산출된 가구주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가구주 학력, 도시화정도 분포와 종교 분포를 포함하였다. 가구주의 학력은 중졸 이하 비율과 대학원이상 비율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가구주의 종교는 불교 비율, 기독교 및 가톨릭 비율, 기타 종교 인구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동과 읍·면을 구분하여 변수로 포함하였다.

양육비용의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전체 아동 대비 보육·유아교육기관 이용률,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출생순위별 비율, 최근 5년간 보육·교육기관 이용 증가율, 여성취업률, 출산수준 및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비율을 설정하였다.

<표 IV-3-1>은 이와 같은 변수들의 평균 등을 나타낸다. 양육비용 지원 변수는 더미화하였으므로 평균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시·군·구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06년 첫째아 현금 지원은 1, 미지원은 0으로 코드를 부여하였으므로 평균 0.302는 30.2%의 시·군·구에서 이러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7) 유아교육은 교육청별 정원통계를 생산하지 않아서 자료 부족으로 제외함.

〈표 IV-3-1〉 다중회귀분석 사용 변수의 평균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합계출산율(2008)	1.287	0.238	0.79	2.21
출생아 중 둘째이상아 비율(2008)	49.212	4.711	37.42	61.52
출생아 중 셋째이상아 비율(2008)	11.713	4.001	4.17	23.02
보육교육기관이용률(2008)	62.081	9.492	37.82	117.28
유아교육·보육아동증가율('05~'08년)	4.043	2.110	-3.71	13.66
보육아동 중 둘째이상아 비율(2008)	10.802	3.631	6.08	24.42
보육아용아동 중 셋째이상아 비율(2008)	44.825	4.807	33.78	60.37
20~40세 여성취업률(2008)	49.800	7.701	33.53	75.72
06년 첫째아 이상 수당(지원=1)	0.302	0.460	0	1.00
06년 둘째아 이상 수당(지원=1)	0.409	0.493	0	1.00
06년 셋째아 이상 수당(지원=1)	0.634	0.483	0	1.00
06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207	0.406	0	1.00
06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629	0.484	0	1.00
07년 첫째아 이상 수당(지원=1)	0.259	0.439	0	1.00
07년 둘째아 이상 수당(지원=1)	0.444	0.498	0	1.00
07년 셋째아 이상 수당(지원=1)	0.659	0.475	0	1.00
07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216	0.412	0	1.00
07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578	0.495	0	1.00
08년 첫째아 이상 수당(지원=1)	0.303	0.461	0	1.00
08년 둘째아 이상 수당(지원=1)	0.515	0.501	0	1.00
08년 셋째아 이상 수당(지원=1)	0.828	0.378	0	1.00
08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211	0.409	0	1.00
08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707	0.456	0	1.00
특수보육사업예산(아동1안당/만원, 2007)	5.629	9.458	0	40.00
국공립보육정원율(2008)	7.005	6.143	0	32.15
보육정원율(2008)	55.851	13.744	21.89	117.70
국공립보육정원 연평균증가율('05~'08년)	0.743	0.897	-1.28	5.33
보육시설정원 연평균증가율('05~'08년)	5.263	2.331	-0.36	16.14
도시화 정도(동=1)	0.629	0.484	0	1.00
재정자주도(2007)	67.453	9.507	39.60	91.70
가구주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2005)	41.402	19.209	7.06	78.89
가구주 대학원 이상 비율(2005)	19.327	11.899	3.81	64.59
가구주 불교 비율(2005)	25.140	10.481	4.91	52.45
가구주 기독교 및 가톨릭 비율(2005)	26.127	9.112	7.76	52.48
가구주 기타 종교 비율(2005)	1.331	1.125	0.43	10.35

〈표 IV-3-2〉 보육·교육공급 및 이용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수

구분	공립보육 정원율	공립정원 증가율	보육 정원율	보육정원 증가율	보육·교육 기관 이용률	보육·교육 기관이용 증가율
공립보육정원율	1					
공립보육정원증가율	0.776***	1				
보육정원율	-0.010	0.120	1			
보육정원증가율	-0.070	0.083	0.714***	1		
보육교육기관이용률	-0.024	0.106	0.816***	0.694***	1	
보육교육기관이용증가율	-0.139*	-0.059	0.351***	0.752***	0.562***	1

주: *는 $p < .05$, ***는 $p < .001$ 을 의미함.

이들 변수의 상관관계수는 연도별 동일한 정책변수들간의 상관성이 높아서 여러 연도의 자료를 동시에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외에는 각 서비스 정원율, 이용률과 공급 증가율간의 상관관계수가 높다. 보육정원율과 보육교육기관 이용률간의 피어슨 상관관계수는 0.816으로 가장 높다.

다. 분석결과

1) 지방정부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기관이용률에 미치는 영향

보육료를 포함한 양육비용 지원이 보육·유아교육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기관이용증가율,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둘째아 이상 아동 비율과 셋째아 이상 아동 비율이다. 독립변수는 출산 및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의 출생순위별 지원여부, 출생순위별 보육료 추가지원 여부를 포함하고, 이외에 아동1인당 특수보육사업 예산, 국공립 및 전체 보육정원율, 시·구 및 읍·면 여부, 재정자주도, 가구주의 학력 및 종교 변수가 포함되었다. 양육비용 지원의 기관이용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출생순위별 보육료 및 현금 지원 및 기관이용률은 모두 2008년 통계 자료를 우선 사용하였고, 추가로 200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⁸⁸⁾

가) 전체 이용에 대한 영향

분석모형은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모형1은 기관이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

88) 2007년 자료 사용한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하였음.

으로 추정되는 보육정원율을 포함한 것이고 모형2는 이를 제외한 것이다. <표 IV-3-3>은 기관이용률을 종속변수로 포함한 분석결과이고, <표 IV-3-4>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기관이용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포함한 분석결과이다.

<표 IV-3-3> 시·군·구 기관이용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 분	모형1			모형2		
	계수(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46.235**	6.447		72.372***	10.192	
08년 첫째아 이상 수당(지원=1)	-0.519	1.241	-0.025	-4.722*	1.993	-0.229
08년 둘째아 이상 수당(지원=1)	0.416	1.122	0.022	1.555	1.806	0.082
08년 셋째아 이상 수당(지원=1)	0.212	1.212	0.008	3.367#	1.956	0.134
08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1.000	0.978	-0.044	-2.517	1.588	-0.110
08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045	0.903	0.002	-0.234	1.473	-0.011
특수보육사업예산(아동1인당/만원)	-0.042	0.043	-0.042	0.070	0.070	0.069
국공립보육정원률	-0.012	0.061	-0.008			
보육정원율	0.540***	0.029	0.784			
도시화 정도(동=1)	2.283#	1.222	0.116	6.687***	1.962	0.340
재정자주도	-0.127**	0.042	-0.129	-0.208**	0.068	-0.212
가구주의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	0.075	0.050	0.150	0.234**	0.080	0.471
가구주의 대학원 이상 비율	0.249	0.187	0.081	-0.211	0.303	-0.068
가구주의 불교 비율	-0.026	0.080	-0.029	-0.103	0.129	-0.113
가구주의 기독교 및 가톨릭 비율	-0.153	0.099	-0.147	-0.211	0.161	-0.212
가구주의 기타 종교 비율	-0.469	0.384	-0.055	-0.667	0.623	-0.078
20~40세 여성취업률	-0.110	0.060	-0.090	-0.046	0.098	-0.037
조정 R ²	0.705			0.212		
F	34.8			5.4		
(수)	(232)			(23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10$, *는 $p < .05$, **는 $p < .01$, ***는 $p < .001$ 을 의미함.

먼저 <표 IV-3-3>을 보면 시·군·구의 보육료 추가지원은 시·군·구의 보육교육기관 이용률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대와 같이 모형1에서 보육정원율은 기관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모형 모두에서 보육료 추가지원은 기관이용률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금 지원은 모형2에서 보육정원율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만 첫째아 지원과 셋째아 지원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방향성이 전자는 부의 관계, 후자는 정의 관계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외에 동 및 읍·면 여부와 재정자주도가 두 모형 모두, 그

리고 가구주의 중학이하 학력 비율은 모형 2에서 기관이용에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표 IV-3-4>는 공급관련 변수로 최근 5년간 연 평균 기관이용증가율을 종속 변수로 한 분석결과이다. 모형은 공립 및 전체 보육정원율의 연 평균 증가 비율 포함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모형1은 기관 이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국공립 및 전체 보육시설 정원증가율을 포함한 것이고 모형2는 이를 제외한 것이다. 두 모형 모두에서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의 보육료 추가 지원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금 지원은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두 번째 이상 지원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첫째 이상 지원과 셋째 이상 지원에서 부의 관계로 나타나서 앞의 <표 IV-3-3>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IV-3-4> 시·군·구 기관이용증가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 분	모형1			모형2		
	계수(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6.754 ^{***}	1.346		10.988 ^{***}	2.243	
08년 첫째아 장려금·수당(지원=1)	-0.880 ^{***}	0.242	-0.183	-1.706 ^{***}	0.405	-0.355
08년 둘째아 장려금·수당(지원=1)	0.583 [*]	0.254	0.138	0.926 [*]	0.431	0.219
08년 셋째아 장려금·수당(지원=1)	-0.434 [*]	0.217	-0.098	-0.884	0.367	-0.199
08년 둘째아 보육료 추가(지원=1)	-0.128	0.213	-0.025	0.025	0.357	0.005
08년 셋째아 보육료 추가(지원=1)	-0.203	0.203	-0.048	-0.272	0.345	-0.064
특수보육사업예산(아동1인당/만원)	-0.029 ^{***}	0.009	-0.130	-0.013	0.015	-0.060
국공립보육정원증가율	-0.096	0.088	-0.041			
보육정원증가율	0.708 ^{***}	0.035	0.782			
도시화 정도(동=1)	0.375	0.265	0.086	1.686 ^{***}	0.437	0.387
재정자주도	-0.029 ^{***}	0.009	-0.131	-0.030 [*]	0.015	-0.135
가구주의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	-0.023 [*]	0.011	-0.212	0.016	0.018	0.142
가구주의 대학원 이상 비율	0.014	0.039	0.021	-0.029	0.067	-0.042
가구주의 불교 비율	-0.028	0.017	-0.137	-0.050 [*]	0.028	-0.251
가구주의 기독교 및 가톨릭 비율	-0.037 [#]	0.021	-0.161	-0.097 ^{**}	0.035	-0.417
가구주의 기타 종교 비율	0.124	0.083	0.066	0.204	0.140	0.109
20~40세 여성취업률	-0.033	0.013	-0.122	-0.044 [*]	0.022	-0.159
조정 R ²		0.705			0.212	
F		34.8			5.4	
(수)		(232)			(23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10$, *는 $p < .05$, **는 $p < .01$, ***는 $p < .001$ 을 의미함.

이외에 재정자주도와 종교 변수가 두 모형에서 모두 부의 관계로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며, 보육정원 증가 변수를 제외한 모형2에서 지역이 동인지는 정적 관계로, 여성취업률은 부정적 관계로 기관이용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나) 출생순위별 이용에 대한 영향

다음은 각 시·군·구의 출생순위별 수당이나 보육료 차등 지원 정책이 출생순위별로 보육시설 이용에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IV-3-5>는 시·군·구 출생순위별 비용 지원 정책이 지역내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별 비율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고자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셋째아의 비율과 둘째이상아 이상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이다.

<표 IV-3-5> 보육시설 이용아 중 둘째 및 셋째아 이상 비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 분	보육 둘째아 이상 비율			보육 셋째아 이상 비율		
	계수(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37.572***	4.561		4.220	2.812	
'08년 첫째아 장려금, 수당(지원=1)	0.628	0.885	0.061	0.098	0.546	0.013
'08년 둘째아 장려금, 수당(지원=1)	-1.579*	0.791	-0.168	-0.774	0.487	-0.108
'08년 셋째아 장려금, 수당(지원=1)	0.860	0.863	0.099	0.236	0.532	0.025
'08년 둘째아 보육료 추가(지원=1)	-0.562	0.696	-0.049	-0.935*	0.429	-0.108
'08년 셋째아 보육료 추가(지원=1)	2.253***	0.644	0.217	1.232**	0.397	0.156
특수보육사업예산(아동1인당/만원)	0.018	0.031	0.005	0.067***	0.019	0.176
보육 정원율	0.075***	0.020	0.217	0.035**	0.013	0.133
도시화 정도(동=1)	0.832	0.873	0.085	-0.248	0.538	-0.033
재정자주도	-0.028	0.030	-0.058	-0.012	0.019	-0.031
가구주의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	0.139***	0.035	0.563	0.115***	0.022	0.612
가구주의 대학원 이상 비율	0.214	0.133	0.139	0.150#	0.082	0.128
가구주의 불교 비율	-0.093	0.057	-0.216	-0.070*	0.035	-0.212
가구주의 기독교 및 가톨릭 비율	-0.097	0.071	-0.187	-0.027	0.043	-0.038
가구주의 기타 종교 비율	0.618*	0.273	0.146	0.467**	0.168	0.145
20~40세 여성취업률	0.007	0.043	0.012	0.025	0.026	0.055
조정 R ²		0.40			0.60	
F		10.8**			23.7**	
(수)		(232)			(23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10, *는 p<.05, **는 p<.01, ***는 p<.001을 의미함.

분석결과를 보면 시·군·구의 셋째아 보육료 추가지원이 시·군·구의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중 둘째 이상아 비율과 셋째 이상아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둘째아 보육료 추가지원은 셋째아 이상 비율에 부적 관계를 보였고,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이상 아동 비율에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시·군·구 특수보육사업예산은 보육아동 중 셋째아 비율에 유의하게 작용하고, 보육정원율과 같은 보육 관련 변수와 가구주의 중학 이하 학력비율 기타종교 비율 등은 보육아동 중 셋째아 및 둘째아 이상 아동 비율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가구주의 대학원 이상 비율이 유의도 0.1 수준에서 정적으로, 불교 비율은 0.05 수준에서 부적으로 셋째아 이상 비율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셋째아 보육료 추가 지원을 하는 지역의 보육아동 중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아동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으나 전체적 기관 이용률이나 이용률 증가에까지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기관 이용률이나 이용 증가율에는 서비스 공급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수요자보다는 공급자가 먼저 반응함을 나타낸다.

<표 IV-3-6>은 앞의 <표 IV-3-5>와 동일한 분석으로, 다만 독립변수 중 정책변수로 2008년 대신에 2007년 시·군·구의 출생순위별 비용 지원 정책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군·구의 셋째아 보육료 추가지원이 시·군·구의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중 둘째아 이상 비율과 셋째아 이상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둘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이나 출산장려금이나 수당 등 현금 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2007년 정책변수나 2008년 정책변수를 사용한 분석 모두에서 셋째아 보육료 추가지원이 시·군·구의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중 둘째아 이상 비율과 셋째아 이상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특수보육사업예산은 보육아동 중 셋째아 이상 비율에 유의하게 작용하고, 보육정원율과 같은 보육 관련 변수와 가구주의 중학 이하 학력비율 기타종교 비율 등은 보육아동 중 셋째아 및 둘째아 이상 아동 비율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6> 보육시설 이용아 중 둘째 및 셋째아 이상 비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 분	보육 둘째아 이상 비율			보육 셋째아 이상 비율		
	계수(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39.051***	4.551		4.541 [#]	2.745	
07년 첫째아 이상 수당(지원=1)	-0.991	0.804	-0.090	-0.716	0.485	-0.087
07년 둘째아 이상 수당(지원=1)	0.992	0.852	0.108	0.633	0.514	0.087
07년 셋째아 이상 수당(지원=1)	-1.098	0.727	-0.108	-0.499	0.439	-0.065
07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004	0.705	-	-0.635	0.425	-0.072
07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1.925**	0.683	0.198	1.404***	0.412	0.191
특수보육사업예산(아동1인당/만원)	0.001	0.030	0.002	0.056**	0.018	0.046
보육정원율	0.071***	0.020	0.238	0.033**	0.012	0.127
도시화 정도(도시=1)	0.900	0.880	0.091	-0.224	0.531	-0.080
재정자주도(%)	-0.048	0.030	-0.095	-0.020	0.018	-0.058
가구주의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	0.137***	0.036	0.549	0.115***	0.022	0.610
가구주의 대학 졸업 이상 비율	0.208	0.133	0.131	0.142	0.080	0.119
가구주의 불교 비율	-0.067	0.056	-0.145	-0.064	0.034	-0.185
가구주의 기독교 및 가톨릭 비율	-0.114	0.070	-0.216	-0.039	0.042	-0.098
가구주의 기타 종교 비율	0.730**	0.278	0.171	0.460**	0.167	0.148
20~40세 여성취업률	0.025	0.043	0.040	0.039	0.026	0.082
유사 R ²	0.40			0.62		
F	13.4**			26.0**		
(수)	(232)			(232)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10$, **는 $p < 0.01$, ***는 $p < 0.001$ 을 의미함.

2) 시·군·구 양육비용지원 정책이 여성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IV-3-7>에서는 시·군·구의 양육비용지원과 여성 취업률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양육비용 지원의 기관이용 효과와 마찬가지로 모의 취업도 효과도 시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출생순위별 보육료 및 현금 지원 및 여성취업률은 모두 2008년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IV-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수로 포함된 현금이나 보육료 추가 지원 등 양육비용 지원 변수는 종속변수 여성취업률에 유의한 관계성을 나타내지 않아서 시·군·구의 양육비용지원은 여성 취업률의 결정요인이 되지 못함을 나타내었다.

시·군·구의 특수보육사업예산이나 보육정원율도 여성취업률과 상관성이 없으며,

통제변수로 포함한 가구주의 학력은 중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이 정적으로, 가구주의 불교와 기독교와 가톨릭 비율은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표 IV-3-7〉 시·군·구 양육비용지원 정책이 여성취업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 분	모형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47.443***	7.261	
08년 첫째아 이상 수당(지원=1)	1.552	1.306	0.088
08년 둘째아 이상 수당(지원=1)	-2.208	1.355	-0.143
08년 셋째아 이상 수당(지원=1)	-1.377	1.155	-0.085
08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1.379	1.123	-0.074
08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114	1.089	0.007
특수보육사업예산(아동1인당/만원)	-0.031	0.048	-0.037
보육정원율	0.102	0.067	0.081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0.009	0.048	-0.011
도시화 정도(동=1)	1.756	1.410	0.110
재정자주도	-0.041	0.049	-0.050
가구주의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	0.356***	0.053	0.888
가구주의 대학원 이상 비율	0.966***	0.201	0.382
가구주의 불교 비율	-0.235**	0.089	-0.319
가구주의 기독교 및 가톨릭 비율	-0.231**	0.111	-0.273
가구주의 기타 종교 비율	-0.130	0.445	-0.019
조정 R ²		0.401	
F		11.7**	
(수)		(23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는 $p < .001$ 을 의미함.

3) 시·군·구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시·군·구 사업으로 실시하는 양육비용지원이 시·군·구 출산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양육비용지원이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이용이나 모의 취업과 다르게 출산결정이나 임신 기간을 요하므로 투입 요인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2008년도 시·군·구 출산을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출생순위별 보육료 및 현금 지원 등 종속변수로는 2006년 또는 2007년도 통계를 사용하였다. 그 이외에 포함된 변수들은 앞의 분석과 동일하다.

가) 전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를 보면 시·군·구의 2007년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나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이 통계적 유의도 0.1 수준에서 시·군·구 출산수준과 관계가 있는 곳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06년도 양육비용은 2008년 출산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V-3-8 참조).

〈표 IV-3-8〉 시·군·구 출산수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 분	모형1			모형2		
	계수(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2.714 ^{***}	0.240		2.109 ^{**}	0.236	
06년 첫째아 이상 수당(지원=1)	-0.008	0.047	-0.015			
06년 둘째아 이상 수당(지원=1)	0.061	0.046	0.125			
06년 셋째아 이상 수당(지원=1)	0.042	0.039	0.084			
06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023	0.037	-0.039			
06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061	0.039	-0.124			
07년 첫째아 이상 수당(지원=1)				0.052	0.039	0.095
07년 둘째아 이상 수당(지원=1)				0.079 [#]	0.041	0.165
07년 셋째아 이상 수당(지원=1)				0.033	0.034	0.066
07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009	0.033	0.016
07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0.020	0.032	-0.041
특수보육사업예산(아동 1인당/만원)	-0.001	0.001	-0.003	-0.001	0.001	-0.002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율	-0.011 ^{***}	0.002	-0.286	-0.012 ^{***}	0.002	-0.309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0.004 [*]	0.001	-0.155	-0.003 [*]	0.001	-0.111
도시화 정도(동=1)	-0.118 [*]	0.043	-0.239	-0.137 ^{***}	0.042	-0.278
재정자주도	0.003 [*]	0.001	0.123	0.002 [#]	0.001	0.097
가구주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	0.003 [#]	0.002	0.236	0.002	0.002	0.181
가구주 대학원 이상 비율	-0.002	0.006	-0.023	-	0.006	-0.003
가구주 불교 비율	-0.009 ^{**}	0.003	-0.336	-0.010 ^{***}	0.003	-0.457
가구주 기독교 및 가톨릭 비율	-0.010 ^{**}	0.004	-0.365	-0.009 ^{**}	0.003	-0.355
가구주 기타 종교 비율	0.006	0.013	0.028	0.009	0.013	0.042
20~40세 여성취업률	-0.007 ^{**}	0.002	-0.227	-0.006 ^{**}	0.002	-0.192
조정 R ²		0.441			0.456	
F		12.4 ^{**}			13.1 ^{**}	
(수)		(232)			(232)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10$, *는 $p < 0.05$, **는 $p < 0.01$, ***는 $p < 0.001$ 을 의미함.

이외 통제변수 중 보육정책 관련 변수로 특수보육예산은 지역 출산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아니며,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율이나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은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구나 시보다는 읍면, 재정자주도가 높은 시·군·구, 가구주의 중학 이하 학력 비율이 높은 지역, 불교나 기독교 및 가톨릭 비율이 낮은 지역, 여성취업률이 낮은 지역에서 출산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출생아 출생순위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IV-3-9>는 시·군·구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 비율과 셋째아 이상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로 출생순위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3-9> 시·군·구 출생아 중 둘째 및 셋째아 이상 비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 분	둘째아 이상 비율			셋째아 이상 비율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46.929	4.644		8.227 [#]	2.868	
07년 첫째아 이상 수당(지원=1)	-0.134	0.766	-0.013	-0.073	0.473	-0.008
07년 둘째아 이상 수당(지원=1)	1.861*	0.797	0.197	0.571	0.492	0.071
07년 셋째아 이상 수당(지원=1)	0.864	0.677	0.087	0.381	0.418	0.045
07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1.039	0.659	0.091	0.433	0.407	0.045
07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1)	-1.233*	0.637	-0.130	-0.080	0.398	-0.010
특수보육사업예산(아동1인당/만원)	-0.035	0.028	-0.071	0.021	0.017	0.049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율	-0.149***	0.040	-0.195	-0.041 [#]	0.024	-0.033
보육교육기관이용이용률	0.146***	0.028	0.25	0.120**	0.017	0.285
도시화 정도(동=1)	-0.651	0.827	-0.067	-1.049*	0.511	-0.127
재정자주도	-0.037	0.029	-0.075	-0.029	0.018	-0.070
가구주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	0.107**	0.034	0.437	0.131***	0.021	0.630
가구주 대학원 이상 비율	0.237 [#]	0.124	0.153	0.195*	0.076	0.149
가구주 불교 비율	-0.167**	0.053	-0.371	-0.187***	0.032	-0.489
가구주 기독교 및 가톨릭 비율	-0.057	0.066	-0.111	-0.103*	0.041	-0.235
가구주 기타 종교 비율	-0.275	0.260	-0.066	-0.224	0.161	-0.063
20~40세 여성취업률	-0.053	0.040	-0.087	0.006	0.027	0.012
조정 R ²		0.461			0.715	
F		13.4 ^{**}			37.2 ^{**}	
(수)		(232)			(232)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10$, *는 $p < 0.05$, **는 $p < 0.01$, ***는 $p < 0.001$ 을 의미함.

둘째 이상아에게 출산장려금이나 수당을 지원하는 시·군·구에서 출생아 중 둘째 이상아 비율이 그렇지 않은 시·군·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 유의도는 0.05 이하이다. 그러나 출생순위별 차등정책이 셋째이상아 출생아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육비용 지원 이외 국공립보육시설 정원비율은 비율이 낮은 시·군·구에서 출생아 중 둘째 및 셋째 이상아 비율이 높으며,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서 둘째 및 셋째 이상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일관성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이외 읍면에서 셋째아 이상 비율이 높고 가구주의 중학이하 학력 비율과 대학원이상 학력 비율이 높은 지역, 불교나 기독교 및 가톨릭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아 및 셋째아 이상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요약

이상의 시·군·구를 단위로 지방정부의 수당 등 현금이나 보육료 추가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IV-3-10 참조).

〈표 IV-3-10〉 지방정부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 요약

구분	기관이용			모의 취업률	출산		
	기관 이용률	보육아동 중 둘째이상 비율	보육아동 중 셋째이상 비율		출산율	출생아 중 둘째이상 비율	출생아 중 셋째이상 비율
첫째아 이상 수당	- -						
둘째아 이상 수당	+				#	+	
셋째아 이상 수당							
둘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 지원		++	+++			-	

주: +는 정적 방향, -는 부적 방향을 나타내며, 하나는 유의도 0.05 수준, 둘은 유의도 0.01 수준을 의미함. #는 $p < 0.10$ 을 의미함.

첫째, 출생순위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추가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시·군·구의 보육아동 중 둘째아 이상 아동의 비율이 높아져 둘째아 이상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및 이용률 증가와 보육료 추가 지원은 별 관계가 없으며, 현금 지원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앙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에 비하여 지방정부의 보육료

추가 지원정책이 이용 확충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하겠으나, 보육정원 증가율은 보육·유아교육기관 이용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의 비용 지원정책에 대하여 공급자가 먼저 반응하고 이것이 다시 수요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시·군·구 양육비용 지원정책은 2007년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이나 수당 지원이 2008년 출산수준과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군·구 출산수준은 보육·교육기관이용률이나 여성 취업률은 모두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가통계분석과 같은 맥락이다.

셋째, 시·군·구의 여성취업률은 해당 지방정부의 양육비용 지원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보육·교육기관이용률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출산 수준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여성취업률이 높은 지역은 출산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4. 정부 자녀양육비용 지원정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및 시·군·구 단위 분석을 통하여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이 기관서비스 이용, 여성의 취업 및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난 14년간 중앙정부의 보육예산확대는 보육서비스 이용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는 다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수준은 계속 감소하여, 이러한 정책이 직접 또는 여성의 취업을 통한 간접적으로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사업 이외에 주로 출생순위별로 차등 적용한 현금이나 보육료 추가지원 등 양육비용 지원 정책은 보육서비스 이용이나 출산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의 일관성은 다소 부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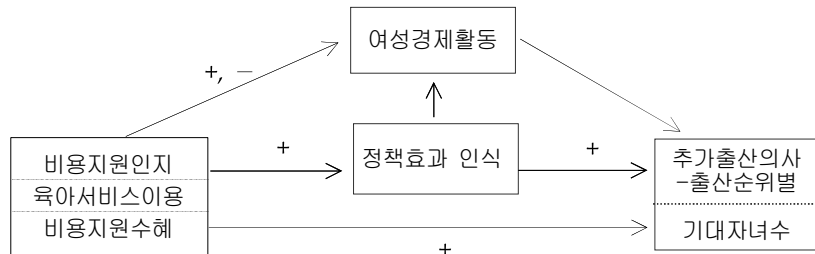
제4절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관련 변수들이 부모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인식, 모의 취업과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정책변수 이외에 개인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구 및 개인 특성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 개인단위 분석의 개요

개인단위 분석은 본 연구를 위하여 생산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에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모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 중 배우자가 있는 1,286명의 아동 가구 자료를 분석하여 가구 단위에서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포함한 양육비용 지원관련 정책이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정책에 대한 인식, 모의 취업과 추가출산 및 기대출산자녀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제1장 연구방법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분석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인지와 수혜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육아지원서비스의 이용과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모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인지, 수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모의 취업이 추가출산의사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모형은 [그림 IV-4-1]과 같다.



[그림 IV-4-1] 양육비 지원정책이 모의 취업과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모형

나. 관련변수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들은 분석단계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 모의 취업, 추가출산의사 및 기대자녀수이다. 독립변수는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인지 및 수혜 관련 변수 이외에 통제변수로 개인의 제 특성별 변수가 포함되었다. 모형에 의하여 분석단계별로 앞의 종속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기도 하였다. 변수들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종속변수

조사 자료 중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육아지원기관 이용,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한 인식, 모의 취업 및 추가출산의사 및 기대자녀수이다. 육아지원기관 이용, 모의 취업 및 추가출산의사는 더미변수이고 양육비용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의 서열변수이며, 기대자녀수 변수는 연속변수이다. 이들 변수의 평균은 <표 IV-4-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V-4-1> 주요 종속변수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육아지원기관 이용여부(1=이용)	0.63	0.48	0	1	(1,286)
보육시설 이용여부	0.46	0.50	0	1	(1,286)
유치원 이용여부	0.18	0.39	0	1	(1,286)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 인식	3.13	1.21	1	5	(1,259)
모취업여부(1=취업모)	0.30	0.46	0	1	(1,285)
추가출산의사(1=출산의사있음)	0.25	0.43	0	1	(1,285)
기대자녀수	2.29	0.75	1	6	(1,285)

육아지원기관 이용여부는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1로,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정의 약 63%가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지원기관 이용은 다시 유치원 이용과 보육시설 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보육시설 이용 가정은 전체의 약 46%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은 약 18%로 나타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1=전혀 도움이 안될 것임, 5=매우 도움이 될 것임으로 설계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27명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평균은 3.13점으로, 3점인 '보통'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취업모는 전체 가정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출산의사가 있다고 답한 가정은 전체의 25%였다. 현재 자녀수에 출산계획이 있는 자녀수를 더한 기대자녀수는 2.29명으로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까지 분포하고 있다.

2) 정책변수

육아지원 정책은 크게 양육비용 지원정책과 기타 육아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육아지원 정책과 관련된 변수는 두 가지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양육비용 지원정책은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수혜경험 및 현재 수혜여부를 제시하였으며, 기타 육아지원 정책은 수혜경험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외에 본 보고서의 분석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양육비용 지원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함께 기술하였다.

가) 양육비용 지원정책

(1) 양육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양육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중앙정부 정책인 보육료 및 교육비 차등 지원, 만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 두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과 지방정부의 정책인 셋째아 보육료 지원, 월 양육수당 현금지원, 출산축하금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각각 1=모름, 2=대략 알고 있음, 3=잘 알고 있음의 3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항목별로는 보육료 및 교육비 차등 지원과 출산축하금에 대한 인지도가 각각 2.25점, 2.16점으로 비교적 높고, 월 양육수당 현금지원과 만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1.73점, 1.7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항목 응답 점수의 평균인 전체 인지도는 1.96으로 '대략 알고 있음'에 가깝다(표 IV-4-2 참조).

〈표 IV-4-2〉 양육비용 지원정책 인지 변수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	2.25	0.75	1	3	(1,286)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1.78	0.81	1	3	(1,286)
두자녀 보육료·교육비 감면	1.85	0.79	1	3	(1,286)
셋째아 보육료 지원(지방정부)	1.97	0.76	1	3	(1,286)
양육수당 지원(지방정부)	1.73	0.82	1	3	(1,286)
출산축하금(지방정부)	2.16	0.79	1	3	(1,286)
전체	1.96	0.52	1	3	(1,286)

주: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2)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경험과 현재 수혜 여부

양육비 지원정책의 수혜는 크게 수혜경험과 현재 수혜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수혜경험은 6가지 양육비 지원에 대해 각각 현재 또는 과거에 수혜경험 있음은 1, 수혜 경험 없음, 비해당은 0으로 부호화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수혜경험의 평균은 수혜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수혜경험이 가장 많은 항목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으로 응답자의 약 36%가 수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율이 낮은 것은 셋째아 보육료 지원으로 수혜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6가지 양육비 지원 항목의 응답 평균을 산출하였다. 즉, 1은 6가지 지원 모두에 대해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이고, 0은 수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6가지 항목 가운데 수혜경험이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81명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한편 이러한 정책들 중에서 일회성 급여인 출산축하금을 제외한 다섯 가지 정책의 현재 수혜여부를 더미변수로 별도로 부호화하였다. 이 중 보육료 및 교육비 수혜 비율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을 수혜 중이라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이는 만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이 자녀당 1년 동안만 주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5가지 지원정책의 평균 수혜점수는 0.2점 간격의 0~1점 연속 척도에서 0.11로 나타났는데 현재 5가지 정책 가운데 한 가지도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0점이 55.5%였으며, 한 가지 정책을 수혜 중인 가정이 약 35.5%를 차지했다. 최대값은 0.8로 한 가정에서 최대 4가지 정책을 수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경험 및 현재 수혜여부

구분	수혜경험				현재 수혜여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	0.36	0.48	0	1	0.30	0.46	0	1	(1,286)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0.10	0.30	0	1	0.03	0.16	0	1	(1,286)
두자녀 보육료·교육비 감면	0.12	0.33	0	1	0.07	0.26	0	1	(1,286)
셋째아 보육료 지원(지방정부)	0.05	0.23	0	1	0.05	0.21	0	1	(1,286)
양육수당 지원(지방정부)	0.13	0.13	0	1	0.11	0.31	0	1	(1,286)
출산축하금(지방정부)	0.27	0.44	0	1					(1,286)
전체	0.17	0.18	0	1	0.11	0.14	0	0.8	(1,286)

주: 1=경험있음, 0=경험 없음을 의미함.

참고로 수혜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⁸⁹⁾ 전체 평균은 3.11점으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만5세아 무상 보육 및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두 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이고, 양육수당 현금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하였다(표 IV

89) 조사에서 만족도는 양육비용 지원정책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다른 분석에 독립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44 참조).

〈표 IV-4-4〉 양육비용 지원정책 수혜자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	4.2	20.9	36.9	31.7	6.3	100.0(474)	3.15	0.95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1.5	9.2	22.1	56.5	10.7	100.0(131)	3.63	0.84
두자녀 보육료·교육비 감면	1.3	11.4	30.4	46.1	10.8	100.0(158)	3.54	0.88
셋째아 보육료 지원(지방정부)	4.3	27.5	31.9	30.5	5.8	100.0(69)	3.06	1.00
양육수당 지원(지방정부)	4.2	29.9	41.9	21.6	2.4	100.0(167)	2.89	0.87
출산축하금(지방정부)	4.1	23.5	37.3	31.3	3.8	100.0(345)	3.06	0.93
전체						(780)	3.11	0.84

나) 기타 육아지원 지원정책

보육료 추가 지원이나 현금 지원 이외의 기타 육아지원 정책의 수혜경험과 현재 수혜여부를 분석하였다. 수혜경험은 과거와 현재의 수혜경험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각 항목에 대한 수혜경험의 평균은 수혜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IV-4-5〉에 의하면 수혜경험이 가장 많은 항목은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63%가 수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영양관리, 산모도우미,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적 수혜경험을 나타내는 변수는 0.2점 간격의 0~0.8점 연속변수로 네 가지를 모두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55.9%를 차지했으며, 한 가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7.9%이었다.

〈표 IV-4-5〉 기타 육아지원정책의 수혜경험 및 현재 수혜여부

구분	수혜경험				수혜여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0.19	0.40	0	1	0.15	0.35	0	1	(1,286)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0.01	0.09	0	1	-	-	-	-	(1,286)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0.12	0.32	0	1	0.03	0.17	0	1	(1,286)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0.63	0.48	0	1	0.33	0.47	0	1	(1,286)
전체	0.11	0.14	0	0.8	0.13	0.16	0	0.75	(1,286)

주: 1=경험 있음, 0=경험 없음을 의미함.

한편, 기타 육아지원 정책의 현재 수혜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지원정책은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33%가 현재 수혜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이 약 15%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수혜 중이라는 응답은 3% 정도로 소수였으며, 24시간 보육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이라는 응답이 없었다.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변수는 0.25점 간격의 0~0.75점 연속변수로 한 가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7.9%였다. 최대값 0.75는 가정에서 육아지원정책을 최대 3가지까지 현재 지원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표 IV-4-6>은 수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3.35점으로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평균 만족도인 3.11보다 약간 높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으로 3.57점이었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은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으로 만족도가 보통이었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보통 이상이었다.

<표 IV-4-6> 기타 육아지원 정책 수혜자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2.6	9.8	26.3	50.4	10.9	100.0(266)	3.57	0.91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9.1	9.1	54.5	27.3	-	100.0(11)	3.00	0.89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4.0	8.1	32.2	48.3	7.4	100.0(149)	3.47	0.90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3.5	14.6	34.2	42.9	4.8	100.0(826)	3.31	0.90
전체						100.0(947)	3.35	0.85

주: 5점 척도로 측정함(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가구 및 개인 변수

본 분석에는 독립변수로 정책변수 이외에 가구 및 개인 특성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인구학적 가구특성으로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과 결혼기간은 연속변수로, 3세대이상 가구 여부와 다문화가정 여부가 더미변수로 포함되었고, 가정경제를 나타내는 변수로 월 평균 가구소득이 포함되었다. 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모의 연령과 결혼기간이 연속변수로, 모의 학력변수를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더미변수화하여 포함하였다. 더미변수의 평균은 해당 범주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외에 부의 연령과 부모의 종교변수는 검토하였으나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부와 모의 연령과 학력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로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어 모의 연령과 학력만을 분석에 포함시켰고, 부모의 종교는 산출변수 및 산출결과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표 IV-4-7 참조).

〈표 IV-4-7〉 가구 및 개인 변수의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분석에 포함된 변수					
자녀수(명)	1.99	0.80	1	4	(1,286)
막내자녀 연령(세)	1.60	1.40	0	4	(1,286)
결혼기간(년)	7.66	3.92	1	26	(1,286)
3세대가족여부(3세대가족=1)	0.26	0.44	0	1	(1,286)
다문화가정 여부(다문화 가정=1)	0.04	0.20	0	1	(1,286)
월 가구소득(만원)	27.98	14.83	0	150	(1,286)
모 연령(세)	34.15	4.47	22	49	(1,286)
모 학력 고졸이하(고졸이하=1)	0.40	0.49	0	1	(1,286)
모 학력 대졸이상(대졸이상=1)	0.46	0.50	0	1	(1,286)
분석에서 제외된 변수					
부 연령(세)	37.12	7.79	21	60	(1,286)
부 학력 고졸이하(고졸이하=1)	0.33	0.47	0	1	(1,286)
부 학력 대졸이상(대졸이상=1)	0.55	0.50	0	1	(1,286)
부 종교 불교(불교=1)	0.17	0.37	0	1	(1,286)
부 종교 기독교·가톨릭(기독교·가톨릭=1)	0.36	0.48	0	1	(1,286)
모 종교 불교(불교=1)	0.17	0.37	0	1	(1,286)
모 종교 기독교·가톨릭(기독교·가톨릭=1)	0.36	0.48	0	1	(1,286)

주: 월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25.00임.

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및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혜 등 정책관련 변수들이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모의 취업, 추가출산의사, 기대자녀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 특성에 따라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서 변수의 정상분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변수별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만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인지와 수혜 등 정책 관련 변수들은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보다는 기관 이용의 결과로 여겨져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대상 여부는 분명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결과,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육료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비율은 7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IV-4-8 참조).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여부는 분명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는 양육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양육비용 지원의 주요 기준인 소득과 출생순위를 보육료 지원대상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하여 해석하기로 한다.

〈표 IV-4-8〉 양육비용 지원이 기관이용에 미친 영향

구분	영향을 미침			모름	계(수)
	영향을 미침	영향 없음	모름		
보육료 지원이 기관이용에 미친 영향	78.9	20.6	0.5	100.0(601)	
양육수당 지원이 기관이용에 미친 영향	32.7	63.5	3.8	100.0(156)	

단위: %(명)

모형1은 육아지원기관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이며 모형2와 모형3은 각각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유치원 이용여부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것이다(표 IV-4-9 참조).

분석결과, 모형1에서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기간과 막내자녀의 연령, 자녀수와 월 가구소득, 모의 취업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 학력 고졸이하는 제한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중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의 대리변수인 자녀수와 월평균 소득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즉 첫째보다 둘째, 셋째인 경우, 그리고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즉,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육아지원기관 이용을 증가시킨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시 모형2와 모형3으로 종속변수를 보육시설 이용과 유치원 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녀수는 영향력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반면, 가구소득의 영

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이 낮은 가정이 보육시설 이용률은 높은 반면, 유치원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 이용하는 경우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치원 이용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반면, 교육비 지원은 유치원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모의 취업도 보육시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치원 이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취업모의 자녀는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과 가구소득이나 모 취업과 관계 차이는 2004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서문희, 2007)와도 동일하다.

〈표 IV-4-9〉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모형1(전체)		모형2(보육시설)		모형3(유치원)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0.509	0.651	0.493	0.575	-4.399**	0.792
자녀수	0.961**	0.128	0.548**	0.108	0.483	0.140
막내자녀 연령	0.825**	0.067	0.320**	0.052	0.529**	0.068
결혼기간	-0.108**	0.031	-0.044	0.027	-0.088**	0.037
3세대가족여부	-0.141	0.165	-0.112	0.147	-0.068	0.201
다문화가정여부	0.003	0.380	0.378	0.339	-0.578	0.574
월 가구소득	-0.015**	0.005	-0.017**	0.005	0.011#	0.006
모 취업여부	0.641**	0.169	0.448**	0.144	-0.043	0.184
모 연령	-0.019	0.021	-0.041*	0.019	0.043#	0.025
모 학력 고졸이하	-0.378#	0.217	-0.113	0.190	-0.470#	0.253
모 학력 대졸이상	-0.221	0.213	-0.199	0.187	-0.067	0.239
-2Log Likelihood	1257.105		1516.342		970.392	
X ²	274.225**		91.823**		112.797**	
유사 R ²	0.210		0.076		0.092	
분류표에 의한 예측정확도	73.6%		62.6%		82.8%	
(수)	(1,163)		(1,163)		(1,163)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양육부담 완화 효과 인식에 대한 분석

다음으로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전반적으로 실제 부모들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조사한 양육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표 IV-4-10〉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양육부담 완화 효과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B	표준 오차	베타	B	표준 오차	베타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958**	0.345		2.782**	0.369		2.611**	0.378	
자녀수	0.036	0.063	0.022	-0.106	0.071	-0.066	-0.023	0.074	-0.014
막내자녀 연령	0.005	0.030	0.005	-0.007	0.030	-0.007	-0.037	0.031	-0.041
결혼기간	-0.048**	0.016	-0.146	-0.041*	0.016	-0.127	-0.041*	0.016	-0.126
3세대 가족여부	0.105	0.088	0.035	0.127	0.087	0.043	0.165**	0.087	0.056
다문화가정 여부	0.136	0.199	0.020	0.157	0.198	0.023	0.246	0.198	0.037
월 가구 소득	-0.013**	0.003	-0.154	-0.001**	-	-0.121	-0.008**	0.003	-0.095
모취업여부	0.208**	0.085	0.074	0.200**	0.085	0.071	0.178*	0.084	0.063
모 연령	0.024*	0.011	0.085	0.027*	0.011	0.095	0.030**	0.011	0.104
모 학력 고졸이하	-0.044	0.114	-0.017	-0.063	0.113	-0.024	-0.059	0.113	-0.023
모 학력 대졸이상	-0.106	0.112	-0.042	-0.098	0.111	-0.039	-0.096	0.111	-0.038
양육비용 지원정책 인지				0.041	0.079	0.017			
양육비용지원 수혜 경험수준				0.973**	0.257	0.139			
보육 교육비 차등지원 인지							-0.096	0.063	-0.056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 인지							0.041	0.058	0.026
두자녀 보육 교육비 감면 인지							0.052	0.061	0.032
셋째아 보육료 지원 인지							0.034	0.057	0.020
양육수당 지원 인지							0.000	0.057	-
출산축하금 인지							-0.006	0.057	-0.004
보육 교육비 차등지원 경험							0.319**	0.094	0.121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 경험							0.305**	0.140	0.072
두자녀 보육 교육비 감면 경험							0.141	0.132	0.036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경험							0.184	0.178	0.032
양육수당 지원 경험							-0.370**	0.140	-0.098
출산축하금 경험							0.056	0.098	0.020
조정된 R ²		0.033			0.046			0.063	
F		4.992**			5.669**			4.539**	
수		1,162			1,162			1,162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분석모형1은 통제변수인 가구와 개인특성 변수들로만 구성하였으며, 모형2는 양육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인지와 수혜 경험 수준을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하였다. 모형3은 여섯 가지 양육비용 지원 정책 각각에 대한 인지 및 수혜 여부를 더

미변수로 투입하였다.

개인특성 변수만 투입한 모형1의 설명력은 3.3%였으며, 모의 연령과 결혼기간, 모의 취업여부, 월평균 소득이 양육비용 지원정책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이 높고 취업모인 경우, 그리고 결혼기간이 짧고 소득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양육부담 완화 효과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양육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경험을 하나의 포괄적 변수로 만들어서 투입한 모형2에서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경험 수준이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수혜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3에서는 여섯 가지 양육비용 지원 정책 각각에 대한 인지 및 수혜 여부가 포함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여러 양육비용 지원정책들 가운데 특히 보육료 및 교육비 차등지원과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수혜 경험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양육수당 현금지원은 오히려 부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앞서 양육수당 현금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난 것과도 관련된다. 즉,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오히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모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산출변수인 육아지원기관의 이용과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양육부담완화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정책의 주요 결과인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개인적 특성과 정책 관련 변수들이 모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 취업은 취업 1, 미취업 0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였으며, 시간제, 종일제, 임시직, 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으로 분류하였다. 모형1은 개인적 특성변수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여부를 투입한 것이며, 모형2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이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과 모의 취업은 정적인 방향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IV-4-11>과 같다. 먼저 모형1에서 보육시설 이용은 앞에서 살펴본 분석(<표 IV-4-9> 참조)과 마찬가지로 모의 취업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유치원 이용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취업모가 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가 가능한 보육서비스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3세대 가족여부와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3세대가 함께 살 경우 조부모가 자녀양육 등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월평균 소득의 영향은 모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모의 취업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즉, 맞벌이를 함으로써 월 소득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설명력은 10%를 넘지 않는다.

한편 모형2에서 추가로 투입한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모의 취업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취업모가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수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미미하다. 모형1에서 유의한 변수들 대부분은 모형2에서 변함없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V-4-11〉 모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3.058**	0.661	-3.515**	0.691
자녀수	-0.152	0.125	-0.160	0.126
막내자녀 연령	0.061	0.062	0.067	0.063
결혼기간	-0.048	0.032	-0.045	0.032
3세대 가족여부	0.799**	0.157	0.777**	0.160
다문화가정 여부	0.213	0.372	0.232	0.375
월 가구소득	0.034**	0.005	0.035**	0.005
모 연령	0.036#	0.021	0.037#	0.021
모 학력 고졸이하	-0.308	0.217	-0.318	0.220
모 학력 대졸이상	0.126	0.206	0.121	0.207
보육시설 이용	0.534**	0.162	0.514**	0.166
유치원 이용	0.284	0.210	0.291	0.213
양육비지원정책 효과 인식			0.122*	0.059
-2Log Likelihood	1273.198		1243.013	
X ²	117.853**		122.238**	
유사 R ²	0.096		0.102	
분류표에 의한 예측정확도	73.8%		74.4%	
(수)	(1,163)		(1,141)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4) 추가출산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정책이 추가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종속변수는 추가출산의사와 기대자녀수이다. 추가출산의사는 더미변수이고 기대자녀수는 연속변수로, 종속변수

특성에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

먼저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양육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인식과 지원정책 내용에 대한 인지 및 수혜 관련 변수들이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은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모형1에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여부 변수가 포함되었고, 모형2에서는 모형1에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전반적 효과에 대한 인식과 지원정책에 대한 포괄적 인지 및 수혜 수준이 추가로 포함되었으며, 모형3에서는 지원정책에 대한 포괄적 인지 및 수혜 수준 대신에 지원 정책 각각에 대한 인지와 수혜경험, 비용 이외 지원이 포함되었고, 모형4에서는 모형3에서 양육비용 지원정책 각각의 수혜 경험 변수를 제거하고 각 지원정책의 현재 수혜 여부를 포함하여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4에서는 일회성 지원인 출산축하금과 현재 이용 중인 응답자가 없는 24시간 보육서비스는 수혜 중인 지원 변수는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에서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은 추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 및 정책에 대한 포괄적 인지와 수혜 경험 수준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이 두 가지 변수는 추가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시행 중인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 추가 출산의사가 높고, 지원정책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추가 출산의사가 높았다. 그러나 지원정책의 내용에 대한 인지는 추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각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와 수혜 경험이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비용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 중에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이 추가 출산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지는 유의도 0.1 수준에서 추가 출산의사와 부적 관계를 보여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각 지원 정책에 대한 수혜경험을 현재 수혜 여부로 대체한 모형 4에서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이외에 양육수당 수혜가 추가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2〉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6.088**	0.816	5.979*	0.910	6.700**	0.957	6.445**	0.947
막내자녀 연령	-0.119	0.081	-0.127	0.082	-0.143#	0.087	-0.149#	0.086
자녀수	-1.763**	0.182	-1.973**	0.206	-2.094**	0.215	-2.009**	0.205
결혼기간	-0.019	0.044	-0.007	0.045	-0.015	0.046	-0.024	0.046
3세대 가족여부	0.259	0.191	0.241	0.196	0.212	0.202	0.203	0.202
다문화가정 여부	-0.249	0.403	-0.165	0.413	-0.212	0.438	-0.255	0.444
월 가구소득	-0.003	0.007	0.004	0.007	0.003	0.007	0.002	0.007
모 취업여부	0.359#	0.192	0.280	0.197	0.370#	0.214	0.332	0.205
모의 만 연령	-0.115	0.025	-0.118	0.026	-0.125**	0.026	-0.122**	0.026
모 학력 고졸이하	0.082	0.258	0.013	0.264	-0.087	0.271	-0.046	0.269
모 학력 대졸이상	-0.060	0.251	-0.067	0.254	-0.133	0.260	-0.103	0.258
보육시설 이용	-0.102	0.196	-0.197	0.208	-0.072	0.236	-0.058	0.241
유치원 이용	-0.177	0.282	-0.199	0.290	-0.107	0.308	-0.128	0.308
양육비용지원정책 효과 인식 정도			0.151*	0.073	0.168*	0.074	0.163*	0.074
양육비용지원정책 인지 정도			-0.178	0.181				
양육비용지원 수혜 경험 정도			1.598*	0.679				
보육 교육비 차등지원 인지					-0.250#	0.148	-0.247#	0.146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 인지					0.107	0.138	0.107	0.135
두자녀 보육 교육비 감면 인지					0.101	0.147	0.111	0.146
셋째아 보육료 지원 인지					-0.162	0.135	-0.176	0.133
양육수당 지원 인지					0.016	0.134	-0.020	0.133
출산축하금 인지					0.024	0.137	0.090	0.122
보육 교육비 차등지원 경험					0.255	0.246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 경험					0.175	0.380		
두자녀 보육 교육비 감면 경험					-0.024	0.348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경험					2.098**	0.565		
양육수당 지원 경험					0.641	0.423		
출산축하금 경험					0.280	0.242		
보육 교육비 차등지원 수혜중							0.247	0.248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 수혜중							0.804	0.536
두자녀 보육 교육비 감면 수혜중							-0.314	0.400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수혜중							2.118**	0.624
양육수당 지원 수혜중							0.979*	0.455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경험					-0.151	0.262	-0.149	0.292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					-0.332	0.898		
일·가정 양립지원 수혜 경험					-0.221	0.289	-0.252	0.474
산모·영유아건강관리 수혜 경험					-0.238	0.185	-0.189	0.188
-2Log Likelihood	922.650		891.033		874.168		875.548	
X ²	383.118**		384.457**		401.322**		399.942**	
유사 R ²	0.281		0.286		0.297		0.296	
분류표에 의한 예측정확도	83.0%		82.7%		82.9%		83.2%	
(수)	(1,162)		(1,140)		(1,140)		(1,14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하고, S.E.는 표준오차임.

따라서 여러 정책 가운데 특정 집단에만 제공되는 지원정책이나 현금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추가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사 R^2 로 추정되는 설명의 증가는 크지 않다.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지는 모형4에서도 여전히 통계적 유의도 0.1 수준에서 추가 출산의사와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이러한 양육비용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모일수록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통제변수들 중에는 자녀수가 4개의 모형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이미 출생한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의사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형3과 모형4에서 막내자녀의 연령은 추가 출산의사와 제한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여,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1과 모형3에서 유의도 수준은 낮지만 취업모일수록 추가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이 추가 출산의사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시·군·구 단위 분석결과와도 다른데, 이는 취업모 응답자는 일단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 둔 경우는 제외되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IV-4-13>과 <표 IV-4-14>는 각각 자녀수를 한자녀 가정과 두자녀 가정으로 구분하여 추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즉 한 자녀에서 두 자녀,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구성은 앞의 전체적 추가출산 의사 분석과 같으나, 비해당 변수들은 제거하였다. 자녀수가 동일한 집단들이므로 자녀수는 분석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 자녀 가정은 두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과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3, 4에서 각각의 수혜경험 및 현재 수혜여부를 제외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도 수혜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명에 불과해 모형 3, 4에서 제외하였다. 두 자녀 가정의 경우는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셋째 자녀 보육료 수혜 변수를 모형3, 4에서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한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표 IV-4-13>을 보면, 모형2에서 양육비용 지원 정책이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인식과 정책 수혜 정도가 둘째아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그리고 정책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는 가정일수록 추가로 둘째아를 출산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3〉 한자녀 가구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상수	3.608**	1.083	3.322**	1.245	3.999**	1.310	3.963**	1.295
막내자녀 연령	-0.102	0.141	-0.102	0.144	-0.142	0.151	-0.178	0.149
결혼기간	-0.003	0.073	0.019	0.077	0.023	0.081	0.006	0.080
3세대 가족여부	0.345	0.277	0.262	0.285	0.277	0.296	0.346	0.296
다문화가정 여부	-0.611	0.522	-0.648	0.552	-0.601	0.595	-0.716	0.596
월 가구 소득	-0.002	0.010	0.009	0.011	0.011	0.012	0.006	0.011
모 취업여부	0.120	0.283	0.035	0.296	0.084	0.333	0.014	0.310
모의 만 연령	-0.083*	0.035	-0.089*	0.037	-0.092*	0.038	-0.084*	0.037
모 학력 고졸이하	-0.208	0.410	-0.338	0.426	-0.532	0.442	-0.518	0.442
모 학력 대졸이상	0.033	0.389	0.001	0.400	-0.109	0.413	-0.051	0.412
보육시설 이용	-0.539	0.341	-0.667#	0.366	-0.765#	0.406	-0.851*	0.405
유치원 이용	-0.274	0.535	-0.498	0.562	-0.662	0.601	-0.666	0.584
양육지원정책 효과 인식 정도			0.225*	0.104	0.207#	0.106	0.198#	0.106
양육비용 지원정책 인지 정도			-0.359	0.252				
양육비용지원 수혜 경험 정도			3.088*	1.542				
보육료·교육비 차등지원 인지					-0.319	0.219	-0.353	0.215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 인지					0.150	0.209	0.152	0.209
두자녀 보육·교육비 감면 인지					0.222	0.224	0.194	0.222
셋째아 보육료 지원 인지					-0.154	0.211	-0.204	0.210
양육수당 지원 인지					-0.128	0.204	-0.157	0.201
출산축하금 인지					-0.143	0.205	0.004	0.185
보육료·교육비지원 경험					0.727#	0.417		
양육수당 지원 경험					0.070	0.925		
출산축하금 경험					0.780#	0.450		
보육료·교육비지원 수혜중							0.866*	0.420
양육수당 지원 수혜중							0.165	0.930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경험					0.245	0.484	0.301	0.519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					-0.428	1.501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수혜 경험					-0.474	0.416	-0.593	0.653
산모·영유아건강관리 수혜 경험					-0.326	0.271	-0.518#	0.286
-2Log Likelihood	408.068		389.461		380.868		382.372	
X ²	26.856**		34.948**		43.541*		42.037**	
유사 R ²	0.078		0.103		0.127		0.123	
분류표에 의한 예측정확도	66.0%		67.2%		68.8%		67.5%	
(수)	(329)		(320)		(320)		(320)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표 IV-4-14〉 두 자녀 가구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상수	3.263 [†]	1.306	2.536 [#]	1.528	3.510 [†]	1.635	3.003 [#]	1.583
막내자녀 연령	-0.057	0.130	-0.071	0.132	-0.092	0.143	-0.054	0.140
결혼기간	-0.042	0.077	-0.044	0.078	-0.068	0.083	-0.053	0.082
3세대 가족여부	0.290	0.327	0.290	0.331	0.148	0.346	0.186	0.343
다문화가정 여부	0.368	0.640	0.372	0.639	0.518	0.708	0.261	0.713
월 가구소득	0.017	0.012	0.021 [#]	0.012	0.019	0.013	0.018	0.013
모 취업여부	-0.009	0.334	-0.080	0.340	-0.185	0.364	-0.050	0.357
모 연령	-0.169 ^{**}	0.044	-0.160 ^{**}	0.045	-0.174 ^{**}	0.047	-0.170 ^{**}	0.046
모 학력 고졸이하	-0.096	0.378	-0.121	0.386	-0.097	0.394	-0.136	0.392
모 학력 대졸이상	-0.636	0.393	-0.651 [#]	0.394	-0.634	0.406	-0.610	0.403
보육시설 이용	0.808 [†]	0.340	0.741 [*]	0.358	1.007 [†]	0.401	0.996 [†]	0.401
유치원 이용	0.081	0.452	0.096	0.459	0.209	0.486	0.160	0.478
양육비지원정책 효과 인식 정도			0.152	0.130	0.151	0.134	0.151	0.132
양육비용지원정책 인지 정도			-0.119	0.321				
양육비용지원 수혜 경험 정도			0.859	0.978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인지					-0.117	0.265	-0.061	0.255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인지					0.116	0.236	0.113	0.224
두자녀 양육비용 감면 인지					-0.164	0.252	-0.077	0.243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인지					-0.183	0.213	-0.157	0.215
월 양육수당 현금지원 인지					0.041	0.216	0.046	0.213
출산축하금 인지					0.157	0.225	0.046	0.201
보육료·교육비 차등지원 경험					-0.175	0.375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 경험					0.718	0.514		
두자녀 보육·교육비 감면 경험					0.318	0.437		
양육수당 지원 경험					0.806	0.765		
출산축하금 수혜 경험					-0.413	0.380		
보육료·교육비 지원 수혜중							-0.362	0.374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 수혜중							1.036	0.641
두자녀 보육·교육비 감면 수혜중							0.255	0.481
양육수당 지원 수혜중							1.059	0.818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경험					-0.234	0.382	-0.142	0.415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					0.213	1.189		
일 가정양립지원정책 수혜 경험					0.243	0.477	-0.289	0.891
산모·영유아건강관리 수혜 경험					-0.254	0.324	0.044	0.301
-2Log Likelihood	350.252		345.975		337.183		338.637	
χ^2	50.128 ^{**}		51.634 ^{**}		60.426 ^{**}		58.973 ^{**}	
유사 R ²	0.091		0.096		0.111		0.109	
분류표에 의한 예측정확도	87.2%		87.3%		87.3%		87.5%	
(수)	(523)		(513)		(513)		(513)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모형3에서는 여러 가지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수혜경험 가운데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출산축하금 수혜경험이 유의도 0.1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모형4에서 현재 수혜 중인 정책 중에서는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 자녀 가정의 추가 출산의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타 정책 가운데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은 제한적인 부적 관계를 보여서, 이들 정책의 수혜자들이 오히려 추가 출산의사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특성 변수 중에서는 모의 연령과 보육시설 이용이 추가 출산의사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의사는 감소하며,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가정에서 추가 출산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동일한 모형을 두 자녀 가정에 적용한 <표 IV-4-14>를 보면, 한자녀 가정과는 다르게 정책 관련 변수들은 일체 두 자녀 가정의 추가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연령과 보육시설 이용만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한 자녀 가정과 달리, 두 자녀 가정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이 추가 출산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두 자녀의 경우는 보육시설 이용 효과를 인식하면서 일가정 양립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정책관련 변수와 가구 및 개인 특성 변수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구성은 앞서 추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모형과 동일하다.

<표 IV-4-15>에서 모형2를 보면 정책 변수들 중에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수혜 경험 정도가 기대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수를 통제하였으나 자녀가 많을수록 둘째자녀 혹은 셋째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모형3에서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수혜경험, 양육수당 현금지원, 출산축하금 수혜 경험이 기대자녀수와 유의미한 관계임을 나타냈다. 모형4에서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수혜 중, 양육수당 현금지원 수혜 중이 기대자녀수와 유의미한 관계임을 나타냈다. 모형4에서 출산축하금 수혜 중은 대상자 부재로 제외하였다.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의 수혜는 이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기대자녀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4-15〉 기대자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상수	1.660*	0.139	1.662*	0.155	1.772*	0.160	1.760*	0.159
막내자녀 연령	-0.017	0.013	-0.017	0.013	-0.016	0.014	-0.024#	0.014
자녀수	0.719*	0.026	0.688*	0.029	0.659*	0.031	0.672*	0.029
결혼기간	0.013#	0.006	0.014*	0.007	0.015*	0.007	0.015*	0.007
3세대 가족여부	0.047	0.035	0.049	0.036	0.048	0.036	0.047	0.036
다문화가정 여부	0.030	0.079	0.051	0.081	0.037	0.082	0.040	0.082
월 가구 소득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모 취업여부	0.070*	0.034	0.064#	0.035	0.077#	0.037	0.067#	0.036
모의 만 연령	-0.025*	0.004	-0.025*	0.005	-0.026*	0.005	-0.026*	0.005
모 학력 고졸이하	0.043	0.045	0.036	0.046	0.018	0.046	0.026	0.046
모 학력 대졸이하	0.030	0.045	0.032	0.045	0.016	0.045	0.022	0.045
보육시설 이용	-0.066#	0.034	-0.058#	0.036	-0.092#	0.039	-0.091#	0.041
유치원 이용	-0.053	0.045	-0.058	0.045	-0.053	0.047	-0.053	0.048
양육비지원정책 효과 인식 정도			0.009	0.013	0.012	0.013	0.011	0.013
양육비지원정책 인지 정도			-0.021	0.033				
양육비지원 수혜 경험 정도			0.276*	0.107				
보육료·교육비 차등지원 인지					-0.044#	0.026	-0.042	0.026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 인지					0.032	0.024	0.020	0.023
두자녀 보육·교육비 감면 인지					0.016	0.025	0.021	0.025
셋째아 보육료 지원 인지					-0.036*	0.023	-0.037	0.023
양육수당 지원 인지					0.009	0.024	0.005	0.023
출산축하금 인지					0.005	0.023	0.022	0.021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 경험					0.049	0.041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 경험					-0.039	0.058		
두자녀 보육·교육비 감면 경험					0.042	0.054		
셋째아 보육료 지원 경험					0.235*	0.073		
양육수당 지원 경험					0.097#	0.058		
출산축하금 수혜 경험					0.068#	0.040		
보육료·교육비 차등지원 수혜중							0.052	0.042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수혜중							0.021	0.102
두자녀 보육·교육비 감면 수혜중							0.009	0.063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수혜중							0.292*	0.079
양육수당 지원 수혜중							0.128*	0.061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경험					0.027	0.039	0.054	0.044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					-0.018	0.162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수혜 경험					-0.042	0.053	-0.022	0.091
산모 영유아건강관리 수혜 경험					-0.008	0.032	-0.050	0.033
조정된 R ²	.537		.538		.561		.561	
F	122.726*		96.959*		51.250*		54.894*	
(n)	(1,161)		(1,139)		(1,139)		(1,139)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또한 양육수당 현금지원과 출산축하금 역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관련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지원이 기대자녀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지와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가 오히려 기대자녀수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모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에 관심이 많은 부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를 적게 출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통제변수들 중에는 모의 연령과 결혼기간, 자녀수와 모의 취업여부가 4개 모형에 걸쳐 유의도 0.05 또는 0.1 수준에서 일관되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귀계수의 방향을 살펴보면, 모의 연령은 기대자녀수와 부적 관계를, 결혼기간과 자녀수, 모의 취업은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자녀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며, 결혼기간이 길고, 이미 출산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대자녀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모의 경우 기대자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취업모의 추가 출산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표 IV-4-12>의 분석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취업모가 추가 출산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기대자녀수도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보육시설 이용은 기대자녀수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책 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형2에서 모형4까지의 설명력은 모형1과 큰 차이가 없어, 정책 관련 변수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고 하겠다. 기대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 및 개인 변수는 세 모형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5) 요약

개인적 특성이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및 주요 산출결과인 모의 취업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표 IV-4-16 참조).

첫째, 먼저 양육비용 지원의 주요 기준인 자녀수와 월평균 소득을 양육비용 지원 대상 여부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이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본 결과, 자녀수는 정적, 가구소득은 부의 방향으로 보육시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같이 보육료 지원이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구분한 분석의 주요한 차이는 가구소득 변수로, 보육시설과 달리 유치원 이용에는 제한적이지만 월평균 소득이 정적 방향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유치원의 교육비 지원은 유치원 이용률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모의 취업은 보육시설 이용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취업모가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둘째,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인식에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 경험이 많을수록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수혜가 이러한 인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양육수당 현금지원은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 인식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의 취업은 보육시설 이용 및 양육비용 지원정책 효과 인식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다. 취업모일수록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다. 이는 정적관계로 양의 방향성을 갖는다. 또한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겠다. 반면, 유치원 이용은 모의 취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자녀 추가 출산의사에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수혜 경험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재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현금지원 수혜가 추가 출산의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한 자녀 가정의 추가 출산의사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 인식과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수혜, 출산축하금 수혜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정책변수는 추가 출산의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지는 추가 출산의사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이러한 지원 내용에 관심이 많은 부모일수록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 출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예상과 달리 취업모일수록 추가 출산의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기대자녀수에는 양육비용 지원의 수혜 경험 수준, 그 중에서도 특히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현금지원 수혜, 출산축하금 수혜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정책 대상이 대부분 다자녀 가구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지만, 정책적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형 3에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지와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는 추가 출산의사에서의와 같이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한편, 정책 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형2에서 모형4까지의 설명력은 모형1과 큰 차이가 없어, 정책 관련 변수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구 및 개인 변수들 중에는 모의 연령과 결혼기간, 자녀수가 기대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모의 취업여부는 유의도 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의사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대자녀수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혼기간이 길고, 자녀수가 많으면 이미 출산한 자녀수가 많기 때문에 기대자녀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모의 기대자녀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취업모의 추가 출산의사가 더 높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표 IV-4-16〉 정부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 요약

구분	자녀양육부담완화	모의취업	추가 출산 의사			기대자녀수
			전체	한자녀	두자녀	
보육·교육비 차등지원	++	na		+		
민5세아 무상교육·보육	+	na				
두자녀 보육·교육비 감면		na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na	++			++
양육수당 지원	- -	na	+			+
출산축하금		na		#		#
자녀양육부담완화 인식	na	+	+	#		

주: +는 정적 방향, -는 부적 방향을 나타내며, 하나는 유의도 0.05 수준, 둘은 유의도 0.01 수준을 의미하고, #는 유의도 0.1을, na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5. 요약 및 시사점

국가 및 지역 및 개인 단위로 구분하여 양육비용 지원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최근 14년간의 국가 단위의 통계자료를 보면, 그 동안 중앙정부의 보육예산은 크게 확대되었고, 보육·유아교육기관 이용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출산수준은 이들과는 달리 지속

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경향은 굳이 통계적 분석을 하지 않아도 정부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이 서비스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여성취업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출산수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통계분석에서도 이러한 기대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정부의 보육예산 증가는 보육·유아교육기관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예산 증가는 직접은 물론 여성취업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도 출산수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보육료나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나 이용률 증가라는 단일 정책으로 출산 수준을 올리는 어려움을 나타낸다.

둘째, 지방정부의 출생순위별 현금이나 보육료 추가지원정책은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이 둘째아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둘째자녀 이상 양육수당 및 출산정려금 지원정책은 시·군·구 출산 수준 및 출생아의 둘째아 이상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방정부가 고유사업으로 실시하는 출생순위별 보육료·유아교육비 추가 지원이나 현금 지원 정책이 나름대로 영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이용률은 출산 수준에 부적인 방향으로, 출생아의 둘째 및 셋째아 이상 비율에는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기관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집단간의 차이 규명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개인 차원에서 보면 소득수준 및 아동 출생순위별 양육비용 지원정책은 보육시설 이용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대신 결정 요인으로 소득수준과 아동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하겠다.

넷째, 양육비용 지원정책 중에서 차등보육료·교육비, 셋째아 지원, 현금지원이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보육료·교육비 차등지원은 직접적으로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이외에도 부모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효과 인식 제고라는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출산 의사에 작용한다. 특히 한 자녀 가정에는 차등지원과 출산축하금 수혜경험이 추가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 두 자녀 가정은 비용지원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육시설 이용이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그 동안 꾸준

히 확대해 온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가장 효과적 부모 양육지원의 정책적 도구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정책으로는 현금 지원 정책이 출산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과 같은 자녀양육 지원 수단의 다양화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다섯째, 보육시설이용이나 비용지원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은 여성 취업과 유관하다. 이는 이러한 정책들이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포괄적 의미에서 자녀양육지원은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둘 사항은 정책변수가 포함되어도 전체적 설명력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의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 수준에서 볼 때 출산수준은 오르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 추가 지원 정책도 목표로 하는 대상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출산수준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약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출산에 선호적인 태도나 추가출산 의사가 실제 출산으로 실현되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양육비용 지원 등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시계열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V.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방식 변화의 효과: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앙 정부의 자녀 양육비용 지원은 보육·유아교육기관 이용비용 지원이 주를 이룬다. 2009년 7월에 기관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이 차상위계층 0세와 1세아에 국한되며, 아직 제도 도입기에 불과하다. 보육료 교육비 차등지원, 만5세아 무상 등 이러한 비용 지원은 제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개인단위에서 보면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키고, 직접 또는 자녀양육부담 완화 인식을 통하여 추가출산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들이 정부 정책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효과를 더 잘 인식하고 있어서 여성의 취업활동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볼 때 출산수준은 계속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이러한 추가출산 의사나 출산에 선호적인 태도가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결선 상에서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주를 이루는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육료 이용권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동안 부모 부담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방식은 시설에 바로 지원하는 묵시적 바우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어렵고 보육시설이나 행정부서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전자바우처로 개선하여야 하는 정책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전자카드 형태로 변경하였으며, 유아교육비는 200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전자인식카드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양육비용의 핵심인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방식의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제도의 시행과 자료수집 시기의 제한으로 보육료 서비스이용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시행 기간이 짧아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조사 시점에서 전자카드 제도가 기 실시된 보육전자카드 시범사업 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의 현황과 제도에 대한 부모나 시설의 수용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보육전자카드 제도의 현황

가. 카드 발급 및 관리

1) 카드 발급

가) 시범사업 전체

아이사랑카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집계한 보육전자카드 시범사업 지역의 시설수 및 카드발급 현황은 <표 V-1-1>과 같다. 2009년 8월 31일 기준 보육시설수는 서울 207개소, 부산 146개소, 황성 18개소로 총 371개소이다.⁹⁰⁾ 이들 시범지역 보육시설의 전자카드 대상자수는 서울 7,322명 이동 중 5,171명, 부산 5,068명 중 3,912명, 황성 898명 중 575명으로 총 9,658명인데, 8월 31일 기준 지역별 카드 발급건수는 서울 4,679명, 부산 3,772명, 황성 592명으로 총 9,044명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대상자수 중 90% 이상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시범지역 보육시설 수 및 보육전자카드 발급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이동수	대상자수	신청건수	발급건수
서울 광진구	207	7,322	5,171	4,792	4,679
부산 사상구	146	5,068	3,912	3,864	3,772
강원 황성군	18	898	575	609	592
계	371	13,288	9,658	9,265	9,044

주: 2009년 8월 31일 기준임.

자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09 12). 내부자료.

나) 조사대상

한편,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의 응답자는 조사지역의 전체 아동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 본 부모조사시 보육시설에 기준을 제시하고 조사대상 부모의 선정을 의뢰하였는데, 2009년 9월 조사 당시 보육전자카드인 아이사랑카드 시범사업지역인 3개 구·군에서 조사된 대상자는 84%가 보육료 지원대상이었고, 전자카드 발급 비율은

90)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관련 조사는 9월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시범사업지역 전체 보육시설 수는 369개소로, 이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85.8%이었다. 즉, 본 조사 대상자는 다수가 보육료 지원아동으로 아이사랑카드 발급 대상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체적 보육아동과는 차이가 있는 집단임을 먼저 밝힌다.

조사대상자의 보육전자카드 발급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0.8%, 부산 87.5%, 횡성 89.3%이었다. 지원대상자의 14.8%가 카드를 발급 받지 않았으며, 미지원자도 20.3%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1-2 참조).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카드의 형태는 신용카드 62.4%, 체크카드 37.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횡성군의 체크카드 비율이 도시보다 높았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시설의 체크카드 발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모의 취업상태별 차이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V-1-3 참조).

〈표 V-1-2〉 조사대상자의 보육료지원여부

구분	단위: %(명)			
	전체	서울	부산	횡성
지원	84.4	80.8	87.5	89.3
미지원	15.6	19.2	12.5	10.7
계(수)	100.0(1,693)	100.0(806)	100.0(766)	100.0(1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표 V-1-3〉 지역 및 보육료 지원여부별 카드 발급여부 및 유형

구분	발급여부			발급시 카드 종류		
	발급	미발급	계(수)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수)
전체	85.9	14.1	100.0(1,661)	62.4	37.6	100.0(1,462)
지원	97.3	2.7	100.0(1,415)	61.4	38.6	100.0(1,395)
미지원	20.3	79.7	100.0(246)	83.6	16.4	100.0(67)
서울	82.5	17.5	100.0(789)	61.9	38.1	100.0(670)
지원	96.7	3.3	100.0(645)	60.1	39.9	100.0(632)
미지원	18.8	81.3	100.0(144)	92.1	7.9	100.0(38)
부산	89.1	10.9	100.0(752)	63.3	36.4	100.0(687)
지원	98.0	2.0	100.0(663)	63.2	36.8	100.0(661)
미지원	22.5	77.5	100.0(89)	73.1	26.9	100.0(26)
횡성	88.3	11.7	100.0(120)	57.1	42.9	100.0(105)
지원	96.3	3.7	100.0(107)	56.9	43.1	100.0(102)
미지원	23.1	76.9	100.0(13)	66.7	33.3	100.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표 V-1-4〉 보육전자카드 미발급 이유

단위: %(명)

구분	미지원으로 발급 불필요	발급신청 중	발급 대상으로 미발급	발급 대상, 카드 발급 원치 않음	계(수)
전체	78.5	14.8	2.2	4.5	100.0(223)
서울	80.9	11.5	2.3	5.3	100.0(131)
부산	74.0	20.8	2.6	2.6	100.0(77)
횡성	80.0	13.3	-	6.7	100.0(1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보육전자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부모는 소수인데, 이들의 78.5%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4.8%는 발급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조사 시점에 카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발급대상이지만 카드 발급을 원치 않는 비율은 4.5%로 나타났다(표 V-1-4 참조).

2) 카드 결제

보육료 결제 방식은 다양하다. 부모가 실보육일수 11일 이후에 직접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당겨서 카드결제할 수 있고, 1회 방문 결제후 신청에 의하면 3개월단위로 정부 지원금과 부모 부담금이 매월 1일 자동결제된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아동은 종일보육료 당겨결제도 가능하다. 이러한 결제방식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로 시범사업 종료 후인 9월 1일부터는 부모가 인터넷 결제도 가능하며, 전화를 이용한 ARS시스템 결제도 가능하다.

가) 카드 결제일

보육전자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후불제이지만 당겨서 하는 결제로 매월 보육시설 이용 이후 11일 이후부터는 아무 때나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결제를 하고자 하는 부모의 방문을 항상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상당수의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 결제 기간을 정하여 부모에게 통보하여, 결제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 보육시설에서 카드 결제일을 따로 지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실제로 보육시설의 66.0%가 기준일자 후 정해진 시일 내에 방문하도록 공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준일자 후 아무 때나 방문하도록 공지하는 비율은 29.5%이고, 기준일자 이후 연령별로 방문일을 구분하여 공지하는 비율은 1.4%이다. 지역별로 정해진 시일 내에 방문하도록 공지하는 비율은 부산이 72.4%로 가장 높았다. 다른 시설에 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이 정해진 시일 내 방문하도록 공지한다는 비율이 높다(표 V-1-5 참조).

〈표 V-1-5〉 결제일 공지 내용

단위: %(명)

구분	기준일 이후 아무 때나 방문	정해진 시일 내 방문	연령별로 방문일 구분	기타	계(수)
전체	29.5	66.0	1.4	3.1	100.0(289)
지역					
서울	35.9	59.9	2.1	2.1	100.0(142)
부산	24.4	72.4	-	3.1	100.0(127)
횡성	15.8	68.4	5.3	10.5	100.0(19)
시설유형					
국공립	25.9	70.4	3.7	2	100.0(27)
법인	33.3	55.6	-	5	100.0(18)
민간	29.0	65.8	1.9	2	100.0(155)
가정	30.7	67.0	-	-	100.0(8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표 V-1-6〉 부모의 카드 결제일 준수

단위: %(명)

구분	잘 지킴	비교적 잘 지킴	잘 지키지 않는 편	전혀 안 지킴	기타	계(수)
전체	7.0	53.1	34.3	3.7	1.8	100.0(271)
지역						
서울	9.2	45.8	38.9	3.8	2.3	100.0(131)
부산	4.9	60.2	29.3	4.1	1.6	100.0(123)
횡성	5.9	58.8	35.3	-	-	100.0(17)
설립유형						
국공립	12.5	70.8	16.7	-	-	100.0(24)
법인	7.1	71.4	21.4	-	-	100.0(14)
민간	5.4	47.3	41.9	4.1	1.4	100.0(148)
가정	8.2	55.3	28.2	4.7	3.5	100.0(8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보육시설에서 카드 결제일을 정해둘 경우 부모들의 준수 정도에 대해 비교적 잘 지킨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잘 지키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34.3%, 잘 지킨다는 응답은 7.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비하여 서울과 횡성에서 잘 지키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잘 지킨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V-1-6 참조).

아이사랑카드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 2009년 9월 및 10월 실제 결제일을 보면 당겨결제 비율이 전체의 73~75%의 비율로 집계되어서,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결제일로 인한 문제는 상당 수준으로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V-1-7 참조).

〈표 V-1-7〉 전국 확대시 보육료 결제 현황

단위: 건(%)

구분	9월 당겨결제(9월 14일)			10월 당겨결제(10월 15일)		
	집중기간	총 결제	(비율)	집중기간	총 결제	(비율)
결제건수	564,789	748,846	(75.4)	603,779	826,072	(73.1)

자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09 12). 내부자료.

나) 수납인

보육시설에서 보육료 카드결제와 관련하여 결제 담당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시설장이 보육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48.1%로 가장 높았다(표 V-1-8 참조).

〈표 V-1-8〉 보육료 카드 수납업무 담당

단위: %(명)

구분	시설장	시설장, 일부 보육교사	시설장, 모든 보육교사	기타	계(수)
전체	48.1	46.7	3.8	1.4	100.0(287)
지역					
서울	54.2	39.4	4.9	1.4	100.0(142)
부산	43.7	53.2	2.4	0.8	100.0(126)
횡성	31.6	57.9	5.3	5.3	100.0(19)
시설유형					
국공립	7.1	75.0	7.1	10.7	100.0(28)
법인	27.8	72.2	-	-	100.0(18)
민간	49.4	45.5	4.5	0.6	100.0(154)
가정	63.2	34.5	2.3	-	100.0(8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시설장과 일부 보육교사가 함께 담당하는 비율은 46.7%로 시설장이 담당하는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장과 모든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은 3.8%, 기타는 1.4%로 나타났다. 시설장만이 담당한다는 비율은 서울이 가장 높고 횡성군이 가장 낮는데, 이는 지역 차이라기보다는 시설유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장 혼자만 담당한다는 비율은 가정보육시설이 63.2%로 가장 높고, 국공립보육시설이 7.1%로 가장 낮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 혼자 담당하는 비율이 낮고, 가정이나 민간 시설은 시설장 비율이 높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은 행정업무 지원인력이 배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가정이나 민간 시설은 소규모로 시설장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카드 전달방법

전자카드는 부모가 관리하며 결제시에만 단말기가 설치된 보육시설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와 보육시설이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부모들의 보육전자카드를 이용한 보육료 납부 방법은 직접 보육시설에 가서 결제하는 경우는 50.5%이고, 아이 편에 또는 등원하는 차량 편으로 카드를 보내는 경우는 35.3%, 카드를 시설에 맡겨두는 경우는 9.9%로 조사되었다(표 V-1-9 참조).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직접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결제하는 비율이 59.0%로 가장 높고 횡성군도 직접 방문 결제하는 비율이 56.7%로 가장 높았으나, 부산의 경우 아이 편에 카드를 보내 결제하는 비율이 43.1%로 가장 높았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부모가 직접 보육시설에 가서 결제한다는 비율이 65.4%로 가장 높으며, 민간시설이 아이 편에 카드를 보낸다는 비율이 40%로 타 유형보다 높고, 카드를 보육시설에 맡겨두는 경우는 민간과 가정시설이 각각 1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직접 가서 결제한다는 비율이 더 높아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카드를 맡긴다는 비율도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카드 유형별로는 신용카드가 아이 편에 보낸다는 비율이 높고 체크카드는 직접 또는 시설에 맡긴다는 비율이 신용카드에 비하여 높았다(표 V-1-9 참조).

〈표 V-1-9〉 보육전자카드 보육시설에 전달하는 방법

단위: %(명)

구분	직접 결제	아이 편에 카드 보냄	카드를 시설에 맡김	기타· 무응답	계(수)	$\chi^2(df)$
전체	50.5	35.3	9.9	4.3	100.0(1,471)	
지역						
서울	59.0	29.6	7.4	4.0	100.0(673)	97.3(6)**
부산	41.4	43.1	12.8	2.7	100.0(694)	
횡성	56.7	20.2	6.7	16.3	100.0(104)	
시설유형						
국공립	65.4	23.5	6.2	4.9	100.0(162)	70.5(9)**
법인	44.9	34.7	5.1	15.3	100.0(98)	
민간	47.2	40.1	10.8	1.9	100.0(788)	
가정	52.3	30.7	11.2	5.8	100.0(394)	
모 취업						
취업	52.5	31.9	11.4	4.2	100.0(621)	na
미취업	48.4	38.2	9.1	4.3	100.0(814)	
부재	60.0	36.0	-	4.0	100.0(25)	
카드유형						
신용카드	48.8	37.8	8.4	5.0	100.0(905)	13.8(3)**
체크카드	52.8	31.8	12.5	2.9	100.0(553)	

주: **은 $p < 0.01$ 을 의미하고, na는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시설조사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보육료 결제 시 아동이 카드를 가져오는 비율은 평균 35.9%였고, 보육시설에 카드를 맡겨 두는 비율은 평균 10.1%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대값을 살펴볼 경우, 아이가 카드를 가져오는 비율 100%, 보육시설에 카드를 맡겨 두는 비율 80%로 보육전자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은 개별 보육시설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V-1-10 참조).

〈표 V-1-10〉 보육전자카드 전달 방법: 시설장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아동이 카드를 가져오는 비율	35.9	29.8	-	100.00	(255)
보육시설에 카드를 맡겨 두는 비율	10.1	14.7	-	80.00	(2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라) 자동결제

정부는 카드 결제를 위한 부모 방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부모의 신청을 받아 분기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최소 1년에 3번 방문⁹¹⁾으로도 12개월치 보육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분기결제는 후불제로 지원금이 다음 달 1일에 지급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보육시설들은 분기결제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다. 한편 카드 결제를 안한 아동 등은 예외급여 아동으로 분류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1일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전자카드 시범지역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분기단위 자동결제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7.4%로 나타났다. 예외 급여 아동 비율은 평균 5.6%였다(표 V-1-11 참조).

〈표 V-1-11〉 분기 자동결제 및 예외급여 아동 비율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단위:%(명)
					수
분기단위 자동결제 이용 아동 비율	7.4	18.9	0.00	100.00	(228)
예외급여 아동 비율	5.6	8.6	0.00	64.52	(25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보육시설에서 부모에게 분기단위 자동결제를 권장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 정도가 권장하고 54.7%가 이를 부모에게 설명은 하나 권장하지 않으며 35.2%는 설명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황성군에서 이를 권장하는 비율이 26.3%로 가장 높고,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21.4%로 타 시설에 비하여 높으며 가정보육시설이 6.8%로 가장 낮다(표 V-1-12 참조).

분기단위 자동결제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결제방식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황성군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부모가 매월 기간에 맞추어 보육시설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권장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다. 한편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기단위 자동결제를 이용할 경우 후불제로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어 분기단위 자동결제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91)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그 달 보육료는 카드로 결제하고 그 다음 3개월치를 자동결제로 신청함.

〈표 V-1-12〉 보육시설의 분기단위 자동결제 권장 여부

단위: %(명)

구분	설명하지 않음	설명은 하나 권장하지 않음	권장하는 편임	계(수)	$\chi^2(df)$
전체	35.2	54.7	10.1	100.0(287)	
지역					
서울	34.5	54.9	10.6	100.0(142)	10.4*
부산	39.7	53.2	7.1	100.0(126)	
횡성	10.5	63.2	26.3	100.0(19)	
시설유형					
국공립	35.7	42.9	21.4	100.0(28)	na
법인	16.7	72.2	11.1	100.0(18)	
민간	31.4	58.8	9.8	100.0(153)	
가정	45.5	47.7	6.8	100.0(8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na는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실제로 시범사업 이후 9월부터 인터넷 결제도 가능해졌는데, 2009년 10월의 보육료 결제 방법을 보면 86.3%가 시설 결제이고 자동결제는 6.3%이며, 인터넷과 ARS 결제가 각각 3.8%, 3.6%로 시설결제가 다수이다(표 V-1-13 참조).

〈표 V-1-13〉 전국 확대시 결제 형태별 현황(10월)

단위: %(건)

구분	인터넷결제	ARS결제	자동결제	시설결제	계
비율	3.8	3.6	6.3	86.3	100.0
(수)	(30,421)	(28,445)	(49,749)	(681,523)	(792,468)

주: 2009년 11월 1일 기준임.
 자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09 12). 내부자료.

나. 애로사항

보육료 전자카드 결제 절차는 종전에 없던 과정이 새로 생긴 것이므로 이용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생각하고 불편해 할 수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의 부모는 더욱 더 그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카드 실시에 따른 부모의 애로 사항을 카드 발급과 이용시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1) 카드 발급 시 애로사항

보육전자카드 발급 시 애로사항으로는 별도의 신용카드를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 꺼려진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고, 카드 발급 시 신청과정이 번거롭다는 응답이 19.7%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별도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응답이 서울 41.8%, 부산 35.9%, 횡성군 24.0%로 차이를 보였고, 횡성군은 카드 발급 신청과정의 번거로움과 이용 은행 불편이 각각 27.9%, 12.5%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표 V-1-14 참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횡성군은 읍·면지역으로 가구소득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고 저소득층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카드발급시 절차가 까다롭거나 어려움이 많았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읍·면지역의 경우 특정은행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보육전자카드에서 이용하는 은행을 평소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이용 은행에 대한 불편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용하는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시설 이용 부모가 별도 카드를 만드는 것을 지적한 비율이 비교적 높고, 취업모가 카드 발급과정의 애로를 지적한 비율이 높다.

〈표 V-1-14〉 보육전자카드 발급 시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금융 조회	발급 과정	별도 카드	은행 불편	카드 관리	입금 등 관리	기타	계(수)	$\chi^2(df)$
전체	14.1	19.7	37.7	7.5	10.3	6.7	3.9	100.0(1,453)	
지역									
서울	13.7	17.0	41.8	6.4	10.5	6.5	4.1	100.0(658)	20.6(12) [#]
부산	14.5	21.0	35.9	7.8	10.3	6.9	3.6	100.0(691)	
횡성	14.4	27.9	24.0	12.5	9.6	6.7	4.8	100.0(104)	
시설유형									
국공립	8.9	19.1	47.1	7.6	12.7	1.9	2.5	100.0(157)	
법인	12.6	23.2	32.6	9.5	10.5	7.4	4.2	100.0(95)	24.4(18)
민간	14.8	18.1	36.4	7.7	10.7	8.4	3.9	100.0(775)	
가정	14.4	22.9	37.5	6.5	8.8	5.8	4.0	100.0(397)	
모 취업									
취업	12.6	22.9	37.6	7.4	9.5	5.8	4.0	100.0(619)	na
미취업	14.9	17.1	38.8	7.4	10.8	7.4	3.6	100.0(797)	
부재	25.0	25.0	8.3	12.5	12.5	4.2	12.5	100.0(24)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2) 카드 이용 시 애로사항

<표 V-1-15>는 보육전자카드가 도입된 후 부모들이 이전과 비교하여 시설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납부하고, 카드 및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 비용을 별도로 수납해야 하는 세 가지 점에 대한 애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긍정적 응답보다는 불편하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시설을 방문하여 보육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전체 29.9%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16.7%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카드 및 통장 관리에 관한 불편에 대해서는 41.1%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23.0%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비용을 별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34.9%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29.5%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V-1-15 참조). 불편하다는 응답은 카드·통장 발급·관리, 기타비용 별도 납부, 시설 방문 보육료 납부 순으로 높아 카드·통장 발급과 관리를 가장 불편하거나 어렵게 느낌을 알 수 있다.

불편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경우 시설방문 보육료 납부, 카드·통장 발급·관리, 기타비용 별도 수납 모두 3.0~3.2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1-15> 보육전자카드 이용시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혀 불편하지 않음	불편하지 않음	보통	불편함	매우 불편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시설방문 보육료 납부	4.0	12.7	53.4	27.0	2.9	100.0(1,473)	3.1(1.1)
카드·통장 발급·관리	5.8	17.2	35.8	32.0	9.1	100.0(1,471)	3.2(1.0)
기타비용 별도 수납	7.6	21.9	35.6	27.1	7.8	100.0(1,470)	3.0(1.0)

주: 점수가 높을수록 애로가 많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표 V-1-16>은 이러한 응답의 지역별, 시설유형별,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를 나타내는데 지역별로는 기타 비용 별도 수납에서만 지역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서울이 부산이나 횡성군에 비하여 기타 비용 별도 수납 애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방문 납부에서 민간이 가정 보육시설에 비하여 불편하다는 점수가 높고, 특별활동비 등 기타 비용 별도 수납은 국공립과 법인, 국공립과 가정, 민간과 법인 시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표 V-1-16〉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이용 시 애로사항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시설 방문 납부	카드·통장 발급관리	기타비용 별도 수납	(수)
전체	3.1(1.1)	3.2(1.0)	3.0(1.0)	(1,473)
지역				
서울	3.1(1.1)	3.2(1.0)	3.2(1.0) ^a	(673)
부산	3.0(1.1)	3.1(1.0)	2.9(1.0) ^b	(694)
횡성	3.1(1.1)	3.1(1.0)	2.7(1.0) ^b	(104)
F	2.1	1.7	21.6 ^{**}	
시설유형				
국공립	3.2(1.1)	3.1(1.0)	3.0(1.0) ^a	(162)
법인	3.0(1.1)	3.2(1.1)	2.7(1.1) ^{bd}	(99)
민간	3.2(1.2) ^a	3.3(1.0)	3.2(1.0) ^c	(787)
가정	2.9(1.1) ^b	3.2(1.0)	2.9(1.0) ^b	(397)
F	3.8 ^{**}	1.7	15.6 ^{**}	
모 취업				
취업	3.1(1.1)	3.2(0.9)	2.9(1.0)	(621)
미취업	3.0(1.1)	3.2(1.0)	3.1(1.0)	(814)
부재	3.0(1.3)	2.9(1.0)	3.3(0.9)	(25)
F	0.6	1.1	2.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점수가 높을수록 애로가 많음을 의미하고, a, b, c, d는 사후검증 결과는 $a \neq b, c \neq d$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표 V-1-17〉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이용 시 가장 큰 불편

단위: %(명)

구분	시설방문 보육료납부	카드·통장 발급관리	기타비용 별도수납	보육료 할인 안됨	기타	계(수)	$\chi^2(df)$
전체	34.1	36.9	19.5	3.9	5.5	100.0(1,453)	
지역							
서울	33.7	35.5	24.0	2.0	4.8	100.0(600)	29.3(18) ^{**}
부산	33.9	38.4	15.4	5.5	6.8	100.0(631)	
횡성	38.9	36.7	17.8	5.6	1.1	100.0(90)	
시설유형							
국공립	38.8	33.8	20.9	0.7	5.8	100.0(157)	26.2(12) [*]
법인	36.0	43.0	14.0	3.5	3.5	100.0(95)	
민간	33.9	33.5	22.0	5.1	5.5	100.0(775)	
가정	32.9	43.9	15.0	2.3	5.8	100.0(397)	
모 취업							
취업	36.9	36.2	16.8	4.0	6.1	100.0(619)	na
미취업	32.2	37.8	21.1	3.9	4.9	100.0(797)	
부재	31.8	18.2	36.4	4.5	9.1	100.0(24)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1$, *는 $p < 0.05$ 를 의미하고, na는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표 V-1-17>은 위에서 검토한 세 가지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가장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카드 및 통장의 발급관리의 불편함이 36.9%로 가장 높고, 시설을 방문하여 보육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34.1%,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비용을 별도로 수납해야 하는 점이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비용 별도 수납, 부산이 카드 및 통장 발급 관리, 횡성군이 시설을 방문하여 보육료를 납부하는 데서 애로를 느낀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과 국공립시설에서 기타 비용 수납을 지적인 비율이 높고,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시간에 쫓길 것으로 추정되는 취업모가 시설방문에 대하여 미취업 일반모보다 애로 사항으로 지적인 비율이 높다.

보육전자카드 제도 시행의 번거로움의 정도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다소 번거롭다고 응답하고, 14.4%가 매우 번거롭다고 응답하였으며, 27.7%는 번거롭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비하여 서울과 횡성군이 매우 번거롭다는 비율이 높고, 시설유형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가정보육시설이 번거롭지 않다는 비율이 다소 높고,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낮다. 모 취업여부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18 참조).

<표 V-1-18>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이용의 번거로움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번거로움	다소 번거로움	번거롭지 않음	잘 모름	계(수)	$\chi^2(df)$
전체	14.4	53.2	27.7	4.7	100.0(1,441)	
지역						
서울	16.9	54.3	24.6	4.3	100.0(658)	14.2(6)*
부산	11.6	52.1	31.3	5.0	100.0(681)	
횡성	17.6	52.9	23.5	5.9	100.0(102)	
시설유형						
국공립	13.9	52.5	30.4	3.2	100.0(158)	14.6(9)
법인	15.5	52.6	24.7	7.2	100.0(97)	
민간	15.7	55.1	25.2	4.0	100.0(771)	
가정	12.1	49.1	32.9	5.9	100.0(389)	
모 취업						
취업	14.1	52.8	27.0	6.0	100.0(615)	na
미취업	14.4	54.0	27.9	3.7	100.0(792)	
부재	20.8	33.3	37.5	8.3	100.0(24)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하고, na는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3) 카드 수납 시 애로사항

다음은 시설장을 대상으로 보육전자카드로 보육료를 수납할 때 애로사항을 보육료 지원금의 후불제로 인한 자금운영의 어려움, 특별활동비 등 기타비용 별도 수납으로 번거로움, 결제가 시시때때로 이루어져 재정 운영에 차질 발생, 퇴소 시에도 카드결제 필요하여 번거로움의 네 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네 가지 문항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은 퇴소 시에도 카드결제 필요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76.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로 애로 정도가 4.0점이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응답은 후불제로 인한 자금운영의 어려움으로 69.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결제가 시시때때로 이루어져 재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과 특별활동비 등 기타 비용 별도 수납에 대해서도 각각 62.3%, 54.2%가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다.

〈표 V-1-19〉 보육전자카드로 보육료 수납 시 애로사항

단위: %(명), 점

보육전자카드로 인한 변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척도 (표준편차)
보육료 지원금의 후불제로 인한 자금운영의 어려움	2.8	7.6	20.5	38.5	30.6	100.0(288)	3.8(1.0)
기타 비용(특별활동비 등) 별도 수납으로 번거로움	7.0	16.5	22.2	33.8	20.4	100.0(284)	3.4(1.0)
결제가 시시때때로 이루어져 재정 운영에 차질 발생	4.2	13.2	20.8	33.8	28.5	100.0(290)	3.6(1.1)
퇴소 시에도 카드결제 필요하여 번거로움	2.4	6.9	14.5	39.3	36.9	100.0(290)	4.0(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표 V-1-20〉은 위의 네 가지 애로사항에 대하여 지역과 시설유형별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결제가 시시때때로 이루어져 재정 운영에 차질 발생한다는 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없어 모두 공통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었고, 그 이외 문항은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후불제에 대해서는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불편해 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기타경비 수납과 퇴소시 결제에 대해서는 서울과 부산이 횡성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시가 농촌보다 애로 정도가 높았다. 시설유형별로는

모두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국공립이나 법인보육시설보다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서 더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20〉 지역과 시설유형별 보육전자카드로 보육료 수납시 애로사항

단위: 점(명)

구분	후불제로 운영 애로	기타경비 수납 애로	수시 결제로 운영차질	퇴소 시 카드결제	(수)
전체	3.8(1.0)	3.4(1.0)	3.6(1.1)	4.0(1.0)	(287)
지역					
서울	4.0(0.9) ^a	3.6(1.1) ^a	3.6(1.1)	4.0(1.0) ^a	(144)
부산	3.7(1.0) ^b	3.3(1.0) ^c	3.6(1.0)	4.1(0.8) ^c	(124)
횡성	3.3(1.4) ^b	2.6(1.3) ^{bd}	3.2(1.4)	3.0(1.3) ^{bd}	(19)
F	7.1 ^{**}	7.2 ^{**}	1.2	11.5 ^{**}	
시설유형					
국공립	3.4(0.9) ^a	2.9(1.2)	2.8(1.1) ^a	3.3(1.2) ^a	(28)
법인	3.0(1.4) ^c	2.6(1.3) ^a	2.9(1.3) ^c	3.1(1.2) ^c	(18)
민간	4.1(0.9) ^b	3.5(1.1) ^b	3.8(1.0) ^{bd}	4.0(0.9) ^{bd}	(152)
가정	3.7(0.9) ^d	3.5(1.1) ^b	3.6(1.1) ^b	4.2(0.8) ^{bd}	(89)
F	9.5 ^{**}	5.2 ^{**}	9.5 ^{**}	11.7 ^{**}	

주: #은 $p<.01$, **은 $p<0.01$ 을 의미하고, a~d는 사후검증 결과로 a≠b, c≠d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표 V-1-21〉 보육전자카드로 보육료 수납시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역			설립유형			
		서울	부산	횡성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제때 보육료를 받지 못함 (부모들이 정해진 기간에 결제를 하지 않음)	25.2	31.2	18.9	21.1	25.9	16.7	28.7	20.7
부모와의 상담시간 증가	8.9	4.3	12.3	21.1	3.7	27.8	5.3	12.6
부모의 지원금에 대한 인 식에 따른 오해	16.3	13.5	20.5	10.5	3.7	11.1	16.0	21.8
보육료 지원금이 후불제 로 이루어짐으로써 자금 운영에 차질	40.8	41.1	39.3	47.4	44.4	33.3	43.3	36.8
보육료 수입의 감소	0.7	-	1.6	-	-	-	1.3	-
기타	8.8	9.9	7.4	-	22.2	11.1	5.3	8
계 (수)	100.0 (282)	100.0 (141)	100.0 (122)	100.0 (19)	100.0 (27)	100.0 (18)	100.0 (154)	100.0 (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보육료 수납을 포함하여 보육전자카드 도입후 보육시설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을 보기 중에서 하나 고르는 방법으로 애로 사항의 상대적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보육료 지원금이 후불제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시설 자금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 40.8%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부모들이 정해진 일자에 보육료 결제를 하지 않아 제때 보육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25.2%가 응답하였으며, 부모들의 보육료 지원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에 대해서도 16.3%가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표 V-1-21 참조).

2. 보육전자카드에 대한 수용성

다음은 부모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보육전자카드 제도 전반에 대한 선호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부모에 직접 지원

먼저 보육전자카드 제도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보육시설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카드 발급을 통해 아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41.3%가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32.9%가 바람직한 편, 16.7%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바람직한 편이라는 응답에는 황성 42.7%, 부산 34.6%, 서울 29.9%의 순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은 반대로 서울 20.3%, 황성 15.1%, 부산 13.4%의 순이다. 서울에서 카드결제제도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2-1 참조).

시설유형별로는 긍정적 응답은 국공립이 49.6%로 가장 높고 민간 시설이 40.9%로 가장 낮다. 모의 특성별로는 모 부재인 경우에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취업여부별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이유로 57.3%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그 뒤로 보육시설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질 것 같다는 응답이 17.3%, 보육지원 시스템이 전산화됨으로써 체계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17.9%로 나타났다.

〈표 V-2-1〉 부모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바람직	바람직한 편	별 차이 없음	별로 아님	전혀 아님	계(수)	$\chi^2(df)$
전체	9.0	32.9	41.3	13.4	3.3	100.0(1,703)	
지역							
서울	9.2	29.9	40.7	16.3	4.0	100.0(806)	24.6(8)**
부산	8.6	34.6	43.4	11.1	2.3	100.0(778)	
횡성	10.9	42.9	31.1	10.1	5.0	100.0(119)	
시설유형							
국공립	12.3	37.3	36.8	10.3	3.4	100.0(158)	25.2(12)*
법인	8.5	38.5	30.8	17.9	4.3	100.0(97)	
민간	9.3	30.7	41.1	15.7	3.3	100.0(771)	
가정	7.5	33.4	46.1	9.9	3.0	100.0(389)	
모 취업							
취업	8.7	30.8	43.6	14.0	2.9	100.0(770)	na
미취업	8.9	35.0	39.4	13.2	3.5	100.0(891)	
부재	20.7	24.1	44.8	6.9	3.4	100.0(29)	

주: *는 $p<0.05$, **은 $p<0.01$ 을 의미하고, na는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표 V-2-2〉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이 바람직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정부지원 인지	재정운영 투명화	부모선택권 증대	전산시스템 체계화	계(수)	$\chi^2(df)$
전체	57.3	17.3	7.5	17.9	100.0(742)	
지역						
서울	51.7	21.7	7.3	19.3	100.0(327)	11.2(6)#
부산	62.4	13.4	7.4	16.8	100.0(351)	
횡성	57.8	15.6	9.4	17.2	100.0(64)	
시설유형						
국공립	49.5	21.4	3.9	25.2	100.0(103)	na
법인	58.2	18.2	5.5	18.2	100.0(55)	
민간	55.9	18.5	6.8	17.7	100.0(363)	
가정	62.9	12.9	10.9	13.4	100.0(202)	
모 취업						
취업	54.6	16.5	7.9	20.6	100.0(314)	na
미취업	58.7	17.6	7.1	15.9	100.0(406)	
부재	57.1	14.3	14.3	14.3	100.0(14)	

주: #은 $p<0.10$ 을, na는 빈도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보육지원 시스템이 전산화됨으로써 체계화된다는 점을 지적한 비율이 비교적 높고 서울에 비하여 부산과 횡성군에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비율이 비교적 높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가 보육지원 시스템이 전산화됨으로써 체계화된다는 점을 지적한 비율이 높다(표 V-2-2 참조). 즉, 전자카드는 정부 정책 홍보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겠다.

한편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는 학부모가 결제를 위해 보육시설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응답이 43.2%이고, 잦은 정책 변화로 이용자들이 혼란스럽다는 응답이 39.5%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결제를 위한 부모의 방문이 번거롭다는 응답이 횡성지역이 66.7%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모 특성별로는 취업모가 47.0%로 그 이외 보호자에 비하여 부모의 방문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V-2-3 참조).

〈표 V-2-3〉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잦은 정책변화 혼란	개인정보 유출우려	보육시설 방문결제	학부모 방문으로 보육공백	기타	계(수)
전체	39.5	11.0	43.2	3.4	2.8	100.0(354)
지역						
서울	39.2	12.2	44.4	1.6	2.6	100.0(189)
부산	41.8	10.6	37.6	6.4	3.5	100.0(141)
횡성	29.2	4.2	66.7	-	-	100.0(24)
시설유형						
국공립	28.2	12.8	53.8	-	5.1	100.0(39)
법인	42.9	7.1	46.4	-	3.6	100.0(28)
민간	39.8	9.0	44.8	4.5	2.0	100.0(201)
가정	46.8	13.9	31.6	3.8	3.8	100.0(79)
모 취업						
취업	37.1	10.6	47.0	4.0	1.3	100.0(151)
미취업	40.4	11.9	40.9	3.1	3.6	100.0(193)
부재	60.0	-	40.0	-	-	100.0(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나. 제도의 필요성

보육전자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부모의 60.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2.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으나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이다. 지역별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서울 56.3%, 부산 63.9%, 횡성 67.3%의 순이고, 불필요하다는 비율은 서울 23.7%, 부산 22.2%, 횡성군 19.8%로 서울, 부산, 횡성군의 순으로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았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시설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64% 수준으로 유사하고, 가정이 62% 수준이며 민간은 59% 수준으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V-2-4〉 보육전자카드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꼭 필요	비교적 필요	불필요	잘 모름	계(수)	$\chi^2(df)$
전체	9.1	51.5	22.7	16.6	100.0(1,378)	
지역						
서울	8.6	47.7	23.7	20.0	100.0(629)	24.2(6)**
부산	8.2	55.7	22.2	13.9	100.0(648)	
횡성	18.8	48.5	19.8	12.9	100.0(101)	
시설유형						
국공립	11.4	53.0	17.4	18.1	100.0(149)	10.4(9)
법인	10.9	53.3	18.5	17.4	100.0(92)	
민간	9.2	49.7	25.8	15.3	100.0(737)	
가정	8.2	53.6	20.2	18.0	100.0(377)	
모 취업						
취업	8.4	49.3	22.9	19.5	100.0(586)	na
미취업	9.7	53.4	22.9	14.1	100.0(761)	
부재	13.6	40.9	13.6	31.8	100.0(22)	

주: **은 $p < 0.01$ 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다. 보육전자카드에 대한 시설장 태도 변화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보육료 전자카드 결제제도에 대한 시설장의 태도 변화를 알아본 결과,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비율이 높아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음을 예측케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49.1%가 긍정적으로 변화, 17.4%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변화 없음이 15.3%, 잘 모르겠음이 18.1%

이다. 지역별로는 긍정적 변화 비율은 횡성, 부산, 서울의 순으로 높고, 부정적 변화 비율은 서울이 27.1%로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았다(표 V-2-5 참조). 부모와 마찬가지로 시설장도 서울에서 제도 수용성이 비교적 낮다.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긍정적 변화는 국공립보육시설이 67.9%로 가장 높고 민간보육시설이 42.1% 가장 낮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비율은 법인시설이 5.6%로 가장 낮고 민간보육시설이 22.4%로 가장 높고 가정시설은 14.6%로 조사되었다.

〈표 V-2-5〉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제도 선호도 변화

단위: %(명)

구분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	부정적으로 변화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15.3	49.1	17.4	18.1	100.0(287)
지역					
서울	18.8	39.6	27.1	14.6	100.0(144)
부산	10.5	57.3	8.1	24.2	100.0(124)
횡성	21.1	68.4	5.3	5.3	100.0(19)
시설유형					
국공립	10.7	67.9	7.1	14.3	100.0(28)
법인	22.2	61.1	5.6	11.1	100.0(18)
민간	17.1	42.1	22.4	18.4	100.0(152)
가정	12.4	52.8	14.6	20.2	100.0(8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3. 보육전자카드 제도의 부모와 시설에 대한 효과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카드 시범사업 및 전국 확대시 보도자료⁹²⁾에서는 아이사랑카드 제도의 기대효과를 부모, 어린이집, 행정기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먼저 부모 입장에서는 보육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정부지원 수혜 체감도가 낮고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전자카드제도로 보육료가 부모를 통해 지급되면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카드결제에 따라 잦은 시설방문으로 시설과의 소통이 증진되어 보육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정부지원이 부모

92)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4월 30일자와 8월 31일자 보도자료 참조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권리 향상 및 아동유치를 위한 시설의 노력으로 수요자 혜택이 증가하고, 어린이집 입·퇴소, 시설 이동시 감면 서류 등 절차 간소화 및 개인의 익명성이 확보되어 낙인효과가 감소하며, 포탈시스템 구축으로 어린이집 정보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였다.

보육시설은 보육료 신청, 정산 등 복잡한 행정처리 부담 경감이 기대되었다. 보조금 청구 절차가 입소시 1회 입력으로 가능하며, 보육료 청구 오류 위험성이 제거되고, 보육료 지불 정산이 실시간 처리되어 정부지원 보육료 입금 소요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며, 매일 보육료 청구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관리·점검 등 승인 부담이 완화되는 등 보육시설과 행정기관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았다.

행정기관은 보육료 승인, 지급, 정산에 따른 행정비용과 민원부담의 감소가 기대되었다. 보육료 지원 관련 승인·정산 절차 생략 등 반복적 업무가 감소되고, 시설의 부정 등록 등에 대한 자동 확인으로 업무 정확성이 제고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획 또는 영유아 건강,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업무 비중이 확대되며,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통계보고 및 보육료지원아동·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실시간 확인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의 일원화 등 복잡한 정부지원 제도의 단순화로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제3절에서는 이러한 기대효과에 의거하여 부모와 시설 조사를 통하여 보육전자카드 제도가 부모의 인식, 부모와 보육시설과의 관계, 시설 행정업무 간소화, 보육료, 시설운영, 아동, 시설장 행태로 구분하여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아이사랑카드 시범 사업 기간이 짧고, 또한 사업기간 동안 제도 내용과 방식을 계속 변경해 왔기 때문에 효과 측정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모의 인식 변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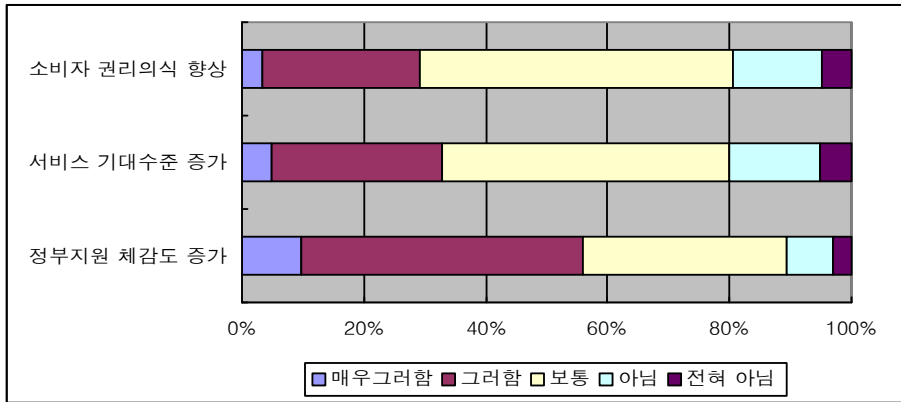
먼저 보육전자카드 결제가 도입된 후 이전과 비교하여 부모의 인식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부모 인식은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서비스에 대해 기대수준이 높아졌는지, 방문이나 상담 등 보육시설과의 의사소통이 증가하고 소비자 권리 의식이 향상되었으며 보육시설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V-3-1>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변화 백분율 분포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척도 (표준편차)
보육료·정부지원금 인지 증가	3.0	7.5	33.4	46.4	9.6	100.0(1,475)	3.5(0.8)
서비스 기대수준 증가	5.2	14.9	47.2	27.7	5.0	100.0(1,474)	3.1(0.9)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	5.0	14.6	51.2	26.0	3.2	100.0(1,472)	3.0(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그림 V-3-1]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인식 변화 백분율 분포

<표 V-3-1>과 [그림 V-3-1]을 보면 정책 체감도 증진 면에서 가장 많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인지 변화에 대해서는 56.0%가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이었다. 5점 척도로 3.5점이다.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에 대해서는 전체 32.7%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고 20.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로 3.1점이다. 소비자 권리 의식에 대해서는 전체 29.2%가 소비자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고 1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로 3.0점이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아서 의식 변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3-2>는 이러한 전자카드 도입후 부모인식 변화의 지역별, 시설유형별 및 모 취업여부별 차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낸 표이다. 아이사랑카드 시범사업으로 보육

료와 정부 지원금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는 응답의 지역 차이는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았으나 사후검증 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부산이 3.2점으로 서울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소비자 권리의식도 부산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용하는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소비자 권리의식에서 F값은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 결과로는 집단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는 세 가지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3-2〉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변화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료정부지원금 인지 증가	서비스 기대수준 증가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수
전체	3.5(0.8)	3.1(0.9)	3.0(0.8)	(1,453)
지역				
서울	3.4(0.9)	3.0(0.9) ^a	2.9(0.8) ^b	(652)
부산	3.5(0.8)	3.2(0.8) ^b	3.2(0.8) ^a	(691)
횡성	3.3(0.9)	3.0(0.9)	2.9(0.8) ^b	(104)
F	2.7 [#]	10.4 ^{**}	15.5 ^{**}	
설립유형				
국공립	3.5(0.9)	3.2(0.8)	3.0(0.8)	(152)
법인	3.5(0.9)	3.1(1.0)	3.0(0.9)	(95)
민간	3.5(0.9)	3.1(0.9)	3.1(0.9)	(775)
가정	3.5(0.9)	3.2(0.9)	3.2(0.8)	(397)
F	0.5	2.3	3.0 [*]	
어머니				
취업	3.4(0.8)	3.1(0.8)	3.0(0.8)	(619)
미취업	3.5(0.8)	3.1(0.9)	3.0(0.8)	(797)
부재	3.5(1.0)	3.0(0.9)	3.2(0.8)	(24)
F	0.6	0.3	0.6	
(수)	(1,475)	(1,474)	(1,472)	

주: #은 $p < 0.10$, *는 $p < 0.05$, **는 $p < 0.01$ 을 의미하며, a, b는 사후검증 결과로 $a \neq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여러 가지 보기를 주고 전자카드 도입후 부모인식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인지의 증가가 전체의 57.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전자카드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도 같은 맥락이다(표 V-3-3 참조).

이의 방문, 상담 등 보육시설과의 의사소통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14.0%,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9.3%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과 보육시설과의 수평적 관계는 5% 미만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에서 보육료와 정부 지원에 대한 인지가 증가하였다는 응답비율이 횡성보다 높은 반면에 횡성군에서는 서비스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보육시설과의 의사소통 증진되었다는 응답이 서울이나 부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법인시설이 보육료 지원금 인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서비스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보육시설과의 의사소통 증진되었다는 응답이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정보육시설에서도 서비스 기대수준 향상 비율이 국공립이나 민간시설보다 높아서,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높음을 시사하였다.

〈표 V-3-3〉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 변화 내용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역			시설유형			
		서울	부산	횡성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보육료· 지원금 인지증가	57.6	57.7	58.5	51.0	56.6	48.4	57.8	58.8
서비스 기대수준 향상	9.3	8.1	9.9	13.0	8.8	13.7	8.1	11.2
보육시설과 의사소통 증진	14.0	12.9	14.4	18.0	11.0	17.9	15.1	12.6
소비자 권리 의식이 향상	4.6	4.1	4.7	6.0	7.4	5.3	3.7	5.3
보육시설과 수평적 관계	2.2	2.3	2.4	-	0.7	2.1	1.9	3.5
기타	12.4	15	10.1	12.0	15.4	12.6	13.4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62)	(607)	(655)	(100)	(136)	(95)	(730)	(374)
X^2 (df)		na			23.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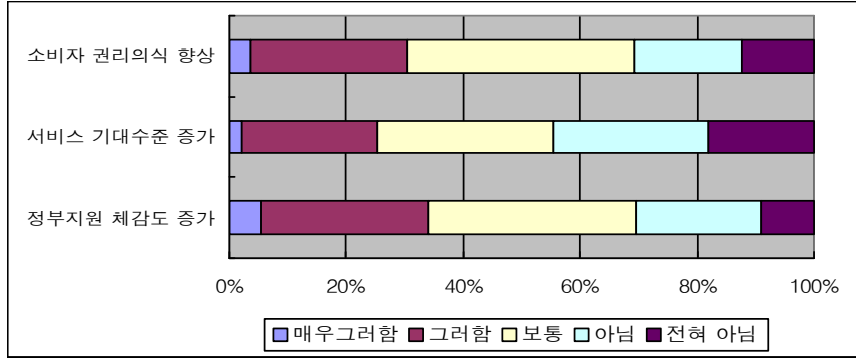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자료

〈표 V-3-4〉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 변화에 대한 시설장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척도 (표준편차)	부모 5점 척도
지원금에 대한 부모 체감도 증가	9.0	21.5	35.6	28.4	5.5	100.0(289)	3.0(1.0)	3.5
부모의 서비스 기대수준 증가	18.0	26.6	30.1	23.2	2.1	100.0(289)	2.6(1.0)	3.1
부모의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12.5	18.3	38.8	27.0	3.5	100.0(289)	2.9(1.0)	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그림 V-3-2]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 변화에 대한 시설장 응답

다음 <표 V-3-4>는 부모에게 질문한 부모의 인식 변화 문항에 대한 시설장의 응답결과를 나타낸다. 부모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모 체감도 증가에 대해 시설장의 33.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로는 3.0점이다.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변화에 대해 25.3%가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응답하여서 5점 척도로는 2.6 점을 나타냈으며, 부모의 소비자 권리의식 변화에 대해서는 30.5%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여서 5점 척도로는 2.9점을 나타냈다.

<표 V-3-5>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인식 변화에 대한 시설장 응답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정부지원 체감도 증가	서비스 기대수준 증가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수)
전체	3.0(1.0)	2.6(1.0)	2.9(1.0)	(287)
지역				
서울	2.8(0.9) ^a	2.4(1.0) ^a	2.7(1.0) ^a	(144)
부산	3.1(1.0) ^b	2.8(1.1) ^b	3.1(1.0) ^b	(124)
횡성	3.1(1.2)	2.7(1.0)	2.7(1.2)	(19)
F	4.2 ^{**}	5.1 [*]	4.2 [*]	
시설유형				
국공립	3.2(0.9)	2.7(1.1)	2.8(0.8)	(28)
법인	3.2(0.8)	2.5(1.0)	2.8(1.0)	(18)
민간	2.9(1.0)	2.5(1.1)	2.8(1.0)	(152)
가정	3.0(1.0)	2.7(1.0)	3.0(1.0)	(89)
F	-	0.7	1.4	-
(수)	(289)	(289)	(289)	(289)

주: *는 $p < 0.05$, **는 $p < 0.01$ 을 의미하며, a, b는 사후검증 결과로 $a \neq b$ 를 나타냄.

이러한 응답 비율을 <표 V-3-1>의 부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시설장 조사가 0.1~0.5점정도 낮아 대체로 시설장이 부모에 비하여 긍정적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의식변화에 대하여 부모 스스로보다 시설장들이 낮게 평가한다고 하겠다.

지역별로는 5점 척도를 비교하면 사후검증 결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모 체감도 증가,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변화, 부모의 소비자 권리의식 변화 모두 부산이 서울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시설유형별로는 세 가지 문항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V-3-5 참조).

나. 부모와 시설간 관계

<표 V-3-6>과 <표 V-3-7>은 보육료 전자카드 결제로 인하여 보육시설 방문, 원장이나 교사와의 상담 등 보육시설과의 의사소통 기회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부모와 시설장 응답결과를 통하여 알아본 것이다. 부모에게는 의사소통의 증가와 보육시설과의 수평적 관계로의 변화 여부를 질문하였다. 부모와 보육시설과의 수평적 관계로의 변화는 부모가 선택권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효과로 가정하였다. 시설장에게는 부모와의 상담시간 증가와 부모방문으로 환경에 신경을 쓰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V-3-6>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및 시설장의 관계 변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척도 (표준편차)
부모							
의사소통 증가	4.5	12.3	49.6	29.6	4.0	100.0(1,475)	3.1(0.8)
수평적 관계로 변화	4.0	12.7	53.4	27.0	2.9	100.0(1,469)	3.1(0.8)
시설장							
부모의 상담시간 증가	3.8	13.5	29.4	38.1	15.2	100.0(289)	3.4(1.0)
부모방문으로 환경에 신경	8.7	23.6	36.5	24.3	6.9	100.0(288)	2.9(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및 보육시설조사 자료

먼저 부모의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 33.6%가 전자카드 도입 이후 보육시설과의 의사소통 기회가 많아졌다고 응답하였고 16.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아니라는 응답보다 긍정적 응답이 더 많아서 5점 척도로는 3.1점이다. 지역별 차이는 5점 척

도로 부산이 3.2점으로 서울 3.0점에 비하여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가정보육시설이 통계적 유의도 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3-6, V-3-7 참조).

부모와 보육시설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것으로 전체 29.9%가 보육시설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보육시설과의 의사소통 증가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부산이 3.2점으로 서울 3.0점에 비하여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과 모취업여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3-6, V-3-7 참조).

〈표 V-3-7〉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부모 및 시설장의 관계 변화 5점척도
단위: 점(명)

구분	부모			시설장		
	의사소통 증가	수평관계로 변화	계(수)	상담시간 증가	환경에 신경	계(수)
전체	3.1(0.8)	3.1(0.8)	100(145)	3.4(1.0)	2.9(1.0)	100(287)
지역						
서울	3.0(0.8) ^a	3.0(0.8) ^a	100(65)	3.4(1.1)	2.8(1.0)	100(144)
부산	3.2(0.8) ^b	3.2(0.7) ^b	100(69)	3.5(0.8)	3.2(0.9)	100(124)
횡성	3.1(0.8)	3.0(0.8)	100(10)	3.1(1.0)	2.6(0.9)	100(19)
F	6.6 ^{**}	11.9 ^{**}		2.3	2.3	
시설유형						
국공립	3.0(0.8) ^a	3.0(0.8)	100(15)	3.1(1.0)	2.4(1.1) ^a	100(28)
법인	3.2(0.9)	3.2(0.8)	100(95)	3.3(1.0)	2.7(0.9)	100(18)
민간	3.2(0.9)	3.1(0.8)	100(75)	3.6(0.9)	3.0(1.0)	100(152)
가정	3.2(0.8) ^b	3.2(0.7)	100(37)	3.3(1.0)	3.1(1.0) ^b	100(89)
F	2.7 [#]	2.0		2.5 [#]	6.7 ^{**}	
모 취업						
취업	3.1(0.8)	3.1(0.7)	100(69)			
미취업	3.1(0.8)	3.1(0.8)	100(77)			
부재	3.1(1.0)	3.3(1.0)	100(24)			
F	0.02	1.1				
(수)	(1475)	(1475)	(1475)	(287)	(287)	(28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은 $p < 0.10$ 을 의미함. a, b는 사후검증 결과로 $a \neq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및 보육시설조사 자료

한편, 시설장은 부모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상담시간 증가에 대해 전체 53.3%가 그렇다고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역 및 시설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다. 부모가 느끼는 의사소통이 증가되었다고 느끼는 것보다 시설장이 상담시간이 증가되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다.

부모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시설환경에 신경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시설장의 3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시설이 5점 척도에서 평균 2.4점, 가정시설이 3.1점으로 국공립시설 대비 가정시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정시설이 부모의 잦은 방문으로 환경에 신경이 쓰이는 만큼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부모 인식변화에 대한 시설장 응답과도 같은 결과이다.

다. 시설 행정 업무의 변화

전자결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의 감소가 크게 기대되었다. 아울러 시설에서 보육료 지원금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하는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행정기관과 보육시설간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다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조사결과 이러한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 부담 감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감소하였다가 27.1%, 매우 감소하였다가 3.8%로 30.9%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47.6%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로는 2.6점이다. 다음 보육료 지원금 신청·승인 과정이 없어서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전체의 28.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1%로 응답하였다. 5점 척도로는 2.8점을 기록하였다 (표 V-3-8 참조).

〈표 V-3-8〉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시설 행정 업무의 변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척도 (표준편차)
보육료 지원 행정업무 부담 감소	23.3	24.3	21.5	27.1	3.8	100(288)	2.6(1.2)
보육료 신청·승인 과정이 없어서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	12.1	21.0	37.9	25.5	3.4	100(290)	2.8(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지역별로는 두 문항 모두 부산이 서울에 비하여 행정업무가 감소되고 행정기관과 보육시설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행정업무 감소는 부산 3.0점, 서울 2.2점이며 행정기관과 보육시설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는 부산 3.2점, 서울 2.5점으로, 서울과 부산의 차이가 유의하다.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V-3-9 참조).

대체로 보육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보육시설의 행정업무 간소화나 행정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수립 효과는 기대한 만큼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보육시설에서의 행정업무의 감소 정도가 낮은 것은 제도의 시행초기 단계에서 적응과정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서 추후 평가가 필요하다. 지원금 신청·승인 과정이 없어져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예외 급여 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이다.⁹³⁾

〈표 V-3-9〉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 도입 후 시설 행정 업무의 변화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행정업무 감소	행정기관 수평적 관계 변화	계(수)
전체	2.6(1.2)	2.8(1.0)	100.0(287)
지역			
서울	2.2(1.1) ^a	2.5(0.9) ^a	100.0(144)
부산	3.0(1.1) ^b	3.2(0.9) ^b	100.0(124)
횡성	2.6(1.2)	3.0(1.1)	100.0(19)
F	15.6 ^{**}	16.7 ^b	
설립유형			
국공립	2.9(1.3)	2.9(1.1)	100.0(28)
법인	2.8(1.1)	3.2(0.9)	100.0(18)
민간	2.4(1.1)	2.8(0.9)	100.0(152)
가정	2.8(1.2)	2.8(1.1)	100.0(89)
F	2.6 [#]	0.8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10$ 을, **은 $p < 0.01$ 을 의미하며, a, b는 사후검증 결과로 $a \neq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93)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행정 공무원과의 간담회 결과, 전자카드 도입 이후 상당 부문 행정업무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한 공무원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주일 중 하루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고 평가하였음.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시간이 지도 감독에 사용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제도의 적응과정이기 때문으로 이해됨.

라. 수납 보육료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수납 보육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동안 부모의 보육료 지불 현황은 개별적인 이용시간이나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시설이 임의적으로 정해진 보육료를 감액해 주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보육전자카드로 결제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관행을 적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보육료를 감액해 주기가 어렵다. 부모 입장에서는 보육료 할인혜택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보육료를 제대로 수납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모에게는 보육료 할인 혜택이 없어진 점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전체 13.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약 14% 정도가 그 동안 보육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5점 척도로는 평균 2.6점이다(표 V-3-10 참조).

〈표 V-3-10〉 보육전자카드가 보육료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아님	아님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수)	5점척도 (표준편차)
부모: 보육료 할인혜택 없어짐	15.7	27.2	43.5	9.0	4.7	100.0(1,440)	2.6(1.0)
시설: 정해진 보육료(본인부담금 포함)를 모두 받게 됨	4.5	10.8	31.6	41.7	11.5	100.0(288)	3.4(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및 보육시설조사 자료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고,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2.4점, 민간 2.7점, 가정 2.5점으로 민간시설이 국공립시설 및 가정시설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시설 이용 영유아 부모가 이러한 보육료 할인을 비교적 받았음을 나타냈다(표 V-3-11 참조).

한편 보육시설 입장에서 정해진 보육료를 모두 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전체 53.2%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농촌인 횡성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정해진 보육료를 모두 받게 되었다는 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육료 감액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시사하였다. 시설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표 V-3-11〉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가 보육료에 미치는 영향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부모: 보육료 할인혜택 없어짐		시설: 정해진 보육료를 모두 받게 됨	
	평균(표준편차)	(수)	평균(표준편차)	(수)
전체	2.6(1.0)	(1,475)	3.4(0.9)	(287)
지역				
서울	2.6(1.0)	(652)	3.3(0.9)	(144)
부산	2.6(0.9)	(691)	3.5(0.9)	(124)
횡성	2.5(1.0)	(104)	3.7(1.1)	(19)
F	0.6		2.9 [#]	
설립유형				
국공립	2.4(1.0) ^b	(152)	3.5(1.0)	(28)
법인	2.5(1.0)	(95)	3.6(0.9)	(18)
민간	2.7(1.0) ^a	(775)	3.4(0.9)	(152)
가정	2.5(1.0) ^b	(397)	3.3(0.9)	(89)
F	2.8 ^{**}		0.6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10$, **는 $p < 0.01$ 을 의미하고, a, b는 사후검증 결과로 $a \neq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조사 및 보육시설조사 자료

마. 시설 운영이 미치는 변화

전자카드제도는 부모들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시설들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네 가지 문항으로 조사하여 보육전자카드가 보육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표 V-3-12, 표 V-3-13 참조).

우선, 보육시설 간 경쟁 심화에 대해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가 56.4%이고 그렇다는 9.3% 정도로 영향을 받는 시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5점 척도로 살펴보면 부산이 2.6점으로 서울 2.1점이나 횡성 2.0점에 비하여 보육시설 간 경쟁 심화되었다는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설립유형별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동 증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2.6%이고 그렇다는 응답이 13.5%이다. 보육시설간의 경쟁이 강화되었다는 응답보다는 그렇다는 쪽의 비율이 다소 높다.

〈표 V-3-12〉 보육전자카드가 보육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척도 (표준편차)
보육시설 간 경쟁 심화	22.8	33.6	34.3	7.6	1.7	1000(289)	2.3(0.9)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동 증가	20.4	42.2	23.9	11.8	1.7	1000(289)	2.3(0.9)
신규 영유아 증가	36.6	38.1	21.5	3.1	1.0	1000(289)	1.9(0.8)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15.6	25.3	35.1	24.0	-	1000(288)	2.6(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표 V-3-13〉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가 보육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시설 간 경쟁 심화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동 증가	신규 영유아 증가	보육시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계(수)
전체	2.3(0.9)	2.3(0.9)	1.9(0.8)	2.6(1.0)	(287)
지역					
서울	2.1(0.8) ^b	2.1(0.9) ^a	1.8(0.7) ^a	2.4(0.9) ^a	(144)
부산	2.6(0.9) ^a	2.5(1.0) ^b	2.1(0.9) ^b	2.9(0.9) ^b	(124)
횡성	2.0(0.9) ^b	1.5(0.6)	1.7(0.8)	2.8(1.2)	(19)
<i>F</i>	11.4 ^{**}	11.4 ^{**}	4.1 [*]	9.3 ^{**}	
설립유형					
국공립	2.0(0.8)	2.0(0.8)	2.0(0.7)	2.5(1.0)	(28)
법인	1.9(0.9)	1.7(0.8) ^a	1.8(0.9)	2.7(1.0)	(18)
민간	2.3(0.9)	2.3(0.9)	1.8(0.8)	2.6(1.0)	(152)
가정	2.4(0.9)	2.4(1.0) ^b	2.0(0.9)	2.8(0.9)	(89)
<i>F</i>	2.6 [#]	3.4 [*]	0.8	1.4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1$, *는 $p < 0.05$, **는 $p < 0.01$ 을 의미하며, a, b는 사후검증 결과로 $a \neq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5점 척도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부산이 2.5점으로 서울 2.1점에 비하여 보육 시설 이동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고, 설립유형별로는 가정시설이 2.4점, 법인시설 1.7점으로 가정시설이 법인시설에 비하여 유의도 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해당 보육시설의 신규 영유아 증가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74.7%이고 그렇다는 응답이 4.1%이다. 시설들 간의 경쟁력이 증가하였고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동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에 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영

유아가 증가하였다는 비율은 낮았다. 지역별 차이는 5점 척도로 부산에서 2.1점으로 서울 1.8점에 비하여 신규 어린이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설립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영향은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40.9%이고 그렇다는 응답이 24.0%이다. 부모의 선택권 강화가 경쟁의식을 불러오고 이러한 의식이 부분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점 척도로는 2.6점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평균 2.9점으로 서울 2.4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설립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범사업시 정부는 정부지원이 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권리 향상 및 아동유치를 위한 시설의 노력으로 수요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조사결과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이사랑카드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접근성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바. 아동 관련 변화

다음은 보육전자카드 결제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긍정적 측면으로는 아동가정환경의 노출이 감소하였다는 점과 부정적 측면으로는 부모의 시설 불시 방문과 상담으로 아동보육에 장애가 되었는가를 알아보았다.

아동의 가정환경 노출 감소에 대해서는 17.0%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48.9%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이나 시설유형별 차이는 사후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부모의 불시 방문과 상담으로 인한 아동보육에 장애가 된다는 데에 대해 전체 39.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5점 척도로 평균 3.1점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차이는 서울이 3.3점, 부산 3.1점, 횡성 2.5점으로 서울과 횡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이 2.6점,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각각 3.2점으로 통계적으로는 사후검증결과 국공립과 민간이 유의도 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결재를 위하여 보육시설을 방문할 경우에 대부분은 시설장이 카드를 결제하는 데, 많은 부모가 보육교사와 자기 자녀를 만나보기를 희망하고 보육실을 기웃거리게 되는데, 이때 보육교사는 이를 모르는 체 하고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보호자 방문과 관련하여 시설과 교사에

게 행동 지침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도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3-14〉 보육전자카드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척도 (표준편차)
아동 가정환경 노출 감소	19.4	29.5	34.0	15.3	1.7	100.0(288)	2.5(1.0)
부모 불시 방문과 상담으로 아동보육에 장애가 됨	6.9	24.2	29.1	29.1	10.7	100.0(289)	3.1(1.1)

주: 아동 가정환경 노출 감소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부모의 불시 방문과 상담으로 아동에 소홀하게 됨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가 강함을 나타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표 V-3-15〉 제 특성별 보육전자카드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가정환경 노출 감소	상담으로 보육에 영향	(수)
전체	2.5(1.0)	3.1(1.1)	(290)
지역			
서울	2.3(1.1)	3.3(1.2) ^a	(143)
부산	2.6(0.8)	3.1(1.0)	(128)
횡성	2.2(0.9)	2.5(1.0) ^b	(19)
<i>F</i>	3.4 [*]	4.0 [*]	
시설유형			
국공립	2.5(0.9)	2.6(1.1) ^a	(28)
법인	2.5(0.9)	2.6(1.1)	(18)
민간	2.4(1.0)	3.2(1.1) ^b	(155)
가정	2.6(1.0)	3.2(1.1)	(88)
<i>F</i>	0.8	3.7 [*]	

주: #은 $p < 0.1$, *는 $p < 0.05$ 를 의미하며, a, b는 사후검증 결과로 $a \neq b$, $c \neq d$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사. 시설장 행태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카드 결제일을 정하여 부모가 방문하도록 통보하고 있으나

부모들이 이러한 방문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니다. 본 조사에서는 카드결제를 위한 부모의 불시 방문으로 인하여 원장의 대외활동이 제약받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6%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서울에서 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19.3%로 높았다. 시설유형별로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는 응답이 국공립 시설의 17.9%, 법인 시설의 33.3%, 민간 시설의 50.6%, 가정 시설의 41.6%로 민간보육시설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비율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높았다(표 V-3-16 참조).

이는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들의 경우,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하거나 소규모이므로 유휴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재정 사항은 운영자 1인이 관리하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3-16〉 보육전자카드 결제로 시설장 대외활동 제약 여부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님	아님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수)	$\chi^2(df)$
전체	5.2	24.7	26.5	29.2	14.4	100.0(291)	
지역							
서울	6.2	25.5	27.6	21.4	19.3	100.0(145)	18.2(8)*
부산	3.1	21.3	26.8	38.6	10.2	100.0(127)	
횡성	10.5	42.1	15.8	26.3	5.3	100.0(19)	
설립유형							
국공립	17.9	35.7	28.6	17.9	-	100.0(28)	na
법인	11.1	38.9	16.7	22.2	11.1	100.0(18)	
민간	2.6	21.8	25.0	33.3	17.3	100.0(156)	
가정	4.5	23.6	30.3	27.0	14.6	100.0(8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na는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조사 자료

4. 시사점

이상의 보육 전자카드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사랑 카드의 제도적 정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전자카드 도입 후 보육료 전자카드 결제제도에 대한 시설장의 태도 변화가 응답자의 49.1%가 긍정적으로 변화, 17.4%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한 비율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보다 높았고, 부모의 제도 변화에 대하여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9%,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16.7%로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40%를 넘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부모의 60.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2.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부모에 미치는 효과로는 정부 보육료 지원금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에 3.5점으로,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의 변화 3.1점, 소비자 권리 의식의 변화 3.0점에 비하여 점수가 높고, 여러 가지 보기를 주고 가장 큰 의식 변화를 고르도록 한 문항에서는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인지의 증가가 전체의 57.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전자카드 도입이 부모와 보육시설과의 의사소통 기회 확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기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5점 척도로는 3.1점이다. 부모와 보육시설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것으로 전체 29.9%가 보육시설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한편 시설장은 부모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상담시간 증가에 대해 전체 53.3%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대체로 보육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보육시설의 행정업무 간소화나 행정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수립 효과는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하겠다.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 부담 감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30.9%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47.6%는 별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로는 2.6점이다. 다음 보육료 지원금 신청 승인 과정이 없어져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전체의 28.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아니라는 응답은 33.1%로 5점 척도로는 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시행초기 단계에서 적응과정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서 추후 평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자카드제도가 부모들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시설들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러한 효과는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아이사랑카드가 사용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일반 바우처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을 통한 질 관리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질을 관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보육시설 간 경쟁 심화에 대해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가 56.4%이고 그렇다는

9.3% 정도이며,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동 증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62.6%이고 그렇다는 응답이 13.5%이다. 신규 어린이 증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74.7%이고 그렇다는 응답이 4.1%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결과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 영향은 그렇지 않다가 40.9%이고 그렇다는 응답이 24.0%로 그렇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

여섯째, 보육전자카드 결제로 부모의 불시 방문과 상담으로 인한 아동보육에 방해 요인이 된다는 데에 대해 전체 39.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5점 척도 평균 3.1점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잦은 시설방문으로 시설이 공개되고 보육시설과 부모의 상담시간이 증가하는 긍정적 요인을 살리되 보육교사의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부모의 보육시설 방문 및 결제 관련 수칙을 만들어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유 인력의 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I. 정책제언 및 맺는 말

본 연구는 보육, 유아교육을 포함한 자녀 양육비용 지원과 이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는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양육비용 지원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자녀양육부담 완화, 여성의 취업, 출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재정 전달방식이 정책에 대한 부모 체감도나 육아지원기관과 부모의 관계 등에 미치는 성과를 파악하여, 효율적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양육비용 지원이 미치는 효과분석은 국가, 지역사회 및 개인 단위로 구분하여 관련 통계자료와 조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재정 지원방식 변화에 따른 효과는 보육전자카드인 아이사랑카드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정책제언

가. 양육비용 지원 정책 관련

포괄적 의미에서 자녀양육지원은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책변수가 포함되어도 전체적 설명력은 크게 증가되지 않아서 국가 수준에서 볼 때 정책의 영향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지방정부 추가 지원 정책도 목표로 하는 대상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출산수준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약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출산 선호적인 태도나 추가출산 의사가 실제 출산으로 실현되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정책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중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은 유용한 정책으로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 자녀 가정에는 차등지원 수혜경험이 추가 출

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들 정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정책은 현재보다는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위 50%는 전액을 지원하고, 70%까지는 60%, 30%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는데 50% 이하와 그 이상 70%이하와의 지원 비율 격차가 많으므로 이들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만5세아 무상 보육과 교육비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만5세아 무상 보육과 교육비 지원정책이 양육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현재 하위 70%까지, 4인가족 439만원까지만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 보육과 교육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목적에 맞도록 실행하여야 한다. 만5세아 무상 보육은 초기에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보다는 초등학교 준비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소득제한을 철폐하여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1~2년은 무상 교육으로 초등학교 준비를 지원한다.

셋째, 취업모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육비용 지원정책은 직접보다는 자녀양육부담 완화 효과 인식이라는 매개요인을 통하여 추가 출산 의사에 더 긍정적으로 작동한다.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인식에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 경험이 많을수록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수혜가 이러한 인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효과가 출산 및 어머니 취업의 매개변수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정책이라도 부모들이 자녀양육부담 완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주요함으로 이러한 정책을 더 필요로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취업모 등 정책대상을 설정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 이용은 자녀수는 정적, 가구소득은 부의 방향으로 보육시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과 같이 보육료 지원이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나타냈다. 또한 취업모의 이용비율이 높다. 즉, 이런 의미에서

2010년부터 실시하는 소득액 산정시 맞벌이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의 25%를 공제하는 제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제의 폭이 너무 작으므로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하여 수당 등 현금 지원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출생순위별 현금이나 보육료 추가지원정책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시·군·구 정책 효과분석에서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이 둘째아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둘째자녀 이상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은 시·군·구 출산 수준 및 출생아의 둘째아 이상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단위 분석에서도 지방정부 정책인 출산축하금 수혜경험이 추가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 특히 한자녀가정의 추가 출산의사는 출산축하금 수혜경험이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 인식과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수혜와 함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국가가 아동 또는 가족수당, 세액공제 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수당 규모가 작아서 비판을 받는 일본의 경우도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에 대하여 출산력 제고에 역 기여분을 산출하는 연구들이 있어서 수당의 정책적 효과를 역설적으로 설명한다.

다섯째, 보육비용 지원 이외의 부모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14년간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보면, 그 동안 정부의 보육·유아교육예산 확대는 보육·유아교육기관 이용을 증가시키며, 이는 다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산수준은 계속 낮아져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 확대만으로 원인과 배경이 복잡한 출산 수준을 올리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단위 분석에서도 자녀양육지원은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 변수가 포함되어도 전체적 설명력은 크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이러한 추가출산 의사가 출산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료나 보육 지원 이외에 탄력근무제, 육아휴직과 같은 다양한 다른 육아지원정책들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가사분담 등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여섯째,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정책은 한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간 지방정부 정책은 셋째 자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군·구 차등정책은 부분적으로 정책적 효과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정책대상이 매우 한정적으로 정책적 효과도 크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한자녀 가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개인단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한 자녀에는 정부의 정책이 추가 자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만 두 자녀 가정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구 정책 효과분석에서도 둘째자녀 이상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은 시·군·구 출산 수준 및 출생아의 둘째아 이상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저출산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개인 단위 분석 결과, 모의 취업은 보육시설 이용 및 양육비용 지원정책 효과 인식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다. 또한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추가출산의사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보였다. 즉, 취업모일수록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고,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추가로 출산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취업여성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저출산대책으로 일, 가정 양립 정책은 중요한 수단이므로 강화되어야 할 것을 나타낸다 하겠다.

나. 전자카드 관련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아이사랑 카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핵심인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부모체감도를 높이고 행정비용을 감소하고자 도입한 전자카드는 제도는 제도적 정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카드 도입 후 보육료 전자카드 결제제도에 대한 시설장의 태도 변화가 응답자의 49.1%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고, 부모의 제도 변화에 대하여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9%이며, 또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부모의 60.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자카드는 당초에 부모의 정부 지원 인식 및 체감도 제고, 행정의 효율화, 부모 선택권 등을 주요 정책 효과로 기대하였다. 조사 시점이 시범사업이 끝난 시점으로 제도 도입 초기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대효과는 부분적으로는 나타났으나 기대한 만큼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보육전자카드가 부모에게 미치는 효과로는 지원금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대만큼은 아니었으므로, 정책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몇 가지 보기를 주고 보육전자카드 도입으로 나타난 가장 큰 의식 변화를 고르도록 한 문항에서는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 인지 증가가 전체의 57.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 인지 효과를 단독으로 측정한 점수는 5점 만점에 3.5점으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둘째, 증가된 부모상담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부모와 어린이집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의사소통 기회가 확대되고, 부모와 어린이집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하였으며, 부모의 잦은 방문으로 인해 상담시간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29.9%가 보육시설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시설장은 부모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상담시간 증가에 대해 전체 53.3%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을 시설장이나 교사가 상담 기회나 부모교육 기회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사와 시설장 직무교육시 부모교육이나 상담 관련 내용을 늘려서 상담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전자카드 도입으로 어린이집의 행정업무가 더욱더 간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육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업무 간소화나 행정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수립 효과는 대체로 나타나지는 하였으나, 기대한만큼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우

며 특히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중 47.6%는 전자카드 도입 전과 후가 별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여 5점 척도로는 2.6점이다. 또한 보육료 지원금 신청·승인 과정이 없어져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응답은 33.1%로 5점 척도로는 2.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시행초기 단계에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 등 새로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서 추후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아이사랑카드와 재정 지원 연계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당초에 아이사랑카드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였다. 전자카드제도가 부모들의 의식변화로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시설들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나가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러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의 변화 3.1점, 소비자 권리 의식의 변화 3.0점이고, 어린이집 간 경쟁 심화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56.4%이고, 경쟁의 결과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 영향은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40.9%이다. 이는 부모의 선택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평가인증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평가인증을 매개로 하여 아이사랑카드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모 보육시설 방문 시에 아동보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카드 결제를 위한 부모의 불시 방문과 상담으로 인한 아동보육이 방해를 받는다는 비율이 39.8%이고, 5점 척도로는 평균 3.1점이다. 보육시설을 방문한 부모가 자기 자녀나 교사를 만나고자 하는 희망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여유 인력이 부족한 보육환경을 고려하여 부모의 시설 방문시에 아동보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모나 시설 및 교사의 행동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잦은 시설방문으로 시설이 공개되고 보육시설과 부모의 상담시간이 증가하는 긍정적 요인을 살리되 보육교사

의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부모의 보육시설 방문 및 결제 관련 수칙을 만들어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맺는 말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타 많은 변수들의 작용으로 그 영향을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인적지원개발에 대한 효과는 더욱더 그러하겠지만, 출산에 대한 효과 또한 마찬가지이다. 본 분석은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국가단위, 지역사회 단위 및 개인단위별로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추정하였다. 국가통계는 예상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예산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출산수준은 계속 낮아져 이들의 관련성을 언급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 분석과 개인단위 분석 결과들은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보육료나 유아교육비 차등지원, 지방정부의 양육수당 등은 직접, 또는 자녀양육부담 완화 인식 제고를 통하여 자녀 출산이나 출산의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의 설명력은 낮아서 정책적 효과가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 이외에 다양하고 포괄적인 일·가정양립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으로 부모들이 보육료나 정부 지원정책을 인지하게 된 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이 부모의 소비자로서의 인식 제고이며, 행정적 부담 감소나 부모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역시 조사 시점이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한 후라서 제도의 실시가 정착되어 영향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일 수 있다. 게다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계속 제도의 내용과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안정을 이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다는 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전자카드를 매개로 직접 또는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하여 부모에게 정보제공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고, 한편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라는 다양한 방안들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각 연도). 예산 현황.
_____ (각 연도). 유치원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2007).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 김승권 외(2007).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2007).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131. 22-39.
- 김현숙(2005). 기혼여성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교육비용. 한국경제학회. 2005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현숙·성명제(2006). 여성인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개편방안 연구, 조세연구원.
- 김현숙(2007). 2007~2011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노동·육아 분야. 기획예산처.
- 김현숙·원종학(2004). 여성인력 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조세연구원.
- 김혜원·김경희·이주희·최은영(2007). OECD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
-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
- 농림부·농림수산물식품부(각 연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지침.
- 민희철 외(2007).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박경숙·강혜규(1992).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_____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_____ (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 _____ (각 연도). 보육통계.
- 서문희(2007). 부모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소요비용 차이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1(1). 61~96.
- 서문희·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걱정 분담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김은설·장혜경·박수연(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강화방안. 노동부.
- 서문희·김은설·안재진·최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보육실태조사 보고 (미발간).
- 서문희 외(2006).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나리·조혜주(2008). 캐나다의 육아지원정책: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정책개발센터.
- 신은수(2007). 복지와 선택을 넘어선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 한국바른보육실천연대 토론회 자료집.
- 여성가족부(2005-2007).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안: 새싹 플랜.
- 여성가족부(각 연도). 자치단체 특수시책 및 예산 개요.
- 여성가족부(2006, 2007). 보육통계.
- 유한욱(2006).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유희정·이정원·최진·안재진(2009).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과 정책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 윤홍식(2007). 2006년 출산과 출산 양육지원정책의 관련성.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유계숙·윤홍식·최효진(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원(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영문화사.
- 이재원·정진우·이정화(2008). 수요자 중심의 보육료 지원 전달체계연구.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장명립(2008). 유아교육 전자바우처 도입방안. 육아정책포럼 제10호 2008년 가을.
- 정광호(2007). 바우처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1), 117-138.
- 최형재(2008).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 최숙희·김정우(2006). 획기적 출산율 제고 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한승훈(2008). 바우처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연구-교육바우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相馬直子(2006). 「次世代育成支援対策」の政策評価システム開発へ向けて: 「地域」視点の導入. パネル調査(縦断調査)のデータマネジメント方策及び分析に関する総合的システムの開発. 厚生労働科学研究費補助金, 統計情報高度利用総合研究事業平成17年度報告書. pp 281-352.
- 相馬直子(2008). 次世代育成支援行動計画の政策評価におけるパネル調査の活用へ向けて: 21世紀出生児縦断調査を中心に. パネル調査(縦断調査)に関する総合的分析システムの開発研究. 厚生労働科学研究費補助金, 統計情報総合研究事業·平成19年度報告書. pp 231-274.
- 總務省(2004). 少子化対策に関する政策評価書: 新エンゼルプランを對象として. 總務省, 東京.
- 大山昌子(2004). 子どもの養育, 教育費用と出生率低下. 人口學研究, 35. 45~57.
- 滋野由紀子, 大日康史(1999). 保育政策が出産の意思決定と就業に 미치는 영향. 季刊社會保障研究. 35(2). pp192~207.
- 滋野由紀子, 松浦克己(2003). 出産. 育兒と就業の兩立を以て-結婚, 就業選擇と既婚就業女性に する育兒休業制度の效果を中心に-. 季刊社會保障研究. 39(1). pp43~54.
- 大石亞希子(2003). 母親の就業に及ぼす保育費用の影響. 季刊社會保障研究. 39(1). pp55~69
- 森田陽子(2006). 子育てに うデイスイセンティブの緩和策. 桶口美雄·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編). 少子化と日本の經濟社會-2つの神話と1つの眞實. 日本評論社. pp49~80.
- 山上俊彦(1999). 出産, 育兒と女子就業との兩立可能性について. 季刊社會保障研究. 35(10) pp.52~64.

- 日本 保育研究所(각 연도). 保育白書.
- 日本 保育研究所 編(2009). 保育情報 2009年 9月號.
- 日本 保育研究所 編(2009). 保育情報 2009年 10月號.
-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2008b). 2009年度 幼稚園就園獎勵費補助の概要. 保育情報 2008年 10月號.
- Anderson, P. & Levine, P.(2000). "Child Care and Mothers' Employment Decisions", in Card, D. and Blank, R.(eds.). *Finding Jobs: Work and Welfare Reform*.
- Baker. M, Gruber, J. & Milligan, K.(2005). Universal child care, maternal labor supply, and family well-be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 709-745.
- Barnett W. Steven and Debra J. Ackerman(2006). Costs, Benefits, and Long-Term Effects of Early Care and Education Programs: Recommendations and Cautions for Community Developer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Vol. 37. No. 2. Summer 2006.
- Beach, Jane & Friendly, Martha(2005). *Child care fee subsidies in Canada. Working documents from Quality by design*. Toronto: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 Besharov, D. J. & Samari, N. (2000). "Child-Care Vouchers and Cash Payments," In Steuerle, C. E., Van Ooms, D., Peterson, G. E. and Reischauer, R. D., (Eds.),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p. 195-223.
- Blau(2000). "*Child Care Subsidy Programs*," NBER Working Paper 7806.
- Blau, David M., & Philip K. Robins(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Vol. 26, No. 2. pp.287~299.
- Blau, Francine, Marianne Ferber, & Anne Winkler(1998).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Prentice Hall.
- Castle F. G.(2003). The World Up 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 Friendly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London.
- Chevalier & Viitanen(2002). "Th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Child Care." *Applied Economics Letters*, 9(14).
-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2007). Child Care Space Statistics.
-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2007). Trend and Analysis.
- Cleveland G. Gunderson & Hyatt(1996). Child Care Costs and the Employment Decision of Women: Canadian Evid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9(1). pp.132-51.
- Cleveland G., & Krashinsky M.(2003). *Financing ECEC Services in OEC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an OECD Early Child Care Education and Care Workshop in Rotterdam, January.
- Cleveland G. Gunderson et al(2008). "New evidence about child care in Canada: Use patterns, affordability and quality." *IRPP Choices*, 14(12). Montreal: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 D'Addio, & Mira d'Ercole(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27. OECD, Paris. OECD, DELSA/ELSA/WD/AEM.
- Daycare Trust(2009). Childcare cost survey 2009.
- Del Boca, D. (2002). *Low Fertility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Italian Women*. OECD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61.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a).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2007: Parent's Use Views and Experiences*.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b).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07*.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9).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of Parents 2008*.

- Esping-Anderson(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Press.
- Fortin(2008). Quebec's Family and Child Care Policy: Any Lessons for Ontario?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 Gauthier, A. H(2001).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 Gauthier, A. H et al(2001). "The impact of public policies on families and demographic behaviour", paper presented at the ESF/EURESCO conference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Europe', Bad Herrenalb, 23-28 June.
- Gelbach, J.(2002). Public Schooling for Young Children and Maternal Labor Supply. *American Economic Review*. 92(1).
- HM government(2004). Everychild Matters; Change for Children. 2004.
- HM Revenau and Custom(2009). Interaction of tax credits and childcare vouches.
- HM Treasury et el(2006). 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
- Immervoll, H., & D. Barber(2005). Can Parents Afford to work?: Child care Costs, Tax-Benefit Policies and Work Incentives.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31. OECD, Paris. OECD, DELSA/ELSA/WD/SEM.
- Laroque, G, & B. Salani(2004). "Fertility and Financial Incentives in France," *CESifo Economic Studies*, 3/04.
- Lefebvre, Pierre & Merrigan, Philip(2008). Child-care policy and the labor supply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 national experiment from Canad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008, vol. 26, no.3.
- Masse, L.N. and W.s. Barnett(2002), A Benefit -Cost Analysis of the Abecedaria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New Jersey: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 Meyer, Marcia, & Janet Gornick(2003). Public or Private Responsibi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pp379-411.

- Mincer, Jacob(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Aspects of Labor Economics, & H. Greg Lewis(ed.). *NBER Conference Studies*. no. 14. Princeton Univ. press. pp.63~97.
- OECD(2003). Background Report for Canada.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 Piketty, T.(1998). "L'impact des incitations financières au travail sur les comportements individuels: une estimation pour le cas français," *Economie et prévision*, N. pp. 132~133.
- Reynolds, A. J., Temple, J. A., Robertson, D. L., & Mann, E. A.(2002). Age 21 cost-benefit analysis of the Title I Chicago Child-Parent Center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4: 267-303.
- Schweinhart, L. J., Montie, J., Xiang, Z., Barnett, W. S., Belfield, C. R., & Nores, M.(2005). Lifetime effec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 Sleeboos, Joelle E.(2003). *Low Fertility Rate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 Steuerle, C. E. (2000). "Common Issues for Voucher Programs, " In Steuerle, C. E., Van Ooms, D., Peterson, G. E. and Reischauer, R. D., (Eds.),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p. 3-39.
- Suzuki, Toru(2007). Nuptiality and Fertility Declines in Japan.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Tougas(2002). Reforming Quebec's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The First Five Years. Toronto. Canada. CCRU. Occasional paper 17
- Turner, M. A., Adams, G., Rohacek, M., & Eyster, L. (2007). *Vouchers for Housing and Child Care: Common Challenges and Emerging Strategies*. Low-Income Working Families paper series 8, The Urban Institut: Washington, D. C.

Washington, V. & Reed, M. (2008). A Study of the Messachusetts Child Care Voucher System: Impact on Children, Families, Providers, and Resource and Referral Agencies. *Families in Society*, 89(2), 202-207.

<http://city.edogawa.tokyo.jp/kurashi/kosodate/hoiku/shiritsu/index.html>

<http://www.clc-ctc.ca>

<http://mainchi.jp/life/edu/child/news/20090929k000m010123000c.htm>

<http://www.accorservices.co.uk>

http://www.city.chuo.lg.jp/kurasi/syusan/hoiku/insyohoikusyo/ninkagaihokusisetuho_kuryoujose/index.html

<http://www.city.shinjuku.tokyo.jp/fukusi-web/000001/002365.html>

<http://www.cra-arc.gc.ca>

<http://www.hmrc.gov.uk>

http://www.jcp.or.jp/akahata/aik3/2004-10-18/03_01.html

http://www.mhlw.go.jp/kinkyu/juyou/kosodate/info_090108-01.html

<http://www.8.cao.go.jp/shoushi/suisin/se-6/siryop41-p50.html>

부 록

-
-
- 부록 1. 양육비용 지원에 관한 부모 조사 설문지
 - 부록 2.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부모 조사 설문지
 - 부록 3.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시설장 조사 설문지

양육비용 지원에 관한 부모 조사

시·도 번호		시·군·구 번호			가구번호		지역 번호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영유아의 보육 및 유아교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보육료·유아교육비나 양육수당 등 정부의 자녀 양육비용 지원이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부모의 인식 및 태도, 자녀 출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6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가구주명		전화번호	
조사원			

육아정책개발센터

I. 미취학 자녀 보육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영유아 자녀를 출생순위에 따라 가장 나이 어린 자녀부터 각각 이름과 연령을 기입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질문합니다. (미취학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3명까지만 조사합니다)

1. 번호(이름)	1) 막내	2)	3)
2. 생년월	년 월	년 월	년 월
3. 성별 ① 남 ② 여			
4. 출생순위 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④ 넷째아 이상			
5. 아동 현재 건강상태 ① 건강함 ② 질병있음 ③ 장애있음 ④ 장애와 질병 있음			
6. 현재 낮 동안 주로 다니는 기관 ① 국공립보육시설 ② 민간보육시설 ③ 국공립유치원 ④ 사립유치원 ④ 학원(반일제 이상) ⑤ 기타 기관 ⑥ 없음			
7. 현재 낮 동안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 ① 조부모 등 혈연 ② 비혈연 ③ 부모			
8. (기관이용시) 현재 정부로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① 받음 ② 안 받음			
8-1. (받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액이 가장 큰 혜택 응답) ① 보육료교육비 전액 및 차등지원 ② 만5세아 무상 ③ 두자녀 이용시 감면 ④ 셋째아 지원 ⑤ 농어민 자녀 지원 ⑥ 기타(장애아보육 등)			
8-2. (받은 경우) 정부의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이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① 영향을 미침 ②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모르겠음			
9. 이 자녀가 현재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으로 매월 현금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받는 경우 월 얼마를 받습니까? ① 받음(월_____ 원) ② 안 받음			
9-1. (양육수당 현금 지원을 받은 경우) 현금 양육수당 지원이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① 영향을 미침 ②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모르겠음			

II.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양육비용 지원 정책을 알고, 또한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또한, 혜택을 받았다면 만족하십니까?

구분	1) 인지 여부	2) 수혜(이용) 경험	3) 수혜시 만족여부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략 알고 있음 ③ 모름	① 현재 수혜 중 ② 과거 수혜를 받음 ③ 수혜경험 없음 ④ 모르겠음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⑧ 비해당
1) 보육료 및 교육비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2) 만5세아 무상 보육 및 교육			
3) 두자녀 보육료, 유아교육비 감면,			
4)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지방정부)			
5) 월 양육수당 현금 지원(지방정부)			
6) 출산 축하금(지방정부)			

11. 귀하는 비용지원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혜택을 받았다면 만족하십니까?

구분	수혜(이용) 경험	수혜(이용)시 만족여부
	① 현재 수혜 중 ② 과거 수혜를 받음 ③ 수혜경험 없음 ④ 모르겠음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⑧ 비해당
1)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이용		
2) 야간,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3) 일-가정 양립 지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여성고용차별 해소, 탄력적 근무, 파트타임, 출산·육아 후 재취업 지원 등)		
4)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예방접종, 영양관리, 산모도우미, 영유아 건강검진)		

12. 귀하는 정부의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현금 지원 등 영유아 양육 지원에 관한 전반적 정책이 실제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될 것임 ② 별 도움이 안될 것임 ③ 보통
④ 다소 도움이 될 것임 ⑤ 매우 도움이 될 것임 ⑥ 잘 모름

III. 출산과 관련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13.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혼인 경우 막내 자녀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년)

14. 부인은 현재 총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셨습니까?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
(※ 사망자녀는 포함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합니다.)

 총 () 명 출산, 사망 자녀 () 명

15.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15-1번 질문으로) ② 없다 ⑧ 비해당(이혼, 사별 등)

15-1 (있는 경우)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을 계획입니까?(※ 현재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합니다)
()명

16.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자녀를 당초 계획한 것보다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을 더 낳으시겠습니까?

- ① 1명 더 낳겠다 ② 2명이상 더 낳겠다 ③ 더 낳지 않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IV. 가구와 부모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7. 가족유형은 어떠합니까?

- ① (한)조부모+(한)부모+자녀 ② 부부+자녀 ③ 한부모+자녀

18. 결혼이민자 가족입니까?

- ① 모가 결혼이민자 ② 부가 결혼이민자 ③ 아님

19.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3개월간 계산이 어려울 경우 연 총소득을 추정하여 월 단위로 환산해 주십시오

 월 _____ 만원

20. 귀하의 연령, 학력, 취업상태 및 종교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남편	부인
1) 만 연령		만 세	만 세
2)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3년제)대학 졸 ③ 4년제대학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⑤ 부재(사망, 이혼)		
3) 취업상태	① 종일제 정규 ② 종일제 임시 ③ 시간제 정규 ④ 시간제 임시 ⑤ 휴직 중 ⑥ 미취업		
4) 종교	① 불교 ② 원불교 ③ 기독교 ④ 가톨릭 ⑤ 기타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부모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영유아의 보육 및 유아교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권(i-사랑카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 도입 이후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지를 통해 현재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8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전화번호	보육시설명 () 어린이집

육아정책개발센터

3-3. i-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원대상이 아니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3-3-1로)
- ② 발급 신청한 상태이나 아직 카드를 받지 못함(4로)
- ③ 발급 대상이나 시간이 없어 아직 만들지 못하였음 (4로)
- ④ 발급 대상이나 카드발급을 원치 않음 (4로)

3-3-1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도 i-사랑카드를 발급받아 보육료 지불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i-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잘 모르겠다

4. 귀하는 이번에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보육시설에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고 카드발급을 통해 이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바람직함 (4-1로)
- ② 바람직한 편 (4-1로)
- ③ 별 차이 없음 (5로)
- ④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 (4-2로)
- 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4-2로)

4-1. (위에서 ①, ②로 응답한 경우) 어떠한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지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음
- ② 어린이집의 재정운영이 투명해질 것 같음.
- ③ 부모의 선택권이 증대됨
- ④ 보육지원 시스템이 전산화됨으로써 체계화됨
- ⑤ 기타()

4-2. (위에서 ④, ⑤로 응답한 경우) 어떠한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지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잦은 정책변화로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움
- ②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음
- ③ 학부모가 결제를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울 듯함
- ④ 어린이집에서 모든 학부모가 결제를 함으로써 보육공백이 우려됨
- ⑤ 기타()

※ i-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는 분만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10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5. i-사랑카드의 도입 후 귀하는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정도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변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음					
2)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음					
3) 방문, 상담 등 어린이집과의 의사소통이 많아졌음					
4) 소비자 권리 의식이 향상되었음					
5) 어린이집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였음					

5-1. i-사랑카드의 도입 후 귀하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위의 보기에서 하나를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에 없으면 아래 기타에 기록해 주십시오.

- ()번
- ⑥ 기타()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보육시설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영유아의 보육 및 유아교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권(i-사랑카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 도입 이후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지를 통해 현재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8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전화번호	보육시설명 () 어린이집

육아정책개발센터

※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어린이집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립유형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 ④ 가정		
정원	()명	현원	영아()명 유아()명
설립연도	()년	해당서비스 유형(모두 표시)	① 영아전담 ② 시간연장(야간보육) ③ 휴일보육 ④ 장애아통합
평일 운영시간	오전(아침) ()시 ()분부터 오후(저녁) ()시 ()분까지		
시간연장 이용아동	시간연장 이용아동 ()명	취업모 수	취업모 아동 ()명
다문화 가정아동	()명	조손가정아동	()명
보육료 지원아동	전액지원아동 ()명/ 일부지원아동 ()명/ 미지원아동 ()명		

※ 다음은 i-사랑카드가 도입되기 이전에 귀하의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2. 귀하는 i-사랑카드가 시행되기 이전에 i-사랑카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었음 ② 알고 있는 편임 ③ 모르는 편임 ④ 전혀 몰랐음

3. 귀하는 i-사랑카드가 시행되기 이전에 i-사랑카드에 대해 얼마나 찬성 혹은 반대하셨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함(3-1로) ② 찬성하는 편임(3-1로)
③ 반대하는 편임(3-2로) ④ 매우 반대함(3-2로) ⑤ 잘 몰랐음(▶4로)

3-1. (위에서 ①, ②로 응답한 경우) 찬성했던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 감소
② i-사랑카드 홍보로 인한 신규 영유아 증가 기대
③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
④ 보육료 수납이 빨라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⑤ 정부가 하는일이므로
⑥ 기타()

3-2. (위에서 ③, ④로 응답한 경우)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어서
②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③ 보육료 자율화로 가기 위한 조치로 생각
④ 학부모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간섭이 심화될 것 같아서
⑤ 보육료 수입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⑥ 정원 준수 등 정부의 규제가 심해질 것 같아서
⑦ 기타()

7. 귀 어린이집에서 분기단위 자동결제를 이용하는 아동은 몇 명 정도입니까? ()명
8. 귀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에게 분기단위 자동결제를 권장하고 있습니까?
 ① 분기단위 자동결제에 대해 대체로 설명하지 않음
 ② 설명은 하나 특별히 권장하지는 않음
 ③ 권장하는 편임

9. 귀 어린이집에서 당겨결제를 이용하는 아동은 몇 명 정도입니까? ()명

10. 보육료 지원 아동 중 8월 기준으로 예외급여 아동은 몇 명 정도입니까? ()명

11. 귀 어린이집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해당 아동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8월 기준).

구분	아동이 카드를 가져오는 경우	보육시설에 카드를 맡겨 두는 아동
아동수	명	명

12. 카드결제와 관련된 보육료 수납업무를 주로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① 시설장만 수납업무를 담당 ② 시설장과 일부 보육교사(주임교사 등)
 ③ 시설장과 모든 보육교사 ④ 기타 ()
13. i-사랑카드 도입 후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제때 보육료를 받지 못함(부모들이 정해진 일자에 결제를 하지 않음)
 ② 부모와의 상담시간 증가
 ③ 부모의 지원금에 대한 인식에 따른 오해
 ④ 보육료 지원금이 후불제로 이루어짐으로써 자금운영에 차질
 ⑤ 보육료 수입의 감소
 ⑥ 기타()

14. 그 밖에 i-사랑카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 분류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15.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16.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17.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2,3년제)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18. 귀하가 어린이집에서 시설장으로 일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시설장으로 일한 경력도 포함, 교사경력 제외)
 총 _____년 _____개월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연구보고 2009-05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09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48-6 93330